연구보고 2007-11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이 옥
서문희
유희정
장명림
이미화
김은설
신나리
김은영
이정원
이윤진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발 간 사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국가 이념 및 국가 정책의 방향이 마련될 예정으로 육아정책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측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기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지난 참여정부 기간 중 실시되었던 육아정책의 실적을 정리하여 성과가 우수하였던 세부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정책 추진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혹은 새롭게 요구되어야 할 정책대안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음 정부가 육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차기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12대 우선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연구 추진을 위하여 본 센터에서는 그간 수행하였던 센터의 정책 연구 결과들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요구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고 체감도가 높은 합리적인 육아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에 응해주신 학부모, 보육시설 및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정부의 육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7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목 차

Ⅰ.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 1

1.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 기대 ····· 1
   가. 포괄적이며 선진적 육아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 1
   나.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육아비용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기대 ····· 1

2. 육아정책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 기대 ····· 2
   가. 저소득층 중심 아동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쟁점 ····· 2
   나.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와 사립, 민간 육아시설 활용 주장의 대립 ····· 3
   다.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와 자율화 주장의 대립 ····· 3
   라. 자율성의 극대화 주장과 정부개입 강화 주장의 대립 ····· 4

3. 육아지원 우선과제 논의와 제안의 필요성 ····· 4
   가. 육아지원 재원의 한계와 우선과제의 선택 ····· 4
   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4
   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5

4.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과 논의의 범위 ····· 5

Ⅱ.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 7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생존·보호)의 보장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9
   가. 배경 ····· 9
   나. 현황 ····· 11
   다. 세부 과제 ····· 22

소외계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 보장

2.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 28
가. 배경 ····· 28
나. 현황 ····· 30
다. 세부 과제 ····· 42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 45
가. 배경 ····· 45
나. 현황 ····· 47
다. 세부 과제 ····· 55

가정 양육과 취업모 지원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 63
가. 배경 ····· 63
나. 현황 ····· 67
다. 세부 과제 ····· 71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 74
가. 배경 ····· 74
나. 현황 ····· 78
다. 세부 과제 ····· 87

육아시설 : 유형의 재개념화와 접근성 제고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 93
가. 배경 ····· 93

나. 현황 ····· 94
다. 세부 과제 ····· 96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 99
가. 배경 ····· 99
나. 현황 ····· 102
다. 세부 과제 ····· 106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 113
가. 배경 ····· 113
나. 현황 ····· 114
다. 쟁점 ····· 115
라. 세부 과제 ····· 116

육아비용 : 지원 체계의 합리화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 119
가. 배경 ····· 119
나. 현황 ····· 120
다. 쟁점 ····· 126
라. 세부 과제 ····· 126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 129
가. 배경 ····· 129
나. 현황 ····· 131
다. 세부 과제 ····· 135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 138
가. 배경 ····· 138
나. 현황 ····· 141
다. 세부 과제 ····· 148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 151
가. 배경 ····· 151
나. 현황 ····· 152
다. 세부 과제 ····· 154

부 록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

1. 부모 ····· 162
가. 조사 대상 ····· 162
나. 조사 내용 및 과정 ····· 163
다. 조사 결과 ····· 163
라. 요약 ····· 177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 178
가. 조사 대상 ····· 178
나. 조사 내용 ····· 182
다. 조사 결과 ····· 182
라. 요약 ····· 217

3. 설문지 ····· 219

표 목 차

〈표 Ⅱ-1-1〉 나라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 13
〈표 Ⅱ-1-2〉 유형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 15
〈표 Ⅱ-1-3〉 원인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 15
〈표 Ⅱ-1-4〉 유치원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사항(2006년) ····· 19
〈표 Ⅱ-1-5〉 유치원 시범평가 편람 안전교육내용(2007년) ····· 19
〈표 Ⅱ-1-6〉 보육시설 평가인증 안전영역의 지표 내용 ····· 20
〈표 Ⅱ-2-1〉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2007년) ····· 30
〈표 Ⅱ-2-2〉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현황(2007년) ····· 31
〈표 Ⅱ-2-3〉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현황(2007년) ····· 32
〈표 Ⅱ-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전체대비 비율 ·· 32
〈표 Ⅱ-2-5〉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전체대비 비율 ··· 33
〈표 Ⅱ-2-6〉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 기준(2007년) ····· 35
〈표 Ⅱ-2-7〉 지방정부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원 ····· 36
〈표 Ⅱ-2-8〉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인력 유무(2007년) ····· 39
〈표 Ⅱ-2-9〉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 인력 유무(2007년) ····· 39
〈표 Ⅱ-2-10〉 보건복지부의 장애 영유아 지원 정책(2007년) ····· 41
〈표 Ⅱ-3-1〉 설립유형에 따른 연도별 유치원 수 ····· 48
〈표 Ⅱ-3-2〉 유치원의 설립별, 지역별 분포 ····· 48
〈표 Ⅱ-3-3〉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 내용 ····· 49
〈표 Ⅱ-3-4〉 지역구분에 따른 유치원설치 및 취원아동 현황(2006년) ····· 50
〈표 Ⅱ-3-5〉 지역별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비율 ····· 51
〈표 Ⅱ-3-6〉 영유아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51
〈표 Ⅱ-3-7〉 농어촌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 52
〈표 Ⅱ-3-8〉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 53
〈표 Ⅱ-3-9〉 보육시설 미설치 및 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2006년) ····· 53
〈표 Ⅱ-3-10〉 연령별 보육시설 아동 정원 분포 ····· 54
〈표 Ⅱ-3-11〉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 54
〈표 Ⅱ-3-12〉 등/하원용 차량 운행 여부 ····· 56
〈표 Ⅱ-3-13〉 보육시설 차량이 운행하는 읍/면 수 ····· 57

〈표 Ⅱ-3-14〉 교육비/보육료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 ····· 58
〈표 Ⅱ-4-1〉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2004년) ····· 64
〈표 Ⅱ-4-2〉 취업모의 영아보육 실태: 실제 보육자(2005년) ····· 65
〈표 Ⅱ-4-3〉 영아 모의 연령 및 취업여부별 시간제 보육 필요성 ····· 65
〈표 Ⅱ-4-4〉 연도별 영아 부모의 가정파견 보육도우미 제도의 필요도 ····· 66
〈표 Ⅱ-4-5〉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제도 필요 여부 ····· 66
〈표 Ⅱ-4-6〉 베이비시터 회사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비율 ····· 67
〈표 Ⅱ-4-7〉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상근인력 분포 비교 ····· 68
〈표 Ⅱ-4-8〉 베이비시터 초기 교육시간 ····· 68
〈표 Ⅱ-4-9〉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유형 ····· 69
〈표 Ⅱ-4-10〉 아이돌보미 이용 유형 ····· 69
〈표 Ⅱ-4-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 제공자 교육 실적(2006년) ····· 69
〈표 Ⅱ-5-1〉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 75
〈표 Ⅱ-5-2〉 성별 비정규직 분포(2002~2006년) ····· 77
〈표 Ⅱ-5-3〉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2005년) ···· 77
〈표 Ⅱ-5-4〉 육아휴직 사용현황(2001~2007년) ····· 79
〈표 Ⅱ-5-5〉 분만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추이 ····· 80
〈표 Ⅱ-5-6〉 여성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실태 ····· 80
〈표 Ⅱ-5-7〉 육아휴직 미이용 이유 ····· 81
〈표 Ⅱ-5-8〉 육아휴직 급여 신규수급자 현황(각 연도) ····· 82
〈표 Ⅱ-5-9〉 의무사업장의 직장 보육 서비스 제공현황 ····· 83
〈표 Ⅱ-5-10〉 기업규모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현황(2006년) ····· 84
〈표 Ⅱ-5-11〉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률(2006년) ····· 84
〈표 Ⅱ-5-12〉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2004년) ····· 85
〈표 Ⅱ-5-13〉 취업모의 영아보육 실태: 실제 보육자 ····· 86
〈표 Ⅱ-5-14〉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007년) ····· 86
〈표 Ⅱ-6-1〉 연도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 95
〈표 Ⅱ-6-2〉 연도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 95
〈표 Ⅱ-7-1〉 육아지원 재정의 변화 ····· 101
〈표 Ⅱ-7-2〉 유치원 설치 현황(2006년) ····· 102
〈표 Ⅱ-7-3〉 유치원 공공성 지표(2006년) ····· 103

〈표 Ⅱ-7-4〉 보육시설 설치 현황(2006년) ····· 104
〈표 Ⅱ-7-5〉 보육시설 공공성 지표(2006년) ····· 105
〈표 Ⅱ-7-6〉 공공성 제고 정책에서의 우선순위-공무원 의견 ····· 106
〈표 Ⅱ-7-7〉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찬반여부 의견 ····· 107
〈표 Ⅱ-7-8〉 법인화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의견 ····· 107
〈표 Ⅱ-7-9〉 보육법인 활성화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장의 의견 ····· 107
〈표 Ⅱ-8-1〉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시설장의 보육료 운영 방향 ····· 114
〈표 Ⅱ-8-2〉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지역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자율화 시설 이용 계획 여부 ····· 115
〈표 Ⅱ-9-1〉 보육료 지원 아동수(2006년) ····· 122
〈표 Ⅱ-9-2〉 유아교육비 지원 아동수(2006년) ····· 122
〈표 Ⅱ-9-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 122
〈표 Ⅱ-9-4〉 유아 민간개인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2007. 9) ····· 123
〈표 Ⅱ-9-5〉 평택시 보육료 상한액: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전후(2006, 2007년) ····· 124
〈표 Ⅱ-9-6〉 2007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지원사업 세부예산 ····· 125
〈표 Ⅱ-9-7〉 2007년도 교육인적지원부 유아교육지원 세부 예산 ····· 125
〈표 Ⅱ-10-1〉 시범평가 참여 유치원 현황 ····· 131
〈표 Ⅱ-10-2〉 유치원평가 대상기관 수(2008~2010년) ····· 132
〈표 Ⅱ-10-3〉 평가인증 참여신청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7년) ····· 133
〈표 Ⅱ-10-4〉 전체시설 대비 평가인증 참여시설 현황(2005~2007년) ····· 133
〈표 Ⅱ-10-5〉 21인 이상 평가인증 지표 ····· 134
〈표 Ⅱ-11-1〉 유치원 교사 일일 평균 업무 시간(2005년) ····· 141
〈표 Ⅱ-11-2〉 유치원 종일제 운영 현황(2006년) ····· 142
〈표 Ⅱ-11-3〉 경력과 시설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연봉(2005년) ····· 143
〈표 Ⅱ-11-4〉 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대처방법(2005년) ····· 144
〈표 Ⅱ-11-5〉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근무시간(1일 기준)(2007년) ····· 144
〈표 Ⅱ-11-6〉 보육시설 운영시간(2005년) ····· 145
〈표 Ⅱ-11-7〉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급여액(2007년) ····· 146
〈표 Ⅱ-11-8〉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 146
〈표 Ⅱ-11-9〉 보육교사의 실제 휴가일수(2007년) ····· 147
〈표 Ⅱ-11-10〉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준수 여부(2007년) ····· 148

〈표 Ⅱ-12-1〉 유치원 교사의 업무 시간 평균(2005년) ····· 152
〈표 Ⅱ-12-2〉 보육교사 담당 주업무(2007년) ····· 153
〈표 Ⅱ-12-3〉 보육교사 업무량 인식(2007년) ····· 153
〈표 Ⅱ-12-4〉 대체교사 활용현황(전국, 2007년) ····· 154
〈표 Ⅱ-12-5〉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개요 ····· 155
〈부표 1-1〉 시설유형 및 거주지역별 분포 ····· 162
〈부표 1-2〉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 ····· 164
〈부표 1-3〉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 165
〈부표 1-4〉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 ····· 166
〈부표 1-5〉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 167
〈부표 1-6〉 육아시설이용 만족 이유 ····· 168
〈부표 1-7〉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 169
〈부표 1-8〉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 170
〈부표 1-9〉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 171
〈부표 1-10〉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 172
〈부표 1-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 172
〈부표 1-12〉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 ····· 173
〈부표 1-13〉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 174
〈부표 1-14〉 자녀 출산·양육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 ····· 175
〈부표 1-15〉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 176
〈부표 1-16〉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 176
〈부표 2-1〉 의견조사 대상자 ····· 178
〈부표 2-2〉 설문에 참여한 학회 회원 ····· 179
〈부표 2-3〉 지역별 응답자 수 ····· 180
〈부표 2-4〉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 181
〈부표 2-5〉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 182
〈부표 2-6〉 계속 추진이 필요한 현행 육아지원정책 ····· 183
〈부표 2-7〉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 198

그 림 목 차

〔그림 Ⅱ-1-1〕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 12
〔그림 Ⅱ-1-2〕 연령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4
〔그림 Ⅱ-2-1〕 장애 영유아 기관배치 현황(2007년) ····· 31
〔그림 Ⅱ-2-2〕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있는 비율 ····· 40
〔그림 Ⅱ-5-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각 년도) ····· 75
〔그림 Ⅱ-5-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76

Ⅰ.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1.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 기대

가. 포괄적이며 선진적 육아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 유아교육과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차기정부 역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정책을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 국정과제 수준의 정책적 관심과 보다 진전되고 효율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함.

□ 육아정책은 미래인적 자원의 건강한 육성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그리고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정책으로서 범정부적 주목을 받아왔음. 향후,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격려하는 시급한 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중장기적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육아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차기정부 육아정책 시행 5년간 보다 선진적 육아정책과제의 수행으로 0~2세 영아의 40% 정도가 서비스 수준이 관리되는 육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5세 유아의 90%가 공공성이 확보된 육아시설에서 질적인 교육과 보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육아 선진국 진입을 기대함.

나.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육아비용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기대

□ 지난 5년간 정부는 육아지원정책 추진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육아시설 이용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한 전국규모의 기초조사를 실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육아정책방향과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차기정부 역시 이 3대 핵심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그 성과의 도출을 기대함.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의한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서비스 수준의 질적 수준 제고
- 육아시설 이용비용의 정부부담 수준 확대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2. 육아정책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 기대

□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집중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수준, 이용자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어려운 현실임.

□ 차기정부의 육아정책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수준, 기타 정부관여의 수준에 이르는 제 쟁점에 대해, 보다 진보적 입장의 정책선택과 합의를 이끌어 육아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함.

가. 저소득층 중심 아동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쟁점

□ 육아지원의 외부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등의 사회적 절박성 때문에 대다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정책 방향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 현실에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의 선별적 지원정책(소득별 차등교육비, 차등보육료)을 기초로, 보편적 지원정책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보편적 지원프로그램은 추진되지 못함.
- 현재 보편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의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보육을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을 뿐,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정책의 추진도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육아지원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동, 즉 이용자별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지원이 더욱 긴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수요자(아동) 지원방식과 공급자(시설) 지원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중장기적 육아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요구됨.

나.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와 사립, 민간 육아시설 활용 주장의 대립

□ 지난 1980~90년대의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의존 형 정책추진 결과, 전체 육아시설 이용 영유아 가운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각각 11%와 22% 수준임.

□ 육아지원의 보편성과 공공성,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 육아지원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공립 육아시설 확충이 급선무라는 주장과 기존의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립·민간 육아시설의 관리와 육성 정책이 효율적이며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다.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와 자율화 주장의 대립

□ 육아시설, 특히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이용가격 규제정책의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가격자율화 정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부처간, 전문학자간, 현장종사자간, 심지어 육아시설 이용자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됨.

- 육아서비스 이용가격, 특히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가격자율화는 육아지원의 공공성 제고정책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가격자율화는 육아서비스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는 육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가격자율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격자율화 정책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음. 유치원의 가격자율화는 민간보육시설 가격규제 영향으로 가격 또는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기보다는 유치원별 유사한 이용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자율화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가격자율화여부에 대해 차기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일관성 있게 육아지원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그 성과(접근성 확대, 서비스 질의 제고, 이용료 부담의 경감과 이용가격의 안정화 등)를 도출할 것을 기대함.

라. 자율성의 극대화 주장과 정부개입 강화 주장의 대립

□ 정부의 육아서비스 관리감독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자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정부개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의 최소화와 가격자율화 등을 병행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과 이에 반하여 육아서비스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됨.
- 육아재정 확대에 따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행정업무 과잉으로 인한 행·재정적 폐해의 감소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차기정부는 육아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관여 대상과 관여 수준을 명확히 결정하여 정부 관여에 대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여 대상과 수준을 5년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을 기대함.

3. 육아지원 우선과제 논의와 제안의 필요성

가. 육아지원 재원의 한계와 우선과제의 선택

□ 국가의 육아지원은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수긍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로 인해 세부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우선과제 또는 핵심과제 선택이 불가피함.

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을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태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급격한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

- 수십 년간 요보호 아동 대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행된 육아지원 정책의 관행으로 인해 진보적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동의가 여전히 어려움.

□ 사회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회통합에 접근할 수 있는 육아지원 우선과제의 선택과 이행이 긴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오랫동안 국공립과 사립/민간 부분의 비형평적 요소와 지원 수준의 차별적 요소의 제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용이하지 않음
- 이해당사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육아지원 대상과 지원방식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들이 유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수많은 육아지원 정책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하나, 차기정부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 즉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우선과제로 선택하여야 함.

□ 육아지원이 더욱 절실한 계층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우선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유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우선과제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4.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과 논의의 범위

□ 지난 2년간 육아정책 연구과제 수행 결과로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축적된 데이터와 현행 육아정책과제들을 연구자들이 공동 토의과정을 통해 검토하면서, 우선적이며 핵심적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육아정책과제들을 일차 선정함.

□ 일차 선정된 육아정책과제들을 기초하여,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육아정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정책 수요자, 즉 육아서비스 이용자인 부모와 서비스 공급자인 유치원 원장과 시설장, 교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정책과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함.
- 특히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부모와 그 외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을 구분하여 구성함.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에 참고하였음.

□ 일차 선정된 육아정책과제들을 연구자들이 수차례의 토의과정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로 보완과정을 거쳐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특히 현 정부의 육아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해야 할 육아정책 과제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진 토의와 의견조사를 통해 검토하였음.
- 현란한 육아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그간 데이터에 기초하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지원의 합리성 제고 원칙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 본 원고에서 제안하는 육아정책과제의 범위는 학령전 아동,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정책과제에 한함. 육아정책과제 중에서 특히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관련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제안함.

Ⅱ.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생존・보호)의 보장

육아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차기정부 육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안함. 이 과제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의 보장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환기시키고, 육아시설 이용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정부는 육아지원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뿐 아니라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건을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때문에 육아지원시설의 안전수준에 대한 부모나 일반인의 평가는 낮은 편임.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은 육아지원시설에서의 최소 수준의 영유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안전 전문가들은 일부 육아지원시설의 안전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황옥경, 2007).

○ 여러 부처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역할분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윤선화, 2006).

○ 육아지원의 최우선 과제로 아동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전체 아동을 위한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안전 관련 기구들을 연계 통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야 함.

가. 배경

□ 차기정부는 아동의 영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안전 환경 조성을 육아정책 가운데 최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하여 미래인력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집중해야 함.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통사고 예방, 유아 및 고령자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여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과거 영유아들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부모나 조부모에 의하여 가정에서 길러졌었다면,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육아지원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 보육시설 선택의 최우선 조건으로 영유아의 안전을 꼽음(이재연・윤선화, 2004).

□ 반면에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상태가 미흡한 수준으로 육아지원시설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의한 사고, 실내외 놀잇감에 의한 사고, 영아들의 질식사고, 통학버스 관련사고, 아동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황옥경, 2007).

- 대부분의 육아지원기관에서는 한 해 동안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사고가 적어도 1건 이상은 발생하고 있음(김혜금, 2002; 이은숙・김정남, 2003; 이재연, 1995; 홍혜경・지성애・김영옥, 1998). 사고 장소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이재연(1995)의 연구에서는 63.1%로 나타났으며, 이명자(1997)의 연구에서도 45.0%로 나타나 실내에서의 사고의 심각성이 큼. 또한 계절별로 볼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봄에서 초여름, 가을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상처부위로는 얼굴과 머리, 눈, 코, 입 등의 상해가 60%를 차지하며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끼임,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떨어짐, 부딪힘, 데임, 잘못 삼킴 등의 순서로 나타남(김혜금 외, 2007).

□ 사고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사망과 장애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영유아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임. 그러나 지금까지 영유아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매우 부족하여 안전사고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가정의 개인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동의 사고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다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윤선화, 2006).

- 1996년 '아동안전육성 종합대책 시안' 발표(보건복지부) : OECD가입 이후, OECD에서 요구하는 아동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 이였으나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실천방안 없음.

- 1999년 아동시설 안전강화대책 발표(국무조정실) :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안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의무화와 건축물 내부 장식품에 대한 방염의무화,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기록대장 배치 의무화,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설운영자 등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등 추진함.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안전에 관해 입법화하여 아동의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적 문제차원에 머물던 아동보호를 사회로부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마련함.

- 2001년 서울시아동안전종합대책 수립(서울시) : 유니세프에서 OECD 26개 회

원국들의 아동상해사망조사발표 후 국내 각 부처 정책결정자들이 어린이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서울시 행정 팀으로 가정복지담당관실 내 아동복지 팀에서 아동안전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사업을 추진함.

- 2002년 어린이보호육성추진단(이후 어린이보호 육성협의회) 조직 :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 되어, 7개 부처가 어린이보호육성 사업을 조정하고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5개 중점추진과제 중 '어린이안전 강화'가 포함됨.
- 2003년 어린이안전점검단 설치(청와대) : 각 부처의 아동 안전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각 부처에서 아동의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이를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부처가 없는 점을 문제 삼아 현 참여정부에서 81회 어린이날을 기해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삼고, 2007년까지 어린이사고를 절반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어린이안전점검단'을 청와대 내 비상설기구로 설치함.
- 2003년 6월부터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총 76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76과제에서 어린이제품안전대책 23개 과제를 추가하면서 총 99개 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으나 각 부처의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이루어져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영유아가 육아지원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포괄적인 아동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강구하여, 안심하고 육아지원시설에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나. 현황

1) 안전사고 현황

□ 어린이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어린이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현재 사회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임.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상해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한국소비자원, 2007).

- 2004년도에 안전사고로 사망한 18세 미만 아동의 노동력 손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조 136억 원으로 추계되며,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할 경우 약 16억 8천만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2004년도 1~17세 아동의 손상사망자 1193명에 대한 노동력 손실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퇴직연령 65세, 인금인상 8%, 할인율 3%를 기준으로 함.)

-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18세 미만 아동의 직접의료비용은 남자의 경우 615억 원, 여자의 경우 330억 원으로 추계되며, 전체 손상으로 인한 직접비용은 9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 참여정부는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이후 어린이 안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76개 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10월 현재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1,210명에서 718명으로 40.6% 감소시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교통안전, 수상안전, 어린이용품 등 유형별 아동안전대책 추진.
-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과 예방,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국민 홍보 전개.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법적인 강화,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 강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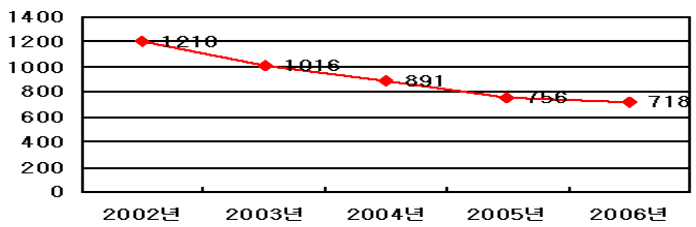

〔그림 II-1-1〕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 7.3명(10만 명 중)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임(한국소비자원, 2007).

-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8.3명으로 스웨덴(3.8명)과 영국(3.8명)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 나라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단위: 10만 명 당

한국 (2000)	한국 (2005)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영국	스웨덴	OECD 평균
14.8	8.3	10.2	7.3	6.5	5.8	5.0	4.1	3.8	3.8	7.3

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6. 3. 6

□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안전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의 연령과 장소에 따라 사고유형 및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한국소비자원, 2007).

- 매년 14세 이하 아동의 전체 사망률의 40%를 차지하는 주요한 사망원인은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이며, 이러한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음.
-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4세 13.6명, 5~9세 9.2명, 10~14세 4.6명으로 1~4세아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음.
- 연도별 1~4세 영유아 안전사고 사망률은 1999년 19.9명, 2001년 15.7명, 2003년 13.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사망자수 대비 안전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은 39.6%로 최근 6년 동안 평균 40%선을 유지하고 있음(김혜금, 2005).
- 유아기는 신체기능의 미발달로 신체조절능력과 운동기능이 숙달되지 않은 시기이고, 인지적, 정서적 능력의 제한된 발달로 안전을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해를 당하기 쉬운 시기임. 또한 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함. 이런 이유로 유아의 사고 발생률은 다른 연령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함(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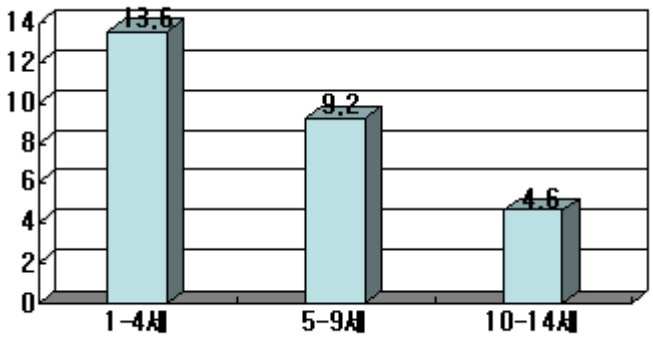

［그림 II-1-2］ 연령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도시지역 어린이 안전사고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5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이은숙・김정남, 2003).

-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실외놀이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31.9%, 교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29.7%로 거의 대부분 이 두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정윤경, 2007).
-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영유아들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고가 2004년 2,528건, 2005년 2,688건, 2006년 2,533건으로 가장 많음. 이외에도 끼임,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급식 및 통학버스 사고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정윤경, 2007).
-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실어 나르는 어린이 통학차량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통학버스에 의한 안전사고는 2004년 27건, 2005년 47건, 2006년 45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사망사건이 각각 3건, 5건, 3건으로 안전사고의 심각성 측면에서 본다면 통학버스 사고가 가장 심각함(정윤경, 2007).

〈표 II-1-2〉 유형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부딪힘/넘어짐	2,528건 (전체 사고의 84.2%)	2,688건 (전체사고의 85.0%)	2,533건 (전체사고의 68.2%)
통학버스	27건 (사망 3건)	47건 (사망 5건)	45건 (사망 3건)

□ 보육시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유아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그 밖의 원인으로는 아동간의 다툼, 종사자 부주의, 시설물 하자를 들 수 있음. 시설물 하자 또는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유아부주의나 아동간의 다툼에 비하여 쉽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정윤경, 2007).

〈표 II-1-3〉 원인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유아부주의	2,140건 (전체 사고의 71.3%)	2,245건 (전체 사고의 71.0%)	2,525건 (전체 사고의 67.9%)
아동간의 다툼	724건	744건	842건
종사자 부주의	65건	91건	159건
시설물 하자	31건	27건	70건

□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다쳤을 경우 사고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사고를 당한 곳을 고치거나 개보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15%인 반면, 대부분은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안전교육의 실시가 주로 이루어짐. 보육시설 안전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6.9%에 이름(여성가족부, 2006).

2) 안전관련 법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련 법규를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시각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관련 법규의 수준을 파악하여야 함. OECD 2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동안전을 위한 법규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윤선화, 2006).

-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설계단계부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며 건물 허가사항에 있어서도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편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학교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보육시설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음.

□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규정이 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어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다양한 법에 산재되어 있음(황옥경, 2007).

-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많은 법령과 관련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에 대한 조항을 두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호자와 교사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법률 제6148호)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조항 신설

  제2항: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법률 제6151호) 제3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사고발생 후에는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

제1항: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안전교육기주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항: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안전교육실시에 관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의한다.

교육기준(제4조제1항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교육기준)				
구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 2) 교통관련 법규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관련 내용	1) 약물의 종류·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위험물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 행동 및 대피 요령	1.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발생 현황 2.성폭력 예방지침 3.성폭력 예방 실습 4.성폭력 범죄 발생시 대처방법 5.법적처벌 및 취업제한 규정 6.성폭력 범죄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교육 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3) 사고사례분석	1.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시청각 교육 3.사고 사례분석

출처: 2007.3.27일자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과한 법률 등은 보육시설의 화재와 관련된 방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부령 제169호 일부 개정 2000. 8. 18)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 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육내용)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5. 안전관리 가.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안전관련 지침 수준

□ 그동안 정부는 육아지원 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을 2002년 이후 20배 이상 증액시키는 등 정책적 관심을 높여왔음. 또한 예산 지원 뿐 아니라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건을 강화하여 왔음.

– 시설의 위치, 실내외 설비기준 강화와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육아지원기관 운영자에게 요구하고 있음.

□ 유치원과 관련된 안전관리 내용은 2006년에 발간한「유치원시설안전관리 매뉴얼」과 「2007년도 유치원 평가편람 시범평가」에 제시되어 있음.

–「유치원시설안전관리 매뉴얼」에서는 건물 및 주변 환경, 실내 환경, 실외환경, 비상대응 및 관리 등 네 영역을 점검하도록 구분하고 있음.

- 「2007년도 유치원 평가편람 시범평가」에서는 교육환경영역에서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안전성-시설·설비의 안전관리' 항목과 유아의 건강·안전영역에서 '안전관리의 적절성-유아, 교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비상훈련 실시, 안전사고 대비책'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 및 교사대상 안전교육내용을 명시함.

〈표 II-1-4〉 유치원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사항(2006년)

건물 및 주변 환경	실내 환경	실외환경	비상대응 및 관리·감독
1. 유치원의 입지조건 2. 소방차 접근 등 활동여건 3. 전봇대·고압전선 등 주변 환경 4. 교통 환경: 통학버스 안전관리시스템, 운전자 및 통학버스 안전 담당자, 주변교통 환경	1. 교실: 교실공간, 비품, 놀잇감, 가구 2. 복도 및 문 3. 계단 4. 난간 5. 화장실 6. 현관	1. 놀이시설 2. 바닥 3. 울타리 및 담	1.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훈련: 발화방지, 감지·경보 및 소화, 피난 안전성, 화재대피 훈련·교육 2. 비상대응계획 3. 관리·감독: 안전교육, 안전감독, 안전사고 일지 기록

〈표 II-1-5〉 유치원 시범평가 편람 안전교육내용(2007년)

유아대상 안전교육	교사대상 안전교육
1. 교통안전: 안전한 보행 및 등하원 차량 이용 포함 2. 놀이시설 안전 및 놀이규칙 3. 아동학대(성폭력 포함) 및 유괴 4. 소방대피훈련 5. 자연재해 대피훈련	1. 안전관리지도법 2. 응급처치법 3. 화재 및 화상 대처 4. 아동학대 및 유괴 5. 식중독 6. 교통안전 7. 놀이시설 안전 8. 소방 대피훈련 9. 자연재해 대피훈련

□ 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 내용은 2007년에 발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침서」에 제시된 안전영역의 '실내외 시설의 안전'과 '영유아의 안전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II-1-6〉 보육시설 평가인증 안전영역의 지표 내용

실내외 시설의 안전	영유아의 안전보호
1.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2. 실내시설(보육실외)의 안전관리 3. 보육실의 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4. 위험한 물건의 보관	1.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2. 영유아의 인계과정 3. 등원 및 귀가용 차량 운행 4.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공지(필수항목) 5.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 6.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또한 2008년 보육사업안내에 보육시설의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 에 대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원칙, 분야별 안전관리, 차량안전 관리,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4) 안전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미흡

□ 성인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육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아동들에게는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됨(윤선화, 2006).

- 성인과 달리 영유아는 사소한 안전사고라 할 지라도 장애를 입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기도 하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는 가족과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더 높음(김혜금·김명순, 2007).
- 영유아는 주변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반면 주의력과 판단력은 미숙하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음. 그러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내실 있는 높은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교육에 대한 저변 확산이 필요함. 또한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의 주요 책임을 지는 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가 요구됨.

□ 아동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이재연・윤선화, 2004).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연간 평균 실시시간은 18.03시간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8시간의 2/3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을 보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시하는 보육시설은 전체의 7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의 64%만이 신규종사자, 자원봉사자, 외부교사를 대상으로 안전보육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육시설 안전운영 지침의 내용도 전체의 81%만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입소 영유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34%만이 부모대상 안전교육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전달에 있어서도 84%만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을 특화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에서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통계를 각각 생성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관리되지 못하며,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또한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 생산되는 통계나 표본조사를 근거로 한 통계가 대부분이어서 신뢰도가 낮음(한국소비자원, 2006).

-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자료원으로는 통계청의 사망통계자료, 학교안전공제회의 통계자료,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등의 자료가 있으나 대표성을 가진 통계자료로서의 모든 환경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안전사고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 통계에 필요한 항목(나이, 사고내용, 사고 물품, 원인, 장소, 시기, 사고정도 등)에 대한 표준 도구를 개발하여 관련부처로 하여금 표준도구(항목)에 의거 통계자료를 작성토록하고, 정기적으로 수집・분석된 통계자료를 어린이 안전 통계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보고 또는 통보토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함(한국소비자원, 2007).

- 현행 통계청 사망사고, 학교안전공제회, 소방방재청 등에서 안전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안전대책은 현재 13개 부처에서 부처별 추진과제를 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과제별 부처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윤선화, 2006).

- 각 부처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매우 미흡함.
- 현재와 같이 각 부처의 관계기관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가 분리되어 관리됨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위험요인을 규명할 수 없어 적절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함.
- 예산 또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60여억 원을 투입하는 데에만 집중 책정되어 있을 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임.
- 각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정도를 단정하기 어려움. 각 사업별 예산을 책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다. 세부 과제

1) 아동 안전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

□ 2003년에 수립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추진기간의 종료와 함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부분까지 포함한 아동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한국소비자원, 2007).

-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포하면서 향후 5년간 어린이 10 만 명당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현재의 1/2수준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2003. 6)하여 추진하였음.

-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 저출산 시대에 따른 출산 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한국소비자원, 2006).
-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별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토론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안전취약 분야(화상, 삼킴, 중독 등)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및 학회, 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등 이벤트 사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한국소비자원, 2006).

2)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

□ 육아지원의 최우선과제로서 종합적인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아동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기구들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함.

- 현재 산재되어 있는 아동안전 관련법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캐나다에서는 아동의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 '캐나다상해보고감시시스템(CHIRPP)'을 도입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립된 정책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CHIRPP는 10곳의 소아과병동과 6개의 일반 병원의 응급실 자료를 토대로 상해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술과 자금지원은 캐나다 보건성과 질병관리실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상해부에서 제공하고 있음(윤선화, 2006).

□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아동 안전사고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실시, 육아지원시설의 안전 환경 관리감독,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구축, 안전사고 관리 사업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안전관리 사업별 평가가 필요함.
- 아동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3)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육아시설과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내실 있는 아동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함. 아동과 유아교육・보육 종사자,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함.

-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매체 개발·보급
- 유치원·보육시설 안전교육 지도와 안전성 평가 실시
- 유치원·보육시설 아동 및 부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실화
- 유치원·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수 교육에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

□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유치원·보육시설과 기타 아동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하여야 함. 또한 육아지원시설 주변 환경 개선 및 기관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육아지원시설 안전 환경 구성을 위한 안전표준모델 및 세부지침 보급, 관리.
- 육아지원시설 안전 관련 문서 기록 의무화 및 관리 체계 도입.
- 육아지원시설 주변 환경의 상시 안전관리 필요.

□ 가정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예방 프로그램 필요함.

- 어린이 안전사고 60% 이상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인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마련 필요함(한국소비자원, 2007).
- 가정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부모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가정안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임. 특히 가정에서의 사고는 영유아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영유아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윤선화, 2006).
- 가정 내 안전사고는 가정에서 영유아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부모에 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부모가 가정 내 상해의 위험요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영유아 안전사고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으므로 d;를 위해 가정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김혜금・김명순, 2007).

- 가정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유아 안전 전문가가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 내 위험요인과 안전과 관련된 지도를 해 주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정안전 정보를 구축하여 부모들이 쉽게 영유아와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접하게 하거나, 주거 단지를 찾아가는 아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한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 안전사고 통계는 유치원과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신청을 한 안전사고에 한하여 통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개보육시설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있으나 경미한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교육기관에서 바로 사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윤선화, 2006).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보육시설 운영기준'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중대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고 및 기록・비치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고처리에 대한 기록・보관 및 통계 작성은 추후 사고의 예방과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통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실태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상해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예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분석되어야 함.

□ 보육시설의 시설・설비의 안전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보육시설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전사고 요인을 방치하거나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집의 시설·설비의 개·보수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 시공 당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타 용도의 시설·설비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도 안전한 환경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며 안전전문가가 진단이 요구됨.

□ 육아지원시설과 가정에서의 아동안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함.

- 지역사회의 병원, 소방서, 경찰, 구청, 육아지원시설,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보건 및 간호 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영국의 경우 개정된 아동법 2004는 보육시설 안전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한 책임을 강화함. 모든 아동관련 시설과 지역사회의 의료, 경찰, 구급구조대 등의 공적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전산망의 설치로 시설의 신고 없이도 화재 등의 일부 응급상황에서 긴급출동이 가능함(황옥경, 2007).

□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안전사고 시 보상체계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책임의식이 매우 낮은 영유아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대부분임. 이를 감안하여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벌 등과의 관계에서 차별적 유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 이 특별법에는 보육시설 안전관리의 책임, 보상기준과 범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여야 함(김혜금, 2007).
- 또한 보육시설 안전사고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법인이나 기구의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법인이나 기구의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통해 보육시설 안전사고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소송 시 보다 신속·공정하게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원장 및 교사가 국가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하여 보호받고 영유아를 마음놓고 보호·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함(김혜금, 2007).

소외계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 보장

일반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기회 확대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영유아와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기회 확대에 차기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어 소외 아동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2.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2.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 장애 영유아 선별, 진단, 배치에 대한 지원체제가 없어서 장애 영유아 학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확인하게 되는 시기도 늦어지고 확인한 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혼란이 있으므로, 정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장애 영유아 선별, 진단, 배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장애 영유아 부모가 자신의 철학과 의지와 상황에 따라 이용 기관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함.

○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기관과 시설유형에 따라 일관성이 없음.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의 경우,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지원이 없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 장애 영유아 통합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이 절실함.

○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 체계가 미미하여 장애 영유아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 영유아 가족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가. 배경

□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 영유아 진단 및 배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없음.

-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할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조기 진단 및 배치에 대한 지원체계가 절실함.

□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접근성이 크게 미흡함.

- 장애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장애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음.
-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다니기 위하여 1~2시간의 통학시간을 감

수하거나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장기체류하여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제도상으로는 장애 영유아 부모가 원할 경우 어느 기관이든지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조건을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정부의 지원에 일관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장애 영유아 통합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정부의 지원은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과 사립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름.
  - 이념과 제도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은 장애 영유아 전담기관 우선으로 되어 있음.
  - 유치원은 국공립 위주의 지원만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보육시설은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지원은 아니나 국공립·법인 시설 지원과 함께 민간개인 시설이나 가정시설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

□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은 전담기관에 비하여 지원인력의 배치 미흡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 보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추세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가 지원이 없어 내실 있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어려움.
-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지원이 다르므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다름.

□ 장애 영유아 가족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시스템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족이 처음으로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상담할 곳이 없음.
- 장애 영유아의 형제자매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없음.

-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운 실정임.
- 장애 영유아 가족의 경우 장애 영유아를 위한 치료비나 교육비 지출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향후,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접근성 제고와 프로그램의 내실화,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나. 현황

1)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현황

□ 국립특수교육원의 2001년 조사 자료를 참고로 0~5세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하면 2006년 현재 전체 장애 영유아 중 20.11%만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 배치되어 있어, 5명당 1명만이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음.

- 장애 영유아의 2%는 특수교육기관에, 3%는 일반 유치원에, 9%는 전담보육시설에, 6%는 통합보육시설에 배치되어 있음.

〈표 II-2-1〉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2007년)

단위: 명, %

0~5세아 인구수	장애 영유아 수 추정 2%	특수 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전담 보육시설	통합 보육시설	기관배치 장애 영유아비율
2,999,461	59,989	1,032	2,091	5,549	3,390	20.11

주: 특수교육기관은 특수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말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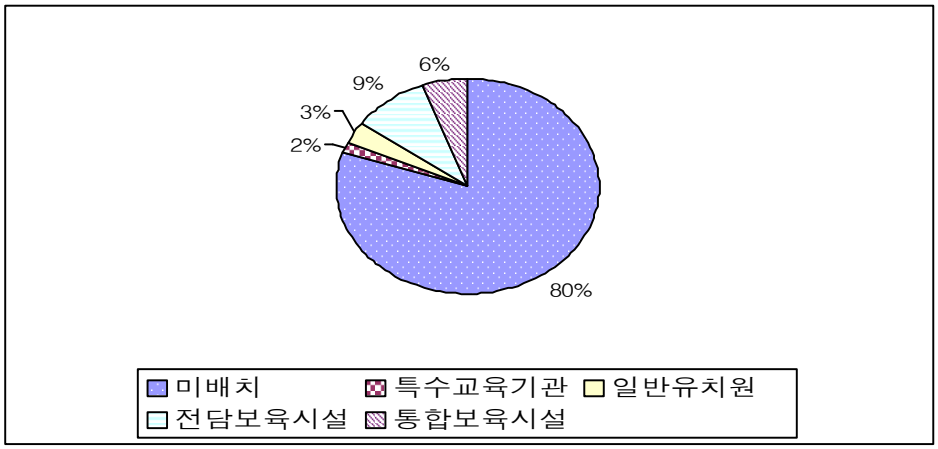

〔그림 II-2-1〕 장애 영유아 기관배치 현황(2007년)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현황은 〈표 Ⅱ-2-2〉, 〈표 Ⅱ-2-3〉과 같음.

–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 유아수가 1,492명으로 특수교육기관이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 유아수(각각 1,032명, 599명)에 비해 많음.

〈표 II-2-2〉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현황(2007년)

단위: 개교, 개원, 명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일반학급		
기관수	학급수	유아수	유치원수	학급수	유아수	유치원수	학급수	장애 유아수
115	266	1,032	150	174	599	903	1,188	1,49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 보육시설의 경우 유아교육기관과 달리 전담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수가 5,406명으로 통합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수 3,212보다 많음. 일반 보육시설에서도 682명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음.

〈표 II-2-3〉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현황(2007년)

단위: 개소, 명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일반 보육시설		
시설수	아동현원	시설수	아동현원	장애아 현원	시설수	아동현원	장애아 현원
147	5,549	724	50,819	3,390	29,823	1,062,415	682

자료: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수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지방의 경우는 특히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은 대기자가 많은 실정임.

-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전체 유아교육기관 대비 전담교육기관과 통합교육 실시기관의 비율은 17.76%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비율이 3.29%부터 45.53%까지 편차가 심한 편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대도시는 그 비율이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전체대비 비율

단위: 개원(%)

지 역 구 분	전체 유아교육기관	전담교육기관 (전체대비 비율)	통합교육 실시기관 (전체대비 비율)	장애 유아 교육 기관 (전체대비 비율)
합계	8,405	115(1.39)	1,358(16.37)	1,473(17.76)
서울	935	27(3.03)	249(27.98)	276(31.01)
부산	385	10(2.63)	163(42.89)	173(45.53)
대구	285	4(1.40)	80(27.97)	84(29.37)
인천	323	5(1.50)	6(1.80)	11(3.29)
광주	238	3(1.27)	55(23.21)	58(24.47)
대전	228	4(1.72)	65(28.02)	69(29.74)
울산	176	1(0.56)	45(25.00)	46(25.56)
경기	1,822	22(1.20)	264(14.39)	286(15.59)
강원	419	6(1.45)	42(10.12)	48(11.57)
충북	354	9(2.60)	44(12.72)	53(15.32)
충남	545	4(0.77)	27(5.19)	31(5.96)
전북	520	4(0.78)	47(9.14)	51(9.92)

전남	628	6(0.99)	54(8.87)	60(9.85)
경북	735	5(0.70)	91(12.73)	96(14.43)
경남	701	5(0.72)	108(15.65)	113(16.38)
제주	114	3(2.70)	18(16.22)	21(18.9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통계(2007년 4월 기준).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교육인적자원부(2007). 장애 유아 통합교육 실시 현황 내부자료(2007년 4월 기준).

-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보육시설 대비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3.07%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비율이 1.34%부터 4.81%까지 다소 편차가 있음. 충청남도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울산광역시가 3.78%, 부산광역시 3.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광주광역시가 1.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대전광역시 2.05%, 전라북도 2.17% 순서로 낮게 나타남.

〈표 II-2-5〉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전체대비 비율

단위: 개소(%)

지 역 구 분	전체 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전체대비 비율)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유치원(전체대비 비율)	장애 영유아 보육시설 (전체대비 비율)
합계	29,823	147(0.49)	768(2.58)	915(3.07)
서울	5,496	11(0.20)	171(3.11)	182(3.31)
부산	1,604	16(1.00)	42(2.62)	58(3.62)
대구	1,251	14(1.12)	20(1.60)	34(2.72)
인천	1,428	3(0.21)	42(2.94)	45(3.15)
광주	1,047	10(0.96)	4(0.38)	14(1.34)
대전	1,121	5(0.45)	18(1.61)	23(2.05)
울산	555	8(1.44)	13(2.34)	21(3.78)
경기	8,207	15(0.18)	249(3.03)	264(3.22)
강원	814	3(0.37)	16(1.97)	19(2.33)
충북	846	5(0.59)	21(2.48)	26(3.07)
충남	1,164	7(0.60)	49(4.21)	56(4.81)
전북	1,289	9(0.70)	19(1.47)	28(2.17)
전남	988	11(1.11)	22(2.23)	33(3.34)
경북	1,461	10(0.68)	34(2.33)	44(3.01)
경남	2,130	16(0.75)	39(1.83)	55(2.58)
제주	422	4(0.95)	8(1.90)	12(2.84)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2007년 6월 기준).
여성가족부(2007). 보육지원팀 e-통계 자료(2007년 4월 기준).

2)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지원 현황

가) 유아교육기관 지원 현황

□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하고 있음.

□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장애 유아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임.

□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뿐으로 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음.

- 2007년 현재 월 361,000원 이내에서 지원함.

□ 통합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임.

나) 보육시설 지원 현황

□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시설별 차이가 있음.

- 장애아전담지정시설의 경우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1인당 80%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장애아 1인당 29만 2천원의 기본보조금을 지급함.
- 장애아통합지정시설의 경우 통합교사를 배치하고,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에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시설에는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함. 이외에 장애아통합지정시설에 29만 2천원의 기본보조금을 지급함.
- 일반보육시설은 장애아가 포함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며, 정부지원시설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80% 또는 30%를 지원함. 민간개인보육시설에는 교사대 아동 비율 1대 3을 기준으로 29만 2천원, 1대 5 기준 13만 4천원, 1대 5 기준으로 8만 6천원의 기본보조금을 지원함.

〈표 II-2-6〉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 기준(2007년)

구분	지정 주체 및 기준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기본보조금 (장애아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담지정시설: 전담교사 배치				
- 인건비 지원		80%		361천원
- 기본보조금 지원	시·군·구청장		292천원	361천원
2. 장애아 통합지정시설: 통합교사 배치				
- 인건비 지원		80% (국공립·법인)		361천원
- 기본보조금 지원			292천원	361천원
3. 일반보육시설				
국공립·법인보육시설	- 1대 3 기준	80%		361천원
	- 1대 5 기준	80%		317천원
	- 1대 7 기준	80%		262천원
	- 1대 15 기준	30%		180천원
	- 1대 20 기준	30%		162천원
민간개인보육시설	- 1대 3 기준		292천원	361천원
	- 1대 5 기준		134천원	317천원
	- 1대 7 기준		86천원	262천원
	- 1대 15 기준		-	보육료 상한액
	- 1대 20 기준		-	보육료 상한액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으나 지방정부별로 지원 사업명과 규모, 지원 금액이 다양하여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장애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름.

- 2007년 현재 16개시도 중 11개의 시도와 232개의 시군구 중 17개의 시군구가 장애 영유아와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16개시도 중 부산, 충북, 충남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시도 차원의 사업뿐 아니라 시군구 차원의 사업도 전혀 없음.

〈표 II-2-7〉 지방정부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원

지방정부		사업명	지원기준 및 내역	예산액(천원)
서울 특별시	시 자체 사업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아 통합시설의 장애아 1인당 월 25천원	201,600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국공립, 법인 시설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교재교구비 지원 개소당 30,000천원 범위 내	750,000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아 통합 지정 시설: 장애아 9명당 치료사 인건비 지원(최대 5명)	936,360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아 통합시설 장애아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100,000
	성동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공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공사 1개소 선정	30,000
	광진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구립어린이집 1개소	15,000
	강남구	취약(특수,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	야간교사 급식비 월 25천원 시간 연장 운영비 월 500천원 취약보육(장애, 영영아) 월200천원	108,000
	송파구	아토피 및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	아토피 통합시설 간호사 인건비 1인 월 1,500천원 아동 급식비 1인 800원	28,000
대구 광역시	시 자체 사업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특수교사, 치료사): 200명 / 1인당 월 80천원	192,000
	달서구	장애 아동 현장학습	보육시설 재원 장애 아동: 200명 / 1인 20천원	4,000
인천 광역시	시 자체 사업	장애아 통합시설 조력 사업	1식	10,000
		보육교사 특수보육 특성화 연수	장애아 전담 및 통합반 교사 특성화 연수	20,000
		특수보육시설 운영	치료사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월 300천원 교재교구비: 연 2,000천원 24시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월 750천원	200,000
		장애아 통합시설 개보수	1개소당 5,000천원	100,000
광주광 역시	시 자체	장애아 전담 차량운영비	대상: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1개소당 월 200천원	16,800

지방정부		사업명	지원기준 및 내역	예산액(천원)
	사업	장애아 전담 교재교구비	대상: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1개소당 연 1,000천원	7,000
대전 광역시	시 자체 사업	특수보육교사(영아, 장애아, 방과 후 등) 특별수당	1인 60천원	1,632,240
		특수보육시설(장애아, 영아 전담, 방과 후 등) 보육아동 간식비	1인 일 600원, 월 15,000원	222,480
울산 광역시	시 자체 사업	장애 아동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만 5세아, 방과 후 보육 장애 아동: 60명 / 월 50천원 시간연장보육아동 30명 / 월 평균 180,500원	198,000
		법인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법인 5개5h(115명 정도) 인건비 자부담분(20% 중 10%) 법인 차량기사 7명	348,000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115명 / 월 50천원	69,000
		공립, 법인 취약보육 종사자 수당	150명 / 월 100천원	180,000
		취약보육 종사자 교육지원	150명 / 300천원	52,500
	울주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장애아반 교사 1인 / 월 100천원	6,000
경기도	도 자체 사업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장애 및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장애아 전문교사 월 100천원 영아 전문교사 월 50천원	1,408,800
	성남시	방과 후 장애아반 차량비 지원	장애아 방과 후 반 운영 시설 1개소 월 200천원	24,00
	용인시	장애아 전담시설 기가 인건비	차량기사 1인 2007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금기준 90%	18,564
		장애아 전담시설 재활용품 지원	장애아 재활치료 도구(21종) 화장실 자세유지 등받이	14,347
	포천시	영아, 장애아 간식비 지원	1인 500원 / 보육일수	84,240
		특수(장애) 보육시설 차량기사 인건비	대상: 민간 장애전담 보육시설 월 800천원	9,600

지방정부		사업명	지원기준 및 내역	예산액(천원)
강원도	도 자체 사업	장애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80천원 / 1인 / 월	38,400
충청 남도	도 자체 사업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장애인 차량지원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비 30,000천원 / 개소	30,000
	천안시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조교사인건비	3개소	47,237
	홍성군	장애아전담시설 운전원인건비 지원	1,300천원 / 월	15,600
전라 남도	도 자체 사업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0천원 / 1인	366,240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578개 시설	31,800
	여수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2개소	37,434
경상 북도	구미시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및 장애 아동 현장 체험	보육시설 이용 장애 아동 1인당 150천원	31,500
경상 남도	창원시	장애전담보육교사 수당지급	월보수액의 10%	54,099
	마산시	특수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장애전담시설: 월 100천원 정부지원시설: 일 10천원 / 월 15일 기준	93,600
		장애아전담시설 차량구입비 지원	40,000천원 / 개소	80,000
	김해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월100천원 / 인	48,000
	하동군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	장애아 담당교사 월 50천원	9,000
제주 특별 자치도	도 자체 사업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특수보육시설 개소당 / 월 600천원	1,020,000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교사수당	월 60천원 / 인	35,800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연 1,200천원	4,800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기사 인건비	1,000천원 / 월 / 개소	4,800

주: 내용상 지원이 분리되어 제시되지 않아 다른 지원과 함께 명시한 부분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관련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2007년도).

3) 통합기관 인력 현황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인력(특수교사, 치료사, 일반교사, 순회교사, 외부자문 인력 등)은 없는 경우가 과반수이며,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특히 사립유치원에 전문 인력이 있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함.

〈표 II-2-8〉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인력 유무(2007년)

단위: %(기관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44.6(308)	55.4(382)	100.0(690)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5.1(75)	44.9(61)	100.0(136)
사립유치원	10.5(30)	89.5(257)	100.0(287)
국공립보육시설	81.8(108)	18.2(24)	100.0(132)
민간개인보육시설	70.4(95)	29.6(40)	100.0(135)

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보조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자활후견인,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 경우가 30%를 밑돌고 있으며,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특히 사립유치원에 보조 인력이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함.

〈표 II-2-9〉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 인력 유무(2007년)

단위: %(기관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29.3(196)	70.7(474)	100.0(670)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3.7(86)	36.3(49)	100.0(135)
사립유치원	15.2(43)	84.8(240)	100.0(283)
국공립보육시설	23.6(30)	76.4(97)	100.0(127)
민간개인보육시설	29.6(37)	70.4(88)	100.0(125)

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이 부족함.

- 특히 전문 인력과 보조인력 모두 사립유치원이 가장 부족함.
- 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합학급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이 모두 있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보조 인력은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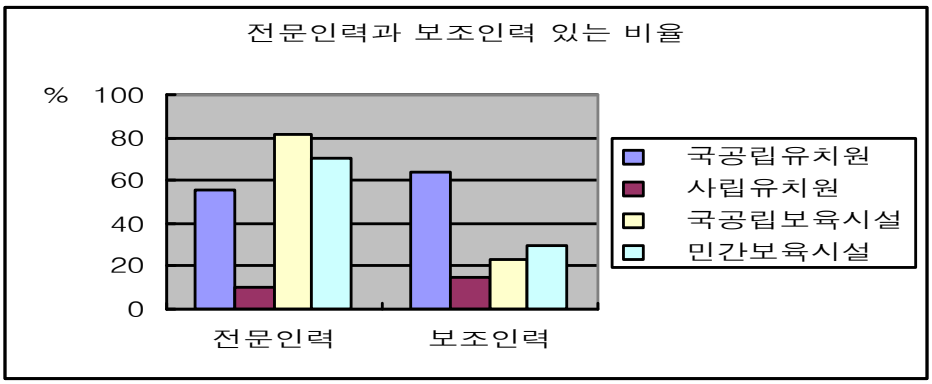

〔그림 II-2-2〕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있는 비율

4) 가족 지원 현황

□ 장애 영유아 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이 없음.

- 일부 복지관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기관은 없음.

□ 정부에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 영유아 가족이 일반아 가족에 비해 교육(치료)비, 의료비, 양육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장애 영유아들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교육비(사립 361,000원 이내, 국공립 90,000원 이내)와 보육료(361,000원)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을 지급하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임.

〈표 II-2-10〉 보건복지부의 장애 영유아 지원 정책(2007년)

장애 영유아 관련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아동 부양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 2급인 자(다fms 장애아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r,qd;s 지	· 기초중증: 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20천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월 55만 1천원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려 -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5는 지원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2007).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7년도).

다. 세부 과제

1) 장애 영유아 선별, 진단, 배치 체계 확립

□ 정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장애 영유아 선별, 진단, 배치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함

- 2007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5차례(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60개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 하에 장애 영유아 진단 및 배치 체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함.
- 장애 영유아 진단 및 배치는 각 지역의 관련 센터, 예컨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가 담당할 수 있음.

2)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담기관과 통합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확충

- 장애 영유아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전담기관뿐 아니라 일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활용하여 통합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확대, 향후 5년간 장애 영유아의 50%를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애 영유아 전담기관 수준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함.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도 장애 영유아 통합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국공립 기관과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 영유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전폭적이고 내실있는 지원

□ 일반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차기정부에서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 장애 영유아가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 있는 경우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원을 받도록 함.

-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 기관과 사립 기관에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가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 정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

4)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담당 인력 지원

□ 인적 자원 제공

- 통합교육을 하는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향후 5년까지 100%까지 확보하여 장애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
- 장애 영유아 담당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교사가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장애 영유아 담당 인력에 대한 질 높은 현직연수 기회를 제공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이해와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전문가 지원 체제를 가동시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5) 가족지원 체계 확립

□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제도화

-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는 지역 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육정보 센터 등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하여 장애 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상담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 영유아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함.

□ 재정지원

- 장애 영유아 교육이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가정의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 아동인구가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질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 면에서 소외되어 왔음. 자녀양육환경이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임.

○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등하원 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빠른 시간내 설치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 종일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영유아별 교육·보육 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환경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확대함.

가. 배경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아지원의 현실상, 아동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양질의 육아서비스가 편중되어 왔음. 기회균등을 위해 농어촌 영유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에 대한 특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

□ 농어촌의 육아지원은, 농어촌 가정이 쉽게 접근할(accessible) 수 있어야 하고, 보육시간의 연장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보육수요에 융통적(flexible)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보육시설의 서비스는 농어촌 아동의 사회성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질 높고(high quality) 저렴하게(affordable) 제공되어야 함(Crew, 2005).

- 지역이 넓고 아동 수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장시간 셔틀버스를 타고 등하원해야 하거나 버스가 없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먼 거리를 도

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농한기와 농번기에 아동 특히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는 많은 차이가 있음.

- 한 조사(서문희 외, 2006)에 따르면, 보낼 필요는 느끼나 비용부담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농어촌 가구도 21.1%임. 이러한 지적들은 농어촌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시사해 줌.

□ 농어촌 육아지원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농어촌의 생활 수준 자체를 높이는 문제이며 이는 농어촌이라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

- 대도시로 젊은 층의 인구가 몰려들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층이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및 학원중심지로 인구가 몰려드는 것은 수준 높은 교육이라는 문제를 떠나 설명될 수 없는 현상임. 급속도로 노령화 되어가고 이농현상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육아문제를 보다 질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농어촌의 어린이들도 도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항상 고려해야 함.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농번기·농한기 등 시기별로 균등하지 않은 육아지원 수요 등 전형적 특성과 더불어 소득원의 다양화, 교육과 문화 기회의 상대적 부족 등 지역 여건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어 아동인구 밀도가 낮으며 육아지원기관이 모든 면지역에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에게 적절한 육아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서문희 외, 2004).

- 농어촌가구에 소득이 생기는 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매달 균등하게 월급을 받는 도시와는 차이가 있고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 또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임.

- 소득수준도 도시 가계 평균소득 수준보다 낮음.

- 최근 들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가 양육하거나 결혼 이민자를 부모로 둔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농어촌 가정의 주 생계 수단도 농업이 아닌 형태로 확대되면서 농어촌 지역 영유아들의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도 더욱 다양해짐.

□ 선행연구들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육아지원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에 치우치거나 조사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든지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넘어 서는 종합적 정책방안이 필요함.

- 서문희 등(2006)은, 농어촌 보육시설과 여성농업인센터 내 보육시설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길고,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심각하며, 조손가정과 국제결혼 가정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많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에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가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함.

- 김경희(2000)는 농촌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보육기관, 부모지원, 보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보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사립형 대안 보육기관 설립 정책과 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실시에 따른 소득지원,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 참여 정책, 보육비 지원 정책을 제시. 그리고 보육형태의 다양화 정책, 농촌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 보육 실시, 농촌형 혼합연령 프로그램 개발, 농촌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

- 지성애 등(2003)은 시설관리, 인사관리, 교사 전문성, 부모교육, 보육프로그램 및 부모 만족도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원, 농업여성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배려, 통원거리를 고려한 행정, 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활동 범위와 근거 명확화, 특별프로그램 실시, 환경 및 교재교구의 개선으로 역동적 환경 창출, 건강·영양 관리 개선, 지역사회 연계 및 부모교육 강화 등이 있음.

나. 현황

1) 현행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정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농특회계'를 통해 농어촌 지역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2007년 정부 예산(안) 내역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항목으로 농어촌의 유아교육이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은 2,817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여기에는 공립병설유치원의 설치와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가 포함됨.

- 2007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으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금(농특회계) 중 공립병설 유치원 30학급 신·증설을 위하여 64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짐. 공립유치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통계에서 전체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3.8%임(<표 Ⅱ-3-1>).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표 Ⅱ-3-2>에서 보듯이 읍·면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이 63.9%로 사립에 비해 훨씬 높음.

〈표 Ⅱ-3-1〉 설립유형에 따른 연도별 유치원 수

단위: 개원(%)

연도	국립	공립	사립	계
2002	3(0.0)	4,237(50.8)	4,103(49.2)	8,343(100.0)
2003	3(0.0)	4,281(51.6)	4,008(48.4)	8,292(100.0)
2004	3(0.0)	4,325(52.4)	3,918(47.6)	8,246(100.0)
2005	3(0.0)	4,409(53.3)	3,863(46.7)	8,275(100.0)
2006	3(0.0)	4,457(53.8)	3,830(46.2)	8,290(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

〈표 Ⅱ-3-2〉 유치원의 설립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원(%)

연도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	계
공립(단설)	13(0.2)	17(26.1)	35(53.8)	65(100.0)
공립(병설)	**2,732(63.9)**	484(11.3)	1,058(24.8)	4,274(100.0)
공립 계	2,745(63.3)	501(11.5)	1,093(25.2)	4,339(100.0)
사립(개인)	393(11.9)	1,628(49.2)	1,288(38.9)	3,309(100.0)
사립(법인)	120(19.4)	291(47.2)	206(33.4)	617(100.0)
사립 계	513(13.1)	1,919(48.9)	1,494(38.1)	3,926(100.0)

자료: 나정 외(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교육개발원.

- 2006년 제정된 유치원 교사 학급수당 지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사립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 월 11만원이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의 비율로 구성됨.

□ 정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설립할 때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서 도시지역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 있어 농어촌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러한 법적 배려는 보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줌.

- 여성가족부는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국공립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해 매달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2007년도부터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표 II-3-3〉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 내용

보육 아동 연령 구분	교사 1인당 아동수	
	법적 기준	농어촌 지역 특례
만1세 미만	3	4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5	7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7	9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15	19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	24

□ 농림부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해 2004년부터 다양한 직불제 형식으로 육아비용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의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육아비용 지원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2) 농어촌 지역 유치원 현황

□ 농어촌 지역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매우 높음.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짧은 이용시간, 장기 방학, 통학차량 미운행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음.

– 2006년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8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취원아 비율은 45.1%로 기관수에 비해 매우 낮음.

〈표 II-3-4〉 지역구분에 따른 유치원설치 및 취원아동 현황(2006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수	비율		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치원				
전체	8,290	53.8	46.2	100.0
대도시	2,357	23.3	76.7	100.0
중소도시	2,711	44.4	55.6	100.0
농어촌	**2,763**	**81.9**	**18.1**	**100.0**
도서벽지	459	96.7	3.3	100.0
취원아동				
전체	545,559	22.2	77.8	100.0
대도시	227,722	11.9	88.1	100.0
중소도시	221,840	21.7	78.3	100.0
농어촌	**89,621**	**45.1**	**55.9**	100.0
도서벽지	6,629	85.5	14.5	100.0

자료: 서문희 · 이미화 · 김은설 · 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농어촌 지역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국공립유치원의 높은 설치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유치원 이용률은 낮음.

〈표 II-3-5〉 지역별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비율

단위: %

구분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전체	**58.4**	55.9	57.1	56.8
유치원	**12.2**	16.6	18.7	16.5
보육시설	**39.1**	24.9	26.2	27.9
선교원	0.7	2.9	1.2	1.9
반일제이상학원	5.9	8.3	9.4	8.3
일반학원	6.7	8.5	10.1	8.7
기타	0.11	6.0	3.2	4.1

자료: 서문희 외(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어촌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유치원 이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영시간이 적절치 않다는 점,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음.

〈표 II-3-6〉 영유아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계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일간운영시간부족, 장기방학 등)	18.8	**21.7**	21.0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5.7	4.3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15.1**	11.6
비용이 부담되어서	-	4.7	3.6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	-	7.5	5.8
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6.3	**20.8**	17.4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8	14.2	26.8
필요를 못 느껴서	3.1	7.5	6.5
기타	3.1	2.8	2.9
계(수)	100.0(32)	100.0(106)	100.0(138)

자료: 서문희 · 이미화 · 김은설 · 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농어촌 유치원은 원아모집, 차량운행, 종일반교사 부족 등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표 II-3-7〉 농어촌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주)]

단위: %

아동모집	차량운행	종일반 교사부족	납부금 미납	시설낙후	기타
78.8	63.8	47.5	20.0	23.8	12.5

주: 농어촌 유치원 담당 공무원의 응답임.
자료: 김은설 · 이정원 · 지성애 · 이세원(2007). 농어촌지역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부는 농어촌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 추세임.

-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원당 500~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음. 2004년에는 126개원, 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함.
-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함.

□ 지원의 규모면에서 현행 농어촌 육아시설 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확대가 필요함.

3)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 보육시설의 경우 국가의 인건비 지원비율이 높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의 비중이 크고 민간개인이나 가정보육시설은 도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이는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나타냄.

- 보육시설은 면보다는 읍지역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이 거의 없어서 도시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표 II-3-8〉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계(수)
보육시설수								
전체	5.2	5.2	3.5	44.7	0.2	40.2	1.0	100.0(28,761)
농어촌	6.3	13.9	8.2	45.4	0.0	25.4	0.7	100.0(4,149)
보육정원								
전체	9.9	11.8	5.4	55.7	0.1	15.6	1.5	100.0(1,252,877)
농어촌	7.6	24.4	10.4	48.5	0.0	8.1	1.0	100.0(228,345)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 전국적으로 볼 때, 아동인구가 있음에도 보육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은 총 474개 읍·면에 이르고 이 중 472개가 면지역임. 따라서 면지역에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됨.
- 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읍지역 1개 포함 140개 농어촌 지역임.

〈표 II-3-9〉 보육시설 미설치 및 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2006년)

단위: 개, 명

구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	
	시·군·구	읍·면		시·군·구	읍·면
		읍·면	아동		
총계	134	474(2)	35,753	83	140(1)
대구	1	1	179	1	1
인천	2	9	703	2	6
울산	1	2	161	-	-
경기	5	9	712	-	-
강원	10	24(1)	1,710	4	5
충북	8	35	2,251	7	11
충남	13	45	4,226	9	12
전북	13	65	4,605	11	19
전남	20	87(1)	7,200	17	30(1)
경북	24	107	7,651	18	29
경남	15	90	6,355	14	27

주: ( )는 읍지역
자료: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특히 영아보육의 비율이 낮음.

〈표 II-3-10〉 연령별 보육시설 아동 정원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전체								
2세 미만	14.1	10.9	11.6	10.3	11.3	10.8	29.8	11.7
만2세아	21.1	17.4	18.6	17.5	19.3	20.8	32.8	20.8
만3 ~ 5세아	61.3	67.6	66.7	64.8	65.8	67.6	35.6	65.3
만6세이상	3.5	4.2	3.2	7.4	3.6	0.8	1.8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52,877)	(124,096)	(147,837)	(67,144)	(698,296)	(1,309)	(195,867)	(18,328)
농어촌								
2세 미만	11.6	8.5	10.2	9.7	10.3	9.7	29.6	9.5
만2세아	19.0	16.8	18.1	18.1	17.8	9.7	32.0	18.6
만3~5세아	65.8	71.9	69.4	69.5	67.1	80.6	36.6	71.9
만6세이상	3.5	2.8	2.4	2.7	4.7	0.0	1.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8,345)	(17,369)	(55,618)	(23,733)	(110,711)	(31)	(18,579)	(2,304)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 국가는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음.

□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은 교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불어 원아모집과 연령별 정원 준수가 힘든 사항으로 지적됨.

〈표 II-3-11〉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단위: %

아동모집	차량운행	교사부족	보육료 미납	연령별 정원준수	설치기준 준수	재무회계 규칙준수
45.3	24.4	72.1	23.3	64.0	11.6	4.7

자료: 서문희 · 이미화 · 김은설 · 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세부 과제

1) 육아지원시설 접근성의 제고

□ 대부분의 면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활용성의 증대

- 농어촌 병설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등하원 버스의 미운행, 등하원시간이 부적절성, 농번기인 방학 중 유치원 미운영, 급간식비 미지원, 등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권역화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재 아동 수가 적고 종일반 교사가 부족하며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소규모의 면단위 병설유치원들을 3~4개씩 근접 거리에 따라 묶어 권역화함으로써 위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함.
- 병설유치원 권역화는 비겸직 권역 원감제, 종일반 운영 및 12시간(edu-care) 유치원 운영 협조, 권역별 방학 중 병설유치원 운영, 권역 순환 유치원 전용 등하원 버스의 운행 등을 그 내용으로 함.

□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내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의 신설.

- 농어촌지역에서는 영아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나 수요는 높음. 초등학교나 주민자치센터, 주민회관, 우체국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내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을 설치함.
- 평가인증과 보육시설 설립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설비로 교실을 개조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바, 국가의 설립비용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초등학교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설득 방법이 될 수 있음.

□ 일시보육시설의 설치

- 최근연구(김은설 외, 2007)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보육형태는 일시보육(1000가구 대상 23.6% 응답)이었음.
- 일시보육이란 일상적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나 주양육자가 갑작스런 일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육아지원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함. 농가의 경우 전업주부이면서도 농사일을 함으로써 파트타

임 취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시보육은 실제 기존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일정하지 않은 아동 수를 감안하여 낮은 비용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함.

□ 등하원 차량에 대한 지원 증대와 차량 안전관리 강화

- 국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소형버스가 우선 지원되는 방안을 제안함. 병설유치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표 II-3-12〉 등/하원용 차량 운행 여부

단위 : %(개)

구분		운행함	운행하지 않음	계
유치원	전체	64.5	35.5	100.0(287)
	국공립	60.2	39.8	100.0(254)
	사립	97.0	3.0	100.0(33)
보육시설	전체	94.8	5.2	100.0(306)
	국공립	95.7	4.3	100.0(46)
	법인	100.0	0.0	100.0(103)
	민간	97.5	2.5	100.0(119)
	직장	33.3	66.7	100.0(3)
	가정	74.3	25.7	100.0(34)

자료: 김은설 · 이정원 · 지성애 · 이세원(2007). 농어촌지역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육시설의 경우, 차량운행비 지원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지역면적이 넓고 마을간 거리가 멀어 차량의 이동량이 많으며 따라서 유류비 등 운행소요비용이 많이 듬. 정부는 매달 20만원의 차량 지원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평균 농어촌 차량운행비로 알려진 1,643,609원(서문희 외, 2006)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운행비의 20% 수준인 월 35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것을 제안함.

〈표 II-3-13〉 보육시설 차량이 운행하는 읍/면 수

단위 :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계	평균	표준편차
30.7	27.8	25.3	8.7	4.7	2.5	.4	100.0(277)	(2.4)	(1.30)

자료: 김은설 · 이정원 · 지성애 · 이세원(2007). 농어촌지역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농어촌의 사립유치원은 이용 아동수로는 국공립유치원을 넘어서고 있는데(교육통계, 2006) 차량 운행이 근처 면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수준의 차량지원이 필요함.

2) 비용 지원 확대

□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의 해소

- 조부모보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방안을 마련함. 조손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임. 이혼 등 가정의 해체로 인해 조손가정이 되었으나 부모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 보육료나 교육비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는 이웃의 추천과 객관적 검증에 의해 육아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 농업용 중장비 차량 보유 세대에 대한 소득계층 산정의 재조정이 필요함. 실제 소득 수준은 낮으나 경운기 등 농업용 중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교육비·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의 경우는 중장비 소유가 생업과 관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재산과 소득이 사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소득계층 산정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악용의 소지는 반드시 방지되어야 함.

〈표 II-3-14〉 교육비/보육료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비율	수
소득은 없으나 재산소유로	20.9	41
생계수단을 위한 차량소유자여서	**54.6**	**107**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서	10.7	21
서류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4.1	8
수입보다 채무가 많으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3.1	6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어서	2.6	5
금융기관부채가 아닌 일반부채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서	2.0	4
아이의 출생 미신고로 인해	2.0	4
계	100.0	196

자료: 김은설 · 이정원 · 지성애 · 이세원(2007). 농어촌지역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수입 불안정기의 교육비·보육료 대출 제도 실시

- 농어민 가정의 특성 중 하나는 연간으로 보았을 때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임. 수확기에 비해 파종기에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높음. 따라서 수입이 부족한 시기에 저리로 대출을 받아 수입이 높은 시기에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농업인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임.
- 농·수협 등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출제도를 실시함. 대출금은 반드시 유아교육비나 보육료로 사용함을 증명해야 하고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국공립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의 경우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
- 평균 소득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급·간식비 납부에 대한 부담은 유치원 이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5세 무상교육비 지원제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 육아지원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의 지원

- 조사에 의하면(김은설 외, 2007), 시설·설비의 낙후성이 농어촌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데 곤란한 점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옴. 이러한 농어촌 가정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 유치원/보육시설 특별 환경개선비(가칭)」라는 명목의 지원이 있어야 함.

□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지원

-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립유치원에만 지원되고 있는 교사 수당을 보육시설에도 지원해야 함. 뿐만 아니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도 실시될 필요가 있음.

□ 1인 교사체제 소규모 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육인력 채용 지원

- 권역화되지 못하는 환경에 위치한 국공립병설유치원 중 단일 학급으로 구성되어 교사 1인이 유치원 전체를 이끌어가는 소규모 체제인 경우, 종일반 운영을 지원해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요구됨. 국가가 파견하는 종일반 교사가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 종일반 보육 인력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여 모집함. 국공립보육교사의 급여수준에 비례하여 시간당 급여를 제공하며 많은 보육교사가 유치원에서도 급여에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도 있음.
- 소규모 병설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평가인증 준비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 지방자치체별로 평가인증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맥락에서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할 사안임.

-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소재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 보육정보센터와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어야 함.
- 한편, 지역 농·수협 등 금융기관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임을 증명하고 제도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4) 농어촌 지역 양육환경의 개선

□「여성농업인센터」등 정부지원시설의 복합센터기능 강화

- 여성농업인센터와 같은 국가지원시설에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복합센터적인 기능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함. 이러한 복합센터를 통해 농어촌의 교육적, 문화적 갈증에 대한 요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여성농업인센터는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외진 면지역에 설립되어 지역민의 보육수요에 잘 부응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방과후를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음. 농어촌 가정의 상담기능,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도농교류 사업 등의 활동을 함.
-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여 사업자체가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전체 10~20%의 지원비를 담당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사업의 전국 확대가 좀 더 활기를 띨 것임.
-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일부지원을 얻어, 기존 공공건물(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을 이용한 국공립시설로서의 「여성농어민센터(가칭)」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신설될 농어업인센터는 국공립으로 설립하여 운영에 안정성을 두며 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다문화·조손 가정 도우미」(가칭)의 활용

- 농어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그 해결을 도와

주는 (가칭)'다문화·조손 가정 도우미(일명 농어촌 가정조력사)'를 양성하여 활성화함.

- 다문화·조손 가정 도우미의 역할은 크게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조손가정에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하여(주로 일주일에 3~4번) 1~2시간 정도 머물면서 영유아의 건강과 조부모의 건강, 안전 등을 체크하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조부모에게 설명해주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영유아에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닌 젊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서적 연대감을 갖고 돌봐주며 가정 환경이 위생적이도록 유도함.
-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문화·조손 가정 도우미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하여 가족구성원 전체로 하여금 변화된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 외국에서 온 결혼이민자에게는 언어 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조리, 육아, 가정행사 등을 함께 하면서 곁에서 돕게 되고,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에게는 상대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함.
- 특히 배우자(남편)에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상대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정립시켜 가도록 이끌어감. 배우자를 포함한 기타 가족 전체에게 다문화·조손 가정 도우미의 방문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방법과 관련 내용들을 실연으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다문화·조손 가정 도우미는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하고 고용함. 인근의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교양과 인격이 적절한 사람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자격을 부여함. 자격부여제도를 정규화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자격증이 인정되도록 함.

□ 상호 협력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아동 수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 등하원 버스를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하고, 원내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행사 진행시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협력을 하는 사례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 과도한 아동 유치경쟁을 지양하고 재정면에서도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가정 양육과 취업모 지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이용보다는,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는 가정에서도 영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도우미 파견제도를 도입, 발전시키고 현행 취업모 육아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임.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 가정내 개별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소규모 보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영리 베이비시터회사가 가정내 보육 틈새를 메워 왔고, 최근에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가정내 보육인력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관리 장치가 없음.

○ 가정내 보육을 희망하는 영아 가정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가칭)보육도우미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비영리 단체가 자격을 인증함.
-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는 일정한 조건 강화를 통해 등록제를 실시, 관리함.

○ 정부가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도우미 파견을 확대함.

- 보육도우미 교육비와 운영비를 보조함.
- 부모의 이용 비용을 소득별 차등형태로 지원함.
- 가정내 영아보육 이용층을 확대함.

가. 배경

□ 보육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그러나 시설보육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정내 보육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Pollard(1991)는 국가단위의 이념이 아닌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이념을 적용하여 자유주의(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회주의(Socialist), 사회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4가지 이념으로 분류하고, 사회 재생산적 입장에서는 아동, 부모, 보육제공자,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유형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하여 정부가 동일하게 지원하고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영아는 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보육을 원하는 부모가 많으나, 우리의 경우 가정보육도 시설보육화되어 있음.

- 보육선진국들의 경우 가정보육이 공적영역에 포함되어 부모의 소규모 개별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파견보육도 지원하며, 보육제공자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함.

□ 가정내 양육 지원은 가정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장점임.

○ 이동의 불필요, 부모의 다양한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 보육 대상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동일한 공간에서 보육 가능, 다른 집의 여러 아이들이 함께 보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킴.

○ 그러나 가정내 보육의 문제로는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미비, 정규적인 가정내 보육제공자의 최소임금수준이 보장 문제, 가정이 고용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 책임부담 등을 들 수 있음.

□ 영아의 부모들은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도 있음.

○ 2004년 조사 결과 단독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별로 혈연 17.5~21.0%, 비혈연 1.4~3.3%임. 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음.

〈표 II-4-1〉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2004년)

단위: %,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혈연	19.6	21.0	17.5	7.7	3.0	0.4	0.3	9.4
동거조부모	7.0	7.4	8.3	4.3	2.0	0.2	0.3	4.1
비동거조부모	11.2	12.3	7.3	3.2	0.6	0.2	–	4.6
친인척	2.5	2.3	2.6	0.7	0.4	–	–	1.2
비혈연	3.3	3.3	1.4	1.0	–	–	0.3	1.1
(수)	(358)	(391)	(422)	(441)	(508)	(493)	(348)	(2,962)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비용은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임.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를 보면 비용은 5.0배, 소득 대비 비율은 0.7배임.

○ 2005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영아 엄마의 경우도 70.9%가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며, 9.34%는 가사대리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보육시설 이용률은 15.3%이었음.

〈표 II-4-2〉 취업모의 영아보육 실태: 실제 보육자(2005년)

단위: %(명)

구분	부모님・친인척	보육시설	가사대리인	육아휴직 후 본인	기타	계(수)
전체	70.9	15.3	9.4	4.0	0.4	100.0(1,357)

자료: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 조사.

□ 영아는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48.5%임.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시간제 보육 요구가 다소 높음.

〈표 II-4-3〉 영아 모의 연령 및 취업여부별 시간제 보육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매우자주 (주2~3회)	비교적자주 (주 1~2회)	가끔 (월 1~2번)	매우 가끔 (년 1~2번)	없음	계(수)
전체	48.5	10.0	9.4	25.1	5.1	1.9	100.0(882)
취업	60.4	9.4	10.2	17.0	3.0	-	100.0(235)
미취업	44.3	10.3	8.7	28.1	5.9	2.6	100.0(643)
모부재	25.0	-	75.0	-	-	-	100.0(4)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보육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가정보육교사제도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로 높았고, 필요하지 않다 16.4%, 잘 모르겠다 10.3%이었음. 이는 2004년도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6%로 높았고, 필요하지 않다 19.3%, 잘 모르겠다 4.16%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즉, 응답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가정보육교

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표 II-4-4〉 연도별 영아 부모의 가정파견 보육도우미 제도의 필요도

단위: %(가구)

구분	필요	불필요	잘 모름	계	(수)
2007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73.2	16.4	10.3	100.0	(882)
2004 가정보육교사	76.6	19.3	4.1	100.0	(1,064)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보육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

– 부모 특성별로 차이는 모 취업은 통계적 유의도가 없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하에서는 다소 혼선을 보이나 그 이상에서는 8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5〉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제도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필요함	불필요함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73.2	16.4	10.3	100.0(882)	
모취업					
취업	73.2	14.5	12.3	100.0(235)	
미취업	73.4	17.3	9.3	100.0(643)	na
모부재	50.0	-	50.0	100.0(4)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71.2	11.9	16.9	100.0(118)	
151~200만원	68.9	17.2	13.9	100.0(209)	
201~250만원	76.7	18.6	4.7	100.0(129)	
251~300만원	71.7	21.4	6.9	100.0(173)	27.0(14)*
301~350만원	79.5	12.3	8.2	100.0(73)	
351~400만원	66.7	19.4	13.9	100.0(72)	
400~500만원	82.7	10.7	6.7	100.0(75)	
501만원 이상	81.8	9.1	9.1	100.0(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보육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존재하는 가정내 보육에 대하여 비공식성의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이 필요함.

– 베이비시터 회사나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NGO에 의한 가정내 서비스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영역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이나 사후관리 등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어 대책이 필요함.

나. 현황

□ 가정내 보육은 경제위기 이후 벤처 사업의 하나로 영리 회사가 틈새시장을 찾아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93개 업체가 본사 또는 가맹점 형태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된 업체 본사 중 100.0%, 가맹점 중 44.3%, 단독업체는 88.9%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유료직업소개업소로의 등록은 본사 71.4%, 가맹점 28.6%, 단독 업체는 55.6%로 절반가량만이 유료직업소개업소로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I-4-6〉 베이비시터 회사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사업자 등록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전체	57.0	37.6
본사	100.0	71.4
가맹점	44.3	28.6
단독	88.9	55.6

자료: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유료직업소개업 미등록 이유는 법이 요구하는 대표자 조건, 20㎡ 이상의 사무실 및 법으로 정한 상담원 1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본사가 직업소개업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 가맹점이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회사를 설립한 대표자 1인이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73.1%이고 대표자 이외에 직원을 한 명 두고 2명이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12.9%이고, 그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최대 규모는 상근자의 수가 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7〉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상근인력 분포 비교

단위: %, 개소

상근 직원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9명	계
2007년									
비율	6.5	73.1	12.9	3.2	1.1	2.2	1.1	-	100.0
수	6	68	12	3	1	2	1	-	93
2001년									
비율	-	57.9	23.7	7.9	3.9	5.3	-	1.3	100.0
수	-	44	18	6	3	4	-	1	76

자료: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베이비시터로 파견하기 전에 실시하는 초기 교육시간은 평균 14시간인데, 업체별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본사의 경우가 가맹점이나 단독업체보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4-8〉 베이비시터 초기 교육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14.0	9.4	3	40	(93)	
본사	16.5	10.8	4	40	(14)	1.0
가맹점	13.9	9.0	3	40	(70)	
단독	10.9	9.8	3	35	(9)	

자료: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베이비시터 파견 전 실시하는 초기 교육 이외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업체의 62.4%에 불과하였고, 실시하는 경우에도 평균 4.4개월에 4.5시간의 교육에 불과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여성가족부가 2007년 4월부터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월 120시간 한정의 시간제 서비스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음.

- 2007년 4월 이후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386명이고, 연계 가정은 5,052가정임. 이용 가정은 맞벌이 가정이 50%를 넘고, 일반가정도 1/5 정도임.

-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고, 차상위이하 계층 가정에는 요금의 80%를 지원함.
-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50% 이상이 맞벌이 가정이고, 일반형보다는 저소득층의 저렴형이 더 많아서 아이돌보미는 저소득층 양육 지원 기능이 강함.

〈표 II-4-9〉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유형

단위: 건

가정 유형	한부모	조손 가족	장애인 부모가족	장애아동양육가정	결혼이민자 가족	맞벌이 가족	일반 가정	기타	계
가정 수 누계	761	43	47	74	169	2,450	1,114	534	5,276
건수 누계	6,958	482	513	701	1,494	21,176	8,098	3,298	42,720

자료: 여성가족부(2007). 내부자료.

〈표 II-4-10〉 아이돌보미 이용 유형

단위: 건

월별	평일			주말			계
	저럼형	일반형	계	저렴형	일반형	계	
누계	14,168	12,541	26,711	3,366	1,033	4,378	31,089

자료: 여성가족부(2007). 내부자료.

□ 여러 민간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가정내 아이 돌보는 인력 파견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40시간의 육아돌보미 교육을 위탁 실시함.

〈표 II-4-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 제공자 교육 실적(2006년)

단위: 명, %

구분	입교(A)	수료(B)	취업(C)	수료율(B/A)	취업률(C/A)
육아 돌보는 이	431	416	385	96.5	92.5
영유아 생활지도	324	305	257	94.1	84.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07). 내부자료.

○ 노동부가 YMCA에 시간제 공간 및 파견보육인 아가야 사업을 하고 있음.

- 파견자는 사회적 일자리 공간보육 참여자와 일반 베이비시터가 있음. 공간보육참여자는 교육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과정교육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베이시비터는 단기교육으로 함.
- 베이비시터는 회비를 센터에 납부하며, 센터는 이를 시터들의 교육 및 활동에 사용한다. 월 회비는 월수입 20만원 미만은 없고, 월수입 20만원~50만원은 1만원, 월수입 50만원~90만원은 2만원, 월수입 90만원이상은 3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 비용은 아동수별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 1명을 기준으로는 최소 3시간에 16,000원이고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 야간 및 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이외 종일, 1박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하게 서비스별 비용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음.
- 아가야에 회원으로 가입한 베이비시터는 돌봄(care)서비스에서 발생할 불의한 사고에 대비하여 '돌봄 복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위탁하여 가정내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음.

-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어 도시근로자 월 평균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135 가구에 무료 가정보육사가 파견되었음.
-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신입교육시간은 80시간 교육, 1박 2인의 24시간 MBTI 교육, 현장실습 40시간으로 총 144시간임. 월 1회 보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월례모임을 함.
- 도우미 급여는 2007년에 영아보육도우미는 시간급 3,503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28,759원이 기본이고,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674,710원이 실 수령액이 됨. 야간도우미는 시급 5,300원으로 최대 6시간을 일하면 699,600원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실 수령액이651,072원이 됨.
-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아보육서비스와 야간보육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됨. 영아보육도우미는 오전 8시 이후 하루 8~11시간(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급에서 제외)을 보육하고, 야간보육도우미는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오후 4시 이후부터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보육도우미로 파견된 이후 돌보는 아동의 식습관, 건강, 성격 밝아짐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보육도우미도 활동 이후 전문 가정보육사로서의 자부심, 일의 즐거움, 행복감 증대, 가정 화목 증대의 4가지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가정내 보육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하고, 사업들이 산발적이며, 보육인력 관리나 내용 등이 보육서비스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어려움.
- 가정내 보육 제공을 질 높은 일자리로서 근로자성을 보호하기 어려움.

다. 세부 과제

□ 가정내 보육도우미는 근로자성 보호와 자격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정내 보육도우미 파견제도를 도입함.

□ 영리 베이비시터사업체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고, 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함.

1) (가칭)보육도우미 자격

□ 보육도우미는 20세 이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하고 관련 단체가 인증함.

-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과 별도의 실습으로 구성함. 교육내용은 영아발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위생과 질병관리, 식생활 관리 등,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참조하되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구성함.
-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함.
- 영리업체의 경우 시터 파견후 시터 및 부모의 의견 수렴, 시터의 활동 보고, 보수 교육 등 사후관리는 부실하며, 파견후 활동내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여 육아활동 보고를 요구하지 않거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제출 단위 기간이 없이 수시로 받는 등 사실상 시터 파견 후의 서비스 질 관리에는 소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보육도우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을 받음.

2) 보육도우미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가정보육도우미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함.

-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함.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우미의 집도 이용 가능하도록 함.
-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함.

□ 보육도우미에게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작성, 보고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관리를 도모함.

- 매일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기 보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함.

□ 보육도우미와 아동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 비용은 정부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함. 아동가정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이외에, 도우미를 위한 활동지침 및 아동을 위한 도우미와 부모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도우미와 부모가 지키도록 하여 도우미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보호함.

3)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주체

□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 주체는 정부 및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사업체로,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 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유사 지역사회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위탁 사업체로 지정함.

□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보편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적어도 동 단위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선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1개소를 목표로 함.

4) 비용 지원

□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이 추진함.

- 정부가 실시하는 보육도우미 위탁 사업체에 최소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함. 보육도우미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료와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함.
- 보육도우미 이용 비용을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정부가 지원함.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 아동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낮출 뿐 아니라 가임여성의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제도 등 모성보호 제도와 직장보육시설 설치, 세제혜택 등의 관련 제도가 제·개정되었으나 실행률은 저조함. 따라서 이들 제도를 강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취업모 자녀 중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보다는 개인양육지원을 선호하므로 일반 보육시설이 취업모의 영아 보육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됨.

○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실행 중인 각종 제도를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지원을 확대·개발할 필요가 있음.

- 모성보호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활성화
-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증진
- 취업모 가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존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가. 배경

□ 지난 20년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600만명(1985년)에서 1,000만명(2006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44.7%(1985년)에서 54.7%(2006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취업모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5-1〉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경제활동참가율	44.7	49.9	51.4	51.9	52.8	54.7
고용률	43.6	49.0	50.5	50.0	51.1	53.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각 연도). 제 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2007)에서 재인용.

□ 그러나 지속적인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대 후반에 정점에 도달하고 결혼·출산·육아기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해 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 서서히 회복되는 형태의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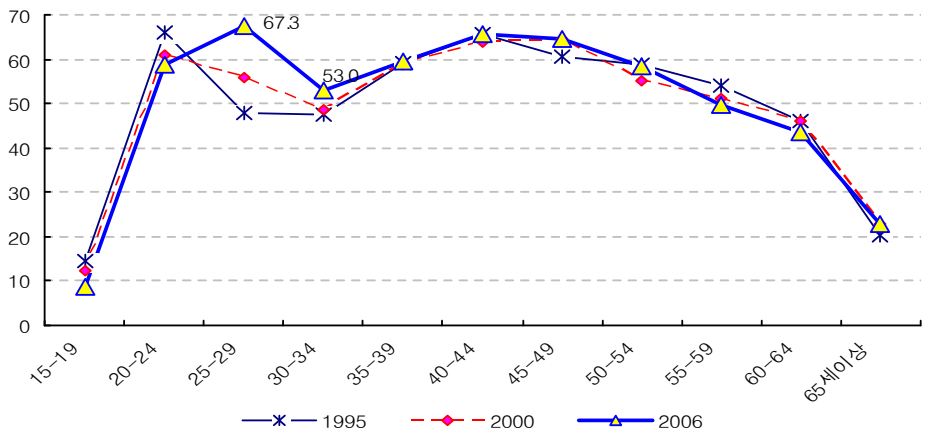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그림 II-5-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각 년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들에 비해서 여전히 16% 포인트

가량이 낮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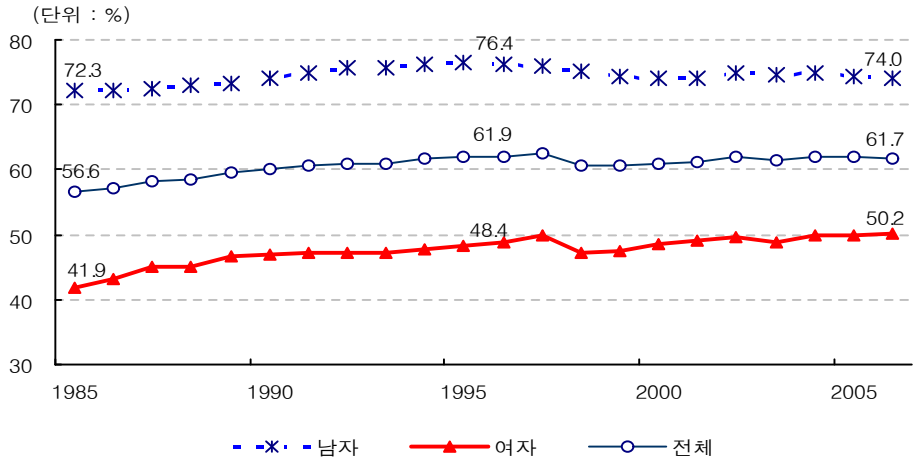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그림 II-5-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는 2000년의 20대 초반에서 2005년 20대 후반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경제활동 참가가 가장 위축되는 시기는 공통적으로 30대 초반에 해당함.
- 여성의 학력수준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활동 참가가 남성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여성의 주된 의무로 인식되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음.

  또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30대 초반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심화되는 경향으로부터 육아 부담이 취업모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남성취업자에 비해 낮은 편임.

–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근로자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편임.

〈표 II-5-2〉 성별 비정규직 분포(2002~2006년)

단위: %

	2002년		2004년		2006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여성	66.6	33.4	56.3	43.7	57.3	42.7
남성	76.5	23.5	67.8	32.2	69.6	30.4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 각 연도). 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 시스템 변화(2007)에서 재인용.

– 육아, 가사 등 가정의 양립 부담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남성근로자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혼 여성이라도 육아·가사 등의 요인이 없다면 충분히 정규노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비정규노동에 대한 선택은 육아 및 가사의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는 성별 분리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정성미, 2006;은수미. 2007에서 재인용)

–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표 II-5-3〉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2005년)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1~4인	25.6	7.8	24.9	8.3	23.3	7.1
5~9인	60.2	22.4	59.6	23.4	54.6	21.2
10~29인	80.4	39.6	81.1	41.1	70.3	38.1
30~99인	92.2	58.6	92.9	60.8	71.9	55.0
100~299인	94.5	74.7	94.9	75.2	79.1	70.5
300인 이상	98.9	79.6	99.0	79.9	82.3	73.9

자료: 경제활동 부가조사(통계청, 각 연도). 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 시스템 변화(2007)에서 재인용.

□ 여성의 학력 수준 증가와 노동지위의 불안정, 이와 맞물린 맞벌이의 필요는 여성에게 취업과 가정(육아)사이에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욕구가 출산·육아기에도 포기되지 않고 일-가정이 성공적으로 양립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가임연령대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현재 1.13명 수준으로 이러한 낮아진 상태임. 향후 일-가정 양립정책이 강화되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여성인력 활용 제고, 출산율 제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자녀 출산과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임.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노동자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가 남녀 모두에 관련된 사항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나. 현황

1) 모성보호

□ 여성취업자의 일과 가정(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육아휴직제도가 있음.

※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해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도록 2001년에 도입된 제도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영유아에 대해서는 생후 3년 미만일 때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함.

- 육아휴직제도는 도입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월 현재 17,390명이 이용하였음.

〈표 II-5-4〉 육아휴직 사용현황(2001~2007년)

단위: 명, 백만원

기간	지급액	인원			월급여액	평균 육아휴직 일수	
		전체	여성	남성		여	남
2001	5	25	23	2	20만원	185일	293일
2002	3,087	3,763	3,685	78	20만원	178일	146일
20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195일	158일
2004	20,803	9,303	9,122	181	40만원	209일	186일
2005	28,242	10,700	10,492	208	40만원	211일	185일
2006	34,521	13,672	13,442	230	50만원	216일	191일
2007	48,538	17,390	17,132	258	50만원	-	-

자료: 고용보험통계연보(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 최근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사용 여성은 분만을 경험한 여성 중 22.5%에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임.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한 2006년 현재 28%에 불과해 두 가지 양립지원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는 저조한 상황임.

〈표 II-5-5〉 분만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추이

단위: 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만인원(A)	44,649	48,348	50,837	60,856
산전후 휴가급여(B)	32,113	38,541	41,104	48,972
육아휴직 급여(C)	6,816	9,304	10,700	13,67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산전후 휴가급여 사용자 비율(B/A)	72.0	79.7	80.9	80.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육아휴직 급여 사용자 비율(C/A)	15.3	19.2	21.0	22.5
산전후 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C/B)	21	24	26	28

자료: 고용보험통계연보(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이용률 저조는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제도 이용의 접근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과 모성보호에 비우호적인 사회기업 문화에 상당부분 기인함.

– 2007년 현재 여성 임금 근로자 중 46.3%만이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33.4%에 불과함.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 및 무급가족업에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표 II-5-6〉 여성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실태

단위: %

고용형태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합계
정규직	55.8	44.2	100.0
비정규직	33.4	66.6	100.0
합계	46.3	53.7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통계청, 2007. 3).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2007)에서 재인용.

-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제도의 수혜대상자조차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2007년도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회사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21.6%). 이외에 육아휴직을 이용함으로써 교육·승진 등에 초래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원직복귀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 등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주에게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기업주 및 사회의 부정적 의식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야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표 II-5-7〉 육아휴직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해당 안됨	회사분위기	대체인력 미확보	불이익	원직복직 불확실	수당이 적음	직장이 더 좋음	기타	계(수)
전체	7.7	21.8	14.1	11.5	7.7	9.0	6.4	21.8	100.0(80)
19인이하	11.8	23.5	5.9	11.8	11.8	11.8	-	23.5	100.0(17)
20-49인 이하	5.0	20.0	30.0	5.0	10.0	-	-	30.0	100.0(17)
50-299인 이하	5.9	17.6	11.8	17.6	-	11.8	11.8	23.5	100.0(17)
300인 이상	8.3	25.0	8.3	12.5	8.3	12.5	12.5	12.5	100.0(24)

자료: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 현재 산전후 휴가를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기업주가 산전후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1년 이후 연장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가 존재함.

□ 자녀 출산과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이나 육아휴직 등 노동자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부모 중 주로 여성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음. 남성근로자의 이용은 2006년 현재 여성근로자의 1.7%수준에 불과하여 출산 및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남녀 근로자 모두의 제도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남녀 모두의 책임과 권리를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표 II-5-8〉 육아휴직 급여 신규수급자 현황(각 연도)

단위: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여 성	3,685	6,712	9,122	10,496	13,440
남 성	78(2.1)	104(1.5)	181(1.9)	208(1.8)	230(1.7)

주: %는 여성근로자 이용자수 대비 남성근로자 이용자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고용보험통계연보(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2) 직장보육시설

□ 여성근로자의 육아지원 제도 중 하나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도화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민간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설치 및 운영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간접지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는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7%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298개소로 14,53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즉, 전체 29,233개 보육시설 중 1.0%가 직장보육시설이고, 전체 보육 아동 1,040,361명 중 1.4%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775개 중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47%인 365개소로 2005년 37%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러나 의무이행 사업장 365개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19개,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132개,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한 경우는 34개에 불과하며, 미이행 사업장은 53%인 410개에 이름.

〈표 II-5-9〉 의무사업장의 직장 보육 서비스 제공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소계	설치	수당	위탁	
2004년	824	196	135	61	-	628
	(100.0)	(23.8)	(16.4)	(7.4)	-	(76.2)
2005년	817	302	170	105	27	515
	(100.0)	(37.0)	(20.8)	(12.9)	(3.3)	(63.0)
2006년	775	365	119	132	34	410
	(100.0)	(47.1)	(15.4)	(17.0)	(4.4)	(52.9)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이행 현황을 사업장 규모 및 지역별로 보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인 사업장이 38%,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5%,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2%가 직장보육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행률이 높음.

〈표 II-5-10〉 기업규모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현황(2006년)

단위: %

구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	근로자 500인 이상~1,000인 미만	근로자 1,000인 이상
비율	38%	45%	52%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133개 기관 중 131개 기관, 99%으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개 중 26개로 62%, 공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장 531개 중 186개로 35%, 학교 69개 중 22개로 32% 등으로 학교와 민간부문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국공립학교에서도 설치비율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II-5-11〉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률(2006년)

단위: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775(100.0)	365(47.0)	199(26.0)	132(17.0)	34(4.0)	410(53.0)
국가기관	42(100.0)	26(62.0)	25(60.0)	-	1(2.0)	16(38.0)
지자체	133(100.0)	131(99.0)	57(43.0)	73(55.0)	1(1.0)	2(1.0)
학교	69(100.0)	22(32.0)	10(15.0)	12(17.0)	- (0.0)	47(68.0)
민간(공사 포함)	531(100.0)	186(35.0)	107(20.0)	47(9.0)	32(6.0)	345(65.0)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 직장보육시설의 낮은 설치율은 직장보육관련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임.

3) 영아 보육 서비스

□ 육아휴직 등 취업모 자신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시설 등 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그런데, 자녀가 영아인 경우 보육시설 이용은 선호되는 방식이 아님.

–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모의 취업여부별 이용률에 관한 2004년도 통계(서문희 외, 2005)를 살펴보면, 취업모 영아의 대리양육은 친인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개인 대리양육의 비율을 포함하면, 보육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음. 따라서 보육시설은 취업모 영아 양육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I-5-12〉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2004년)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기관	28.5	9.8	50.0	14.6	90.6	80.8	80.4	84.3
보육시설	25.8	6.0	50.0	11.2	50.4	31.6	37.3	38.9
유치원	0.3	0.1	-	0.2	23.2	29.6	29.4	27.2
선교원	0.7	0.2	-	0.3	3.2	2.8	2.0	2.9
반일제이상 학원	0.3	0.3	-	0.3	12.2	14.4	11.8	13.4
일반 학원	0.3	0.1	-	0.2	15.1	13.8	11.8	14.3
기타	1.3	3.1	-	2.6	4.1	6.0	-	5.1
혈연	61.9	8.6	-	21.8	36.8	5.3	82.6	19.9
동거조부모	22.8	3.7	-	8.9	17.0	3.2	66.7	10.6
비동거조부모	34.6	3.8	-	11.7	16.7	1.5	8.0	7.5
친인척	7.0	1.6	-	2.9	3.8	0.7	11.7	2.1
비혈연	9.6	0.3	-	2.7	2.5	0.1	3.9	8.1
(수)	(302)	(864)	(2)	(1,171)	(682)	(1,053)	(51)	(1,79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표 II-5-13〉 취업모의 영아보육 실태: 실제 보육자

단위: %(명)

구분	부모님·친인척	보육시설	가사대리인	육아휴직 후 본인	기타	계(수)
전체	70.9	15.3	9.4	4.0	0.4	100.0(1,35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 조사.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관이 멀거나 기관에 대한 불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됨.

〈표 II-5-14〉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007년)

단위: %(명)

구분	질병·장애	기관이 멂	양육자 있음	비용부담	기관불신	계(수)	X^2(df)
전체	0.2	42.4	20.3	11.0	26.0	100.0(516)	
연령							
만 0세	0.5	37.8	17.1	11.9	32.6	100.0(193)	
만 1세	-	51.1	20.6	13.3	15.0	100.0(180)	24.8(8)**
만 2세	-	37.8	24.5	7.0	30.8	100.0(143)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4) 세제 지원

□ 육아를 위한 세제 지원은 크게 소득공제와 비과세로 구분됨.

□ 소득공제의 경우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며, 그 외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 자녀 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실시되고 있음.

-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1명당 연 100만원까지, 다자녀 추가공제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50만원부터,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는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연간 200만원까지,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자녀 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산하여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 지원 중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있는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에 취업모가 포함된 맞벌이 가정의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없어서 취업모 가정을 위한 차별화된 세제 지원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내에서 비과세되고 있음.

- 맞벌이의 경우 각각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대리양육 비용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또한 취업모 가정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다. 세부 과제

□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각종 세제혜택 등 현재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는 종사자 지위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함. 여성취업자의 비정규직화는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바 이들을 함께 지원할 방안 마련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 방안을 모색함.

□ 영아가 있는 취업모가 집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함.

□ 취업모의 소득이 가정의 소득원이 아니라 주소득원인 경우에 대한 부가적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

1) 기존 모성보호 제도의 지속적 확대

□ 최근 정착되기 시작한 모성보호 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시킴.

- 이용 형태의 유연성 제고(시간제 육아휴직,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근로자를 위해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시간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육아휴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이 일정 연령에 이르는 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세부적 내용을 취업모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재 일률적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급여 대체율이 너무 낮아 저소득 가구의 육아휴직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야 함.
-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최저선을 책정하고 그 이상의 급여를 소득 급간에 따라 저소득층에 높은 비율의 급여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급여체계의 변경이 필요함.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시 기업주 부담 경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에 있어 근로자의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의 활용률 제고

- 우선 지원 대상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
- 현재 근로자 1인당 매월 20만원~5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인상하거나 육아휴직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사용주에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절감시키는 방안 필요함.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안되었던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관련 기업 인센티브,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과 같은 직장문화 개선 관련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킴.

–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 2008년 7월부터 출산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쓰도록 개선되었음. 그러나 3일간의 기간은 충분하지 못하며 무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

제로 남성근로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임(홍승아 외, 2006).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약 1주일간 입원하게 됨을 고려하여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유급으로 제공하여 남성근로자의 실질적 이용을 독려하여야 함.

- 현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근로자중 누구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실질적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여 육아의 성별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여 일반적으로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아버지의 자발적인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함.

2)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정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설치를 망설이는 미설치 사업장,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비 및 운영비를 각 사업장의 규모와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으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무조건적 시설 설치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음.
  -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는 보육시설 위탁 또는 수당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함.
  - 보육시설 위탁 또는 수당 지원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률을 제고하도록 함.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나 수당지급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권장 수준에 불과하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조항을 마련하도록 함.

□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영아가 있는 취업모를 위해 질 높은 영아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시킴.

- 영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믿을만한 기관의 부족 때문에 시설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와 양적 확대가 동시에 요구됨. 이를 위해 영아 밀집지역 보육시설의 영아반 구성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함.

□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 주변의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책 모색함.

- 보육도우미 파견제도 등을 도입하여 취업모의 가정내 영아 보육을 지원함.

3) 세제 지원 확대

□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마련함.

-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시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마련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소득보전을 가능케 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함.
-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보육수당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함.
- 가정내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YMCA와 같은 비영리기관 또는 기타 파견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수준으로 내에서 소득공제함.

4)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각종 제도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취업 여성 중 자영업 종사자, 무급가족업 종사자, 임시직 종사자, 일용직 종사자는 이들 지원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여성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함.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혜자를 확대하

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등을 완화하여야 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가 신청 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완화되어함.
- 비정규직 여성이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날시 계약기간 종료시점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의 수급권을 출산시점의 계약기간내 존재여부에만 의존하도록 함.

– 자영업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휴가 및 휴직 개념의 적용이 곤란한 취업모에 대해서는 가구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보육도우미 이용 우선권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육아시설 : 유형의 재개념화와 접근성 제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형은, 1)지역내 거점센터로서 여타 시설의 모형 기능을 수행할 국공립 시설과 2)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3)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3개 유형으로 재개념화하여, 사립·민간 육아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그 밖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 한 나라의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설치 수준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확충 성과는 가시적이지 못함.

○ 공교육·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시설의 분담률을 이용 아동 기준 30% 이상으로 제고하고,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모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취약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및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선도적 기능 강화

가. 배경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분담률은 교육·보육의 공공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특히, 유아교육·보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공립시설을 확보하여, 국공립 대 민간의 적정한 수준의 원아 분담 비율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국공립시설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대기 아동도 많아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및 민간시설의 반대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이 미흡한 실정임.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이 육아지원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과 민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임.

□ 국공립기관은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모형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보편적 교육·보육프로그램 및 표준교육·보육 프로그램 외에도 아동 및 지역 특성화프로그램, 취약교육·보육 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추가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육아와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 중 하나임.

- 「새로마지플랜 2010」(2006. 7)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함.
- 「새싹플랜」(2006. 7)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와 이용 아동수를 보육시설수의 약 10%, 아동수의 약 20%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함.

나. 현황

□ 최근 5년간 유치원 수와 원아 수 변화추이

- 유치원 수는 2002년 8,308개원에서 2006년 8,290개원으로 총 18개원 감소하였음.
  - 국공립유치원은 241개원 증가, 사립유치원은 259개원 감소하였음.
  - 단, 사립유치원의 학급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사립유치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6년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4,460개로 전체 유치원의 53.7%를 차지함.
- 유치원아수는 2002년 550,150명에서 2006년 545,812명으로 총 4,338명 감소하였음.
  - 국공립유치원아 수는 1,692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6,030명이 감소하였음.
  - 2006년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121,324명으로 전체 원아 수의 22.2%를 차지함.

〈표 II-6-1〉 연도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단위: 개, 명

연도	유치원 수(학급수)			유치원 원아 수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2002	8,308(21,493)	4,240(6,012)	4,089(15,481)	550,150	119,632	430,518
2003	8,292(21,839)	4,284(6,122)	4,008(15,717)	546,531	121,322	425,209
2004	8,246(22,046)	4,328(6,266)	3,918(15,780)	541,713	123,906	417,807
2005	8,275(22,409)	4,412(6,451)	3,863(15,958)	541,603	124,283	417,320
2006	8,290(23,010)	4,460(6,588)	3,830(16,422)	545,812	121,324	424,488

□ 최근 5년간 보육시설 수와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변화 추이

- 보육시설 수는 2002년 22,147개소에서 2006년 29,233개소로, 총 7,086개소 증가하였음.
  - 국공립보육시설은 313개소 증가, 민간보육시설은 6,773개소 증가하였음.
  - 2006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1,643개소)은 전체 보육시설의 5.6%에 지나지 않음.
-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2002년 800,991명에서 2006년 1,040,361명으로, 총 239,370명 증가하였음.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11,306명 증가,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228,064명 증가하였음.
  - 2006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수(114,657명)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의 11.0% 수준임.

〈표 II-6-2〉 연도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단위: 개소, 명

연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2002	22,147	1,330	12,679	199	7,939	800,991	103,351	597,971	8,730	90,939
2003	24,142	1,329	13,644	236	8,933	858,345	103,474	640,545	10,391	103,935
2004	26,903	1,349	14,728	243	10,583	930,252	107,335	691,343	11,787	119,787
2005	28,367	1,473	15,243	263	11,388	989,390	111,911	734,554	12,985	129,940
2006	29,233	1,643	15,405	298	11,887	1,040,361	114,657	761,688	14,538	149,478

다. 세부 과제

1)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및 단설유치원 설립

○ 국공립유치원 원아수 분담비율 22.2% → 30%이상으로 확충

【병설유치원 확대】
- 1~2학급 3,990개의 약 30%인 1,200개 → 2~3학급으로 증설 확대
-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신설 → 약 800개 학급 증설 확대
- 총 2,000개 학급 증가(학급당 원아수 평균 20명 기준), 원아수 40,000명 증원 예상, 병설유치원아수 분담비율 약 7% 이상 증가 예상
  ※ 병설유치원(4,374개원)의 91%가 1~2학급 규모(1학급: 3,007개원, 2학급: 983개원)

【단설유치원 설립】
- 매년 12개원씩 설립, 향후 5년간 60개원 추가 설립
- 총 60개원 증가(단설유치원 평균 원아수 150명 기준), 원아수 9,000명 증원 예상, 단설유치원아수 분담비율 약 1.5% 이상 증가 예상
  ※ 최근 단설유치원 매해 10여개원씩 증가하는 추세와 평균 원아수 감안

□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1~2 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2~3 학급 이상으로 확대함.

– 대도시 및 신규택지개발지역 등 유아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함.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함.

–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유아의 교육기회를 제공 및 확대함.

– 종일제운영을 위한 공립유치원의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 기회를 확대함.

□ 유치원 부족 지역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 우선 설립함.

– 공급률과 이용률의 불균형으로, 유치원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 중 저소득밀집지역이거나 택지개발지역에 설립함.

* 단, 지역내 사립유치원 및 타 육아지원기관의 설치 현황을 감안함.

- 적정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
-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2010년까지 100% 종일제 운영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등 지역내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함.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분담비율 11% → 30%이상으로 확충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114,657명을 약 312,000명으로 확대함.
- 증원 예상 아동 약 197,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평균 아동수 80명 기준) 약 2,400개소 증설 필요

□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확충

□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강화

-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30%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중앙정부가 직접 신축 조직 설치 및 비용 전액 부담 후, 지역에 무상 임대 및 위탁 운영을 의뢰함.

□ 신축비 지원 없이 건물 확보 및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확충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함.
-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우체국,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을 우선 활용함.

3)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선도적 기능 강화

□ 장애아 통합교육 서비스 우선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일반학급과의 연계 통합교육을 활성화함.

□ 포괄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서비스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교육·보육 격차 해소 및 출발점 평등 구현을 위한 포괄적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내 거점 센터로서 운영 모형 기능 수행

- 단설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내 소규모 기관이나 민간시설에 운영 모형을 제공하고,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함.
-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표준적인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지역내 육아지원센터로서 가정·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 영유아 육아지원 재정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재정 지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임.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공인, 그리고 공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제고될 수 있음.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질적 수준을 공인하고,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함.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적극 유도함.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투명한 행정·재정 운영을 위해 행정전산화를 확대·추진하고, 예·결산 회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함.

가. 배경

□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기관이 보다 적절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비율이 낮고, 사립 및 민간의 분담 비율이 70~80%로 높아 민간기관들에 대한 공적 지원과 이들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색되어 옴(민간 보육시설 89.1%, 사립 유치원 46.7%, 2005).

- 지금까지 민간기관의 육아지원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국공립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서는 민간 및 사립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민간 및 사립기관이 육아지원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음. 육아지원에 있어 선진 각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 및 사립 육아지원기관에 공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행·재정 관리감독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음.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은 국가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지원기관과 국가 재정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비 및 보육료를 수납하고 운영하는 미지원기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사립·민간 시설의 공공성 확보는 지원 시설의 경우에 더욱 해당되는 일이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한 해 지원이 주어질 수 있음.

□ 공공성 확보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은 육아지원기관들이 바람직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임. 현재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보육 서비스 수준과 행·재정관리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수준관리를 위해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국·공립 유치원은 연 1회의 담임장학을 포함하여 연간 3~5회의 장학지도를 받음. 사립 유치원은 연 1~2회 정도의 장학지도를 받음.

- 유치원의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은 연 1회의 감사를 받고 사립유치원 역시 연 1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지역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실제로는 2~3년에 1회 실시되고 있음.

- 보육시설 역시 행·재정 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우선 행·재정 관리로는 국·공립과 법인 시설의 경우 연간 1회 이상의 지도·감독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위생, 급식관리가 이루어져 연간 2~3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민간시설 역시 연간 1회 이상의 지도·감독과 위생, 급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지도·감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시설들의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지표개발(2003년), 시범운영 준비(2004년)를 거쳐 2005년도 시범운영이 실시되었으며 정부는 2008년도까지 1차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한 후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한 해 약 3조원에 이름.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기본보조금 제도가 채택된다면 앞으로 재정지원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공적 재정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의 제고는 국가 지원 정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임.

〈표 II-7-1〉 육아지원 재정의 변화

		2002	2003	2004	2005	2006
보육	중앙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102	3,120 (48.4)	4,050 (29.8)	6,001 (48.2)	7,844 (30.7)
	지방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253	3,431 (52.3)	4,702 (37.1)	7,354 (56.4)	12,519 (70.2)
	계	4,355	6,551 (50.4)	8,752 (33.6)	13,355 (52.6)	20,354 (52.4)
유아교육	중앙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09	257 (22.9)	345 (34.2)	871 (152.5)	1,997 (129.3)
	지방정부 (전년대비증가율)	3,349	3,823 (14.2)	4,397 (15.0)	5,512 (25.4)	6,863 (24.5)
	계	3,558	4,080 (14.7)	4,742 (16.2)	6,383 (34.6)	8,860 (38.8)

자료: 유희정 · 김은설 ·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가 재정 및 교육·보육과정 등을 지원하고 그 운영을 관리·지도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 육아지원기관이 가진 공공성이란,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해 적절한 공적 재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재정지원이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연결되는지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육아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수요자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아지원 현장을 적절하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유희정 외, 2006).
- 정부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육아지원기관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일정수준이 보장된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함.

나. 현황

1) 사립유치원

□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06년 현재 사립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 수의 46.2%이고 원아수 비율로는 78.8%를 차지함.

〈표 II-7-2〉 유치원 설치 현황(2006년)

단위: 개소, %,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	
	기관	원아	기관	원아	기관	원아
기관수	4,460	121,071	3,830	424,488	8,290	545,812
비율	53.8	22.2	46.2	78.8	100.0	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

□ 전체적으로 볼 때 예·결산을 수립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비율은 낮고, 24%의 유치원은 교육비 수입 관리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음.

※ 사립유치원 공공성 수행지표로는 교육비를 수령하는 방법, 예·결산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정도, 운영위원회 설치, 별도 회계담당자 유무 등이 있음.

- 200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의 75.8%가 은행지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교육비 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24.2%는 교사나 원장이 직접 수령하고 있음.
- 예·결산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1.6%로 나타남. 그러나 대다수가 형식적인 서류상의 예·결산에 불과하여 정확한 예·결산 수립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사립유치원의 54.2%가 예·결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9.3%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 과반수 이상(58.1%)의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원장이 직접 회계를 담당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별도로 경리직원을 둔 경우는 18.4%였음.

〈표 II-7-3〉 유치원 공공성 지표(2006년)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비율
교육비 수령 방법		
계	690	100.0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167	24.2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	166	24.0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	338	49.0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	19	2.8
예·결산 수립 방법		
계	448	100.0
금전출납부 이용	378	84.4
전문프로그램 이용	37	8.3
회계전문가 의뢰	26	5.8
예·결산 없음	7	1.6
예·결산 공개여부		
계	476	100.0
공개	218	45.8
비공개	258	54.2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계	467	100.0
설치	50	10.7
비설치	417	89.3
회계담당자 유형		
계	446	100.0
원장	259	58.1
원감/주임	80	17.9
담당교사	17	3.8
경리직원	82	18.4
기타 직원	8	1.8

자료: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국가차원의 관리제도로 사립유치원은 연1~2회 정도의 교육청 장학지도와 2~3년마다의 시설·설비에 관한 관리지도가 있음.

□ 현재 유치원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시범실시 중이며 내년이후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임. 앞으로 장학 및 시설·설비 관리지도와 평가제를 연

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2) 민간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이 우리나라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다수를 차지함.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민간개인, 가정 등)보육시설은 84.5%에 이름.

〈표 II-7-4〉 보육시설 설치 현황(2006년)

단위: 개소,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개인	법인외 단체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아동수	계
기관수	1,643	12,864	1,066	1,475	298	11,828	59	990,069	29,233
비율	5.6	44.0	3.6	5.0	1.0	40.5	0.2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 사립유치원의 경우와 동일한 공공성 수행 기준의 잣대로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수행정도는 낮은 편임(<표 Ⅱ-7-4> 참조).

- 민간보육시설의 32.2%가 보육료를 교사나 원장이 직접 수령 등 수입관리가 투명하지 않음.
- 예·결산을 수립하는 경우는 78.6%이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는 23.7%에 불과함.
-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비율은 31.3% 임.
- 보육시설 회계의 담당자는 시설장이 대부분(89.1%)를 차지하였고 별도의 경리직원을 둔 경우는 2.6%에 지나지 않았음.

□ 민간보육시설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연 1회 이상의 관리지도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 평가인증제가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 정부는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의 보육시설, 지자체, 여성가족부를 연결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을 구축하였음.

- 2007년 현재 전체 보육시설이 등록을 마친 상태임.
- 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원아·종사자·시설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였음.

〈표 II-7-5〉 보육시설 공공성 지표(2006년)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비율
교육비 수령 방법		
계	629	100.0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206	32.8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	78	12.4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	328	52.1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	17	2.7
예·결산 수립 방법		
계	420	100.0
금전출납부 이용	228	54.3
전문프로그램 이용	71	16.9
회계전문가 의뢰	31	7.4
예·결산 없음	90	21.4
예·결산 공개여부		
계	434	100.0
공개	103	23.7
비공개	331	76.3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계	403	100.0
설치	126	31.3
비설치	277	68.7
회계담당자 유형		
계	421	100.0
시설장	375	89.1
원감/주임	14	3.3
담당교사	9	2.1
경리직원	11	2.6
기타 직원	12	2.9

자료: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2.

3) 사립·민간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 평가와 지원의 연계, 운영위원회 설치,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 유도, 예·결산 공개 유도 등 공공성 제고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현장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에 대

해 68.0~85.7%가 가능하다는 응답을 함(유희정 외, 2006).

□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에서 우선성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보육행정전산화와 인가제도, 유치원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유치원 법인화 유도 등이 고려되었음(<표 Ⅱ-7-6> 참조).

〈표 II-7-6〉 공공성 제고 정책에서의 우선순위-공무원 의견

단위: %

구분	공공성 관련 정책		
우선순위1	보육시설 담당	보육 행정전산화	42.9
		보육시설의 인가제도	21.4
	유치원 담당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과의 연계	40.0
		독립된 학교체계로서의 유치원 법인화	28.0
우선순위2	보육시설 담당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연계	35.7
		보육 행정전산화	21.4
	유치원 담당	예·결산 공개	20.8
		독립된 학교체계로서의 유치원 법인화	16.7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16.7
우선순위3	보육시설 담당	보육시설의 인가제도	42.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 연계	21.4
	유치원 담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34.8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과의 연계	17.4
		예·결산 공개	17.4

자료: 유희정 · 김은설 ·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세부 과제

1) 지원과 평가 결과의 연계

□ 유치원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함.

- 유치원평가제도의 전면 도입시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 교사처우개선비, 종일제 지원비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결과와 재정 지원 연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통과 여부에 따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농어촌), 인건비(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 기본보조

금 지원 또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표 II-7-7〉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찬반여부 의견

단위: 개소(%)

	전체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계	839(100.0)	395(100.0)	444(100.0)
연계찬성	384(45.8)	151(38.2)	233(52.5)
연계반대	455(54.2)	244(61.8)	211(47.5)

자료: 유희정 · 김은설 ·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 법인 전환 유도

□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함.

- 현행 학교법인 조건을 완화한 법령과 제도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표 II-7-8〉 법인화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의견

단위: 명, %

구분	찬성	반대	계
의견수	248	171	419
비율	59.2	40.8	100.0

자료: 유희정 · 김은설 ·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육법인제도를 현실화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 법인 출연금 등에서 현행 사회복지 법인 요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법인전환을 유도함.

〈표 II-7-9〉 보육법인 활성화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장의 의견

단위: 명, %

	찬성	반대	계
의견수	226	103	331
비율	68.9	31.1	100.0

자료: 유희정 · 김은설 ·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3) 투명한 회계관리 추진

□ 사립유치원 운영의 재무 회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 차원의 행정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한 예·결산 공개 의무화를 추진함.

□ 투명한 행정·재정 운영을 위해 예·결산 회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개토록 함.

- 2007년 구축된 보육행정 전산화 체제의 효용성을 최대화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수시 점검함.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결산 공개를 유도함.

□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지원 민간보육시설은 여타의 정부미지원 자율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임.

4) (회계 이외) 기관운영의 공개 유도

□ 기관운영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를 얻고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서비스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 함.

- 보육·교육 내용의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개토록 함.
-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평가 또는 장학지도를 받은 유치원의 경우도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알려서 신뢰를 쌓도록 함.

□ 직원관련 사항을 공개토록 유도함.

- 원장 또는 시설장의 관련 자료를 공개함.
- 교사의 경력, 학력, 보수교육 내용 등 교사 관련자료를 필수적으로 공개함.

□ 시설 운영에 대한 공개를 실시함.

- 기관의 시설 설비 및 환경 구성에 대한 안내를 공개적으로 설명함.
-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를 필수화하도록 함.

4)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정부의 주요 관리·감독 기능이란 육아정책의 방향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에 전달한 후 기관들이 이에 준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후 다시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것임.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전달체계의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 16개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수 있음.

중앙정부	- 정부 지원과 관리·감독체계 연결 - 전국 단위의 관리·감독체계 구축 · 행전전산 시스템 구축 · 기관 평가체계 구축 - 16개 시·도 관리·감독 역할 지원
16개 시·도	-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운영지침 마련 - 16개 시·도별 관리·감독 실시방안 마련 -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시·군·구	-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장학 실시 :비용지원, 교육지원 등 - 정부의 평가제도 참여 지원 - 육아지원기관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지도

□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 육아지원기관에 관한 전국단위의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함.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육아행정 전산화, 담당 공무원의 확보,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등이 있음.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리·감독시스템을 반드시 조건으로 연계하여야 할 것임.

□ 16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 기관지원을 위해 시·도가 준비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설치 및 인가 관련 사항으로 육아지원기관 설치인가 기준의 준수, 육아지원 재정 및 보육료/원비 관련 사항으로 시·도의 보육료/원비 단가표, 기관운영비 내역, 정부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운영비 보조금, 교직원 보수표, 기관 운영비 기준이 있음. 육아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련법, 육아지원기관 운영 점검내용(항목), 구비문서 내용, 직원근무계약(근로기준법), 비상재해관리 지침, 질병관리 지침, 사고발생 처리 지침 등임.

- 또한 16개 시·도의 주요 관리·감독 업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16개 시·도별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지한 후 이에 따라 감사 실시의 주체가 되는 것임. 기본적으로는 우선 예·결산 감사와 기관운영의 기본적인 인가사항 준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 그 다음으로는 기관의 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감사의 기능이 시·도로 넘어갈 경우 시·도에서 감사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음.

  대안1) 감사내용을 행·재정 감사와 서비스 수준 평가로 분류하여 시·도는 행·재정 감사만을 담당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는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함. 행·재정 감사역시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최대로 이용한다면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대안2) 우리나라는 소규모 시설이 많으므로 권역을 나누어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들, 혹은 유형별로 기관들을 그룹화 하여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때 그룹에 속한 기관들은 무작위로 선택되어 실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감사결과는 거점기관이 책임을 지게 됨.

  대안3) 시·도의 여력에 따라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격년으로, 이후 점차 년 1회로 점검회수를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임.

- 예·결산 감사와 행정감사는 16개 시·도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유로는 육아지원기관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감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다만 16개 시·도가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시·군·구가 동행하여 감사준비 및 사후관

리를 지원할 수 있음. 현재는 시・군・구가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감사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음.

구 분	장부, 명부 등
기관 관리 자료	- 정관, 인허가증, 운영 규칙 - 교직원 취업규칙(시간외 근무, 급여규정, 여비규정, 경조 규정, 경리규정), 고용보험 등 각종보험 - 사업계획, 사업보고서철, 업무일지
영유아 관련 서류	- 영유아 기본서류: 영유아 명부, 기관 입소관련서류 - 아동건강진단기록부 - 보호자 연락문서철 - 교육・보육일지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보육계획: 연간 및 월간(주간)지도계획, 하루일과 운영 - 급·간식 운영
교직원관계	- 직원 채용, 퇴직에 관한 서류 - 업무분담표 - 직원명부: 이력서, 자격증 - 직원출근부 - 직원건강진단기록부: 채용시의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계 서류 - 소득세, 주민세 관계서류 - 직원회의기록부, 직원연수기록부
재무회계 규칙	- 대차대조표 - 재산목록: 부동산대장, 고정자산물건대장 - 비품대장 - 총계정원장(계산표) - 급여대장 - 보조금청구서 - 예산서(당초, 수정예산서, 집행계획) - 결산보고서 - 증빙서류철
비상재해 관리 지침	- 안전관리서류(긴급연락체계 포함) - 소방계획 및 소방용설비 등 점검결과보고서 - 안전교육 결과

- 현재 민간보육시설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업무 역시 16개 시・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정부에서 전체 36천여 개의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며, 중앙정부에서 기본 틀을 조정하고 실무는 16개 시・도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현재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시스템으로의 운영이 바람직함. 평가업무 역시 현장과 밀접한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음.

- 2005년도부터 사립/민간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지원대상의 조건도 동일하게 하여 기본보조금 제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군·구 단위의 관리·감독 기능

- 시·군·구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에 중점을 둠. 특히 시·도의 감사 및 평가(인증)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인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함. 특히 예·결산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함. 인가사항 준수에서는 정원초과를 점검하는 일 역시 중요함.
- 예·결산 수행을 하지 않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해 재무회계규칙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여야 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유치원 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요구되는 조력을 제공함. 이는 육아지원기관과 가장 인접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임.
- 행정전산화에 대한 동의는 높게 나타났으며(유치원 74.6%, 보육시설 79.6%),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 정부는 2005년,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과 동시에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두기로 하고, 민간시설 이용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중산층 이상 부모의 욕구충족 및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가 기대됨.

○ 소득계층별 격차를 심회시키고 특별활동의 확대로 부모 부담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은 시기적으로 가격규제 예외 육아시설의 견제 기능을 하는 공공보육시설이 일정 부분 확충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은 적용 시설 수를 조정하고 비용 담합을 경계하며, 특별활동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모 부담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가격규제 예외시설도 가격 이외에는 제 기준을 준수시켜, 보편적 교육과 보육과정을 영유아들이 경험하게 함.

가. 배경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 도입이 논의된 배경은 이들 기관의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과 공적재정 투입의 불공평성에 있음.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정부 재정투입의 차이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 이용 아동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기초함.

□ 2006년부터 기존 영아보육지원을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하고,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더불어 가격규제 예외시설 도입을 검토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국가 재정배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계층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시각에서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두자는 것임.

-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비는 1985년에 이미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교육비 자율화가 완전히 적용된 것은 아님. 따라서 유치원의 자율적 선택으로 가격규제와 기본보조금 수용이 가능함.

나. 현황

□ 정부는 2006년부터 기존 영아보육지원을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은 대전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전남 해남군의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영아 기본보조금은 대상 시설 중 약 85%의 시설에 지원되고 있으며, 기본보조금 액수는 0세아 292,000원, 만1세아 134,000원, 만2세아 86,000원임. 이로 인하여 부모 부담 비용의 국공립과 민간시설별 차이 문제는 해소됨.
- 유아 기본보조금은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은 42,000원임.

□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더불어 논의된 정책이 가격규제 예외 시설인데,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시설장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도시에서는 30% 수준으로 높고, 읍·면에서는 8% 수준으로 낮게 조사되었음.

〈표 II-8-1〉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시설장의 보육료 운영 방향

단위: %(개소)

구분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기본보조금 + 상한선	보육료 자율화	상한선 이하	잘 모름	계(수)	기본보조금 + 상한선	보육료 자율화	상한선 이하	잘 모름	계(수)
대전 서구	66.7	26.5	2.0	4.9	100.0(102)	59.3	31.4	2.3	7.0	100.0(172)
경기도 평택시	53.6	35.2	4.0	7.2	100.0(124)	68.1	19.1	6.4	6.4	100.0(45)
전남 해남군	83.3	8.3	-	8.3	100.0(12)	66.7	-	16.7	16.7	100.0(6)

자료: 서문희·김은영·최혜선(2007).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육아정책개발센터.

- 그러나 부모들은 자율화된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6.4% 수준임.

〈표 II-8-2〉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지역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자율화 시설 이용 계획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기본보조금 + 상한선	보육료 자율화	상한선 이하	잘 모름	계(수)
전체	83.1	6.4	3.8	6.7	100.0(451)
국공립	85.7	9.5	-	4.8	100.0(21)
법인	90.0	-	5.0	5.0	100.0(20)
법인외	60.0	-	-	40.0	100.0(5)
기본보조금 지원 민간개인	89.7	5.6	2.8	1.9	100.0(107)
기본보조금 미지원 민간개인	86.3	2.3	4.6	6.9	100.0(131)
기본보조금 지원 가정	76.4	10.9	3.6	9.1	100.0(55)
기본보조금 미지원 가정	78.1	8.6	4.8	8.6	100.0(105)
직장	42.9	42.9	-	14.3	100.0(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 김은영 · 최혜선(2007).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육아정책개발센터.

□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은 2008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더불어 도입하고자 하였던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8년도에 농산어촌 평가인증 통과 보육 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함.

다. 쟁점

□ 보육료 자율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찬성 입장

- 보육료가 자율화된 서비스로 고가의 질 높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산층 이상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킴.
- 보육사업으로 이익이 창출되게 함으로서 대규모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여 전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함.
- 고소득계층 자녀에게 정부가 보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없앰.

○ 반대 입장

-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부모와 자녀가 좌절 느끼지 않는 여건과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견제할 기본 공공 인프라를 확보한 후에 민간시설에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담합 등에 의한 보육료·교육비만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제한된 보육료 이외에 추가비용 증가로 정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은 증가하고 정부 지원의 체감도는 낮을 것을 우려함.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이 지역에서 일정부분을 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실제로 제한이 가능한 지가 문제임.

라. 세부 과제

1) 개념 및 적용 방법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시설에 차등보육료 이외에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설임.

- 가격규제 예외는 영아와 유아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아닌 시설 단위로 실시함. 이 경우 가격규제 예외 보육시설은 영아보육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

□ 가격규제 예외 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민간보육시설이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분리됨.

2) 실시 시기

□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30%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시·군·구 신고제로 가격 상한선을 적용 받지 않는 보육시설을 허용함.

- 기본 공공 인프라 확립 없이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임.

– 가격규제 예외 시설에 대한 독점적 제어 수단으로 작동함.

□ 민간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함.

육아비용 : 지원 체계의 합리화

현행 소득별 차등 교육비·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공립시설과 저소득층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육아지원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함.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육아지원 재정을 투입하고, 부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육아시설 이용 비용을 차등 지원하였음.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는 기본보조금지원제도가 도입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지원되고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는 시범사업 중임.

-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부분 실시 중임.

○ 증가하는 육아지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적 지원체계의 모색이 필요함.

- 현 차등 교육비·보육료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정부의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하여 소득계층간에 보다 형평성 있고 정교한 차등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함.
-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 부모와 아동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방식을 투명화해서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증진시킴.
-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로 시설별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취약보육 등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육아지원 재원 확보 방안으로 한시적 목적세 도입을 적극 검토함.

가. 배경

□ 최근에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이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그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부모 부담 비용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였으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의 상당부분은 주로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사립·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전반적으로 낮은 육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립·민간 육아시

설에 기본보조금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음.

- 우리나라 육아시설은 사립·민간시설이 다수이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함. 특히 민간개인보육시설은 시설 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준설비 면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많고 민간시설 교사의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 영유아를 둔 보호자의 22%는 아이를 보낼만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함. 전체 국민들이 서비스 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보육시설 17.8%, 유치원 20.3%에 불과함.
- 민간 시설 서비스 수준이 낮은 데는 어려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불공정한 재정 지원에 있음.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확보되는 교육·보육 비용, 부모부담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민간 육아지원기관의 낮은 서비스 수준의 원인이 됨.
  - 전체 보육아동 중 31.3%를 차지하는 정부지원시설에 보육예산의 71.3%가 집중되었음.
-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용 기관 유형별 차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61.6%가 현 보육료도 부담스럽다고 응답해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모부담 보육비를 상승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

□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육아시설 이용 비용의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지원책은 계속 확대 추진하고 시설별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이 없는 지원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나. 현황

□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별 지원과 이용비용 아동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시설별 지원

□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됨.

□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함.

-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시설규모별로는 정원 20명 이상인 경우 원장 인건비가 지원됨.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은 프로그램별로 인건비를 지원함. 휴일보육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에 한정하고 있음.

2) 육아기관 이용료 아동별 지원

□ 육아 비용 지원은 만5세아 무상, 차등보육료·교육비,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구분됨.

□ 만5세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아동은 2006년 기준으로 무상교육은 145,809명으로 아동의 50% 수준이고, 보육은 141,600명으로 보육아동의 88% 수준임.

□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아동은 72만명에 달함.

- 3~4세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차등교육비 지원 아동은 2006년도에 만3·4세아 162,000명으로 아동 비율로는 65%임.
- 2006년 12월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은 55만 6,64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62%임.

〈표 II-9-1〉 보육료 지원 아동수(2006년)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총계
전체	223,700 (63.9)	442,943 (64.2)	666,643 (64.1)
차등지원	186,655 (53.3)	277,212 (56.4)	463,867 (44.6)
두자녀	37,045 (10.6)	26,700 (3.9)	63,745 (6.1)
만5세아	- -	139,031 (70.0)	139,031 (13.4)

주: 만5세아의 비율은 만5세아 대비 비율임.

〈표 II-9-2〉 유아교육비 지원 아동수(2006년)

단위: 명, %

구분	아동수	해당 원아 대비 비율
전체	317,000	58.7
차등지원	162,000	65.2
두자녀	10,000	1.8
만5세아	145,809	50.2

〈표 II-9-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비율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	-	-	-	-	-	30	30

□ 차등교육비·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와 교육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130%까지 지원할 예정임.

□ 기본보조금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연령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준 보육비용이나 교육비용 적용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 수준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비용·교육비용과 부모 부담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임.

– 영아는 그동안 지원하던 영아지원을 기본보조금으로 개념화하고 금액도 확대하여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유아는 시범사업 중임.

〈표 II-9-4〉 유아 민간개인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2007. 9)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시설수	유아수	시설수	유아수	시설수	유아수
대전 서구						
대상 시설	369	8,347	109	4,705	260	3,642
지원 시설	121	2,963	75	2,684	46	279
경기도 평택시						
대상 시설	161	4,975	132	4,563	29	412
지원 시설	29	1,623	28	1,613	1	10
전남 해남군						
대상 시설	19	569	12	536	7	33
지원 시설	9	452	9	452	0	0

자료: 서문희 · 김은영 · 최혜선(2007).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육시설은 총 150개 시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유치원은 6개 유치원이 참여하였고 최근에 평택시에서 30개 유치원이 추가하기로 참여하였음.

–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부모 부담도 미지원시설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2007년에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 모두 월 32,000원의 보육료 감소 효과가 있음.

– 기본보조금은 부모 부담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육아지원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님. 특히 보육 질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표 II-9-5〉 평택시 보육료 상한액: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전후(2006, 2007년)

단위: 원

구 분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기본보조금 미지원시설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2006				
기존수납상한액(A)	210,000	241,000	210,000	241,000
변경수납상한액(B)	180,000	205,000	210,000	241,000
차이(B-A)	▽30,000	▽36,000	0	0
2007				
기존수납상한액(A)	230,000	256,000	230,000	256,000
변경수납상한액(B)	198,000	224,000	230,000	256,000
차이(B-A)	▽32,000	▽32,000	0	0

자료: 서문희 · 김은영 · 최혜선(2007).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육아정책개발센터.

3) 예산

□ 중앙과 지방의 유아교육과 보육 총 예산은 2007년 약 3조원 규모로 추정됨.

- 보육 국고 지원예산이 약 1조원이고, 유아교육예산은 국고지원 사업만 2,100억원임.

□ 보육 예산은 차등보육료 예산이 가장 많고 다음이 종사자 인건비 지원임. 기본보조금 지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각각 1,300여억원임.

□ 유아교육 예산은 만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이 전체 국고 지원 예산의 50%를 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만3, 4세 교육비 지원임.

□ 예산은 일반회계로 충당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은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재정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60 : 40, 50 : 50, 40 : 60로 세분화 됨. 그 전까지는 서울은 20 : 80, 그 이외는 50 : 50이었음.

〈표 II-9-6〉 2007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지원사업 세부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총계	7,913	10,434
• 종사자 인건비	2,030	2,472
•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149	138
• 기본보조금 지원	942	1,355
• 저소득층차등보육료	2,733	4,090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284	1,303
• 장애아 무상보육료	277	324
• 두자녀이상 보육료	91	219
• 보육시설 확충 등	224	332
• 보육시설환경개선	119	85
• 보육시설평가인증	16	74
•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등 기타사업	38	41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10	2

〈표 II-9-7〉 2007년도 교육인적지원부 유아교육지원 세부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총계	1,996	2,138
• 만5세아 무상교육비	1,168	1,282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775	751
• 두자녀이상 교육비	28	45
•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	33
• 유치원평가	-	2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20	20
• 학급자원봉사훈련	3	3
• 유아교육자료개발	1	1
• 유아교육홍보강화	1	1

주: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 예산은 제외되었음.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비와 시설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 월 11만원의 담임수당 등임.

다. 쟁점

□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시설별 지원은 시설의 주로 인건비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용자의 수가 감소되어도 재정에 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낮추고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공공 육아지원기관에는 어느 정도 시설별 지원으로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인정됨.

– 공공시설은 대부분 시설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많음.

○ 아동별 지원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 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정보의 대칭성과 선택의 대상이 다양성을 전제로 함.

– 주로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채택됨.

□ 부모의 보육 비용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차등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보편적 지원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까지 지원하므로 예산이 낭비요인이 있고, 소득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보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편적 지원은 불가피함.

○ 차등적 지원은 소득계층별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복지적 접근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고,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제고시킴.

라. 세부 과제

1)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체계 보완

□ 현행 차등 교육비·보육료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보다, 정부의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하여 소득계층간에 보다 형평성 있고 정교한 차등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함.

2) 보편적 지원의 발전 확대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 부모와 아동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육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증진시킴.

3)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체계 유지

□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로 시설별 지원 수준을 유지함.

□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취약보육 등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4) 재원 확보

□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로 스웨덴은 25년간 보육세를 거두었음.

□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분담률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감안, 차등화 함.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육아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포함한 보조인력 등, 전일제 또는 시간제 지원인력의 수급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함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 유치원평가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수요자들에게 희망하는 기관 선택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들에게는 스스로 교육·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유치원평가는 2007년도 시범평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됨. 유치원평가는 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하여 유치원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도 시범 적용을 거친 후 2006년도부터 전면 도입되었으며, 시행 3년째를 맞아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정착되고 그 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에 있음.

○ 유치원평가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처음 도입하는 평가(인증)제도로 현장의 이해와 참여 독려가 정책성공의 중요 요소임.

- 기존의 장학/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과 증진
- 정부의 예산지원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관들의 참여 격려
- 유치원평가/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육아지원 서비스의 수준 제고

가. 배경

1) 유치원평가제도

□ 정부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이 학교로서 책무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유치원평가제도를 도입함.

- 나아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유아교육진흥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학부모들에게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기관 선택을 지원함.

□ 유치원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유치원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정부는 유치원 현장 실태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임.
-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학지도와 함께 기관 운영 평가를 통해 기관의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임.
- 학부모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특성이 반영된 평가 정보 제공을 통하여 기관 선택권을 보장받게 될 것임.
- 유아는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적자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임.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음.

※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현장을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개별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전제로, 자체점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게 됨. 또한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 수준을 평가하게 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됨.
-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함.

□ 사립유치원 중 유치원평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유치원은 57.0%, 민간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설은 56.4%로 나타남.

- 부모들 역시 유치원, 보육시설 선택 시 환경구성, 교육·보육 프로그램, 원장/시설장과 교사의 전문성 등을 중요 선택요인으로 보고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고 도출 대책이 필요함.

나. 현황

1) 유치원평가제도

□ 2007년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임. 시범운영에서는 전국의 유치원 8,290개원 중 100개원이 참여하고 있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각각 50개원 총 100개원임.

〈표 II-10-1〉 시범평가 참여 유치원 현황

단위: 개원

시·도 지역	공립	사립	계
서울, 경기	10	10	2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9	39	78
제주도	1	1	2
총계	50	50	100

□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 기본정책 수립, 국가 공통지표 개발, 평가위원 연수 등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함.
- 평가방법 : 유아교육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유치원의 자체평가, 평가위원들의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종합하여, 심의평가함. 서면평가는 유치원 교육계획서,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를 활용함.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평가지표 : 4개 영역 15개 지표 29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평가하게 됨.
  · 4개 영역은 교육과정, 교육환경, 유아의 건강·안전, 운영관리 임.
- 평가주기 : 3년으로 평가 1주기는 2007년도 시범사업 이후 2008년도부터 2010년임. 1주기에는 사립유치원의 80%가 평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치원평가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모든 유치원은 3년 주기로 1회 평가에 참여하게 될 것임.

〈표 II-10-2〉 유치원평가 대상기관 수(2008~2010년)

단위: 개원

구 분	전체	2007(시범)	2008	2009	2010
계	8,290	100	2,470	2,470	2,470
국공립	4,460	50	1,470	1,470	1,470
사 립	3,830	50	1,000	1,000	1,000

주: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연도별 평가 참여 유치원 수는 변동 가능.

- 평가결과 활용
  · 유치원평가결과를 부모에게 정보 제공
  ·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경영 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유치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도 처음 시범운영이 실시된 이후 제도가 도입되었음. 2007년 10월 말 현재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11,709개소로 총 보육시설 29,233개소의 40.6%임.

- 참여신청 시설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91.1%, 법인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121.8%[1], 민간개인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32.2%, 가

1) 현재 종교법인시설은 통계상으로는 민간개인보육시설로 집계되고 있으나 본 평가인증 신청에서는 본인들이 법인보육시설로 표기하여 통계상의 법인과 평가인증 신청서

정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33.2%로 민간개인보육시설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10-3〉 평가인증 참여신청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7년)

지역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신청소계
참여시설수	1,496	1,796	143	3,924	29	4,480	11,868
신청비율	12.6	15.1	1.2	33.1	0.2	37.7	100.0

〈표 II-10-4〉 전체시설 대비 평가인증 참여시설 현황(2005~2007년)

지역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시설수
전체시설수(A)	1,643	1,475	298	11,828	59	13,930	29,233
참여시설수(B)	1,496	1,796	143	3,924	29	4,480	11,868
비율(B/A×100)	91.1	121.8	48.0	33.2	49.2	32.2	40.6

□ 평가인증의 실시는 중앙정부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함.

- 인증방법 :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참여신청 이후 자체점검, 현장관찰 단계를 거쳐 심의위원들이 인증을 심의하고 결정함.
- 인증지표 : 21인 이상 보육시설 대상(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대상(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 전담시설 대상(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분됨.
  - 7개영역 80항목이 기본형이며, ① 보육환경 ② 운영관리 ③ 보육과정 ④ 상호작용 ⑤ 건강과 영양 ⑥ 안전 ⑦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표 중에서 ①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준수 ② 재정관리의 투명한 운영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등은 필수항목이며, 필수항목 위반 시에는 인증을 통과할 수 없음.
  - 기본형인 21인 이상 보육시설 대상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각 지표의 평가는 3단계 기술평정척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3점(우수한 수준), 2점(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점(부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됨.

상 법인의 기준이 다른 데 기인함.

〈표 II-10-5〉 21인 이상 평가인증 지표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0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 나. 보육인력 (6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8항목)
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3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 (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 인증 주기 : 3년
- 인증결과 활용 : 2010년도부터 정부의 기본보조금 지원과 연계함.

□ 다만 현재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관들은 평가/평가인증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사립/민간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평가/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보충하는데 드는 비용, 준비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을 문제로 제기함.

다. 세부 과제

1) 유치원평가제도의 도입과 정착

가) 유치원평가제도 도입

□ 유치원평가제도는 2007년 시범운영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평가제도가 유아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제 1차 시행에서는 전국의 국공립, 사립유치원들의 참여와 현장의 제도 수용이 중요함. 따라서 유치원들이 평가의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지표는 유치원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관련 전문가, 유치원 현장 종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평가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로 평가참여를 장려하고 평가시스템의 효용을 제고시켜야 함.

나) 유치원평가제도와 장학시스템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 유치원평가제도와 장학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치원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효율화 함.

- 유치원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전반적인 수준은 물론 영역별 수준을 분석하여 장학시스템과 연계함.
- 특히 개개 유치원들에서 평가점수가 낮았던 영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장학을 실시함.

다) 중앙정부 및 지역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 유치원평가는 현재 지역별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초기 평가제도 개발 과정에서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개발됨. 즉, 평가제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간 원활한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음.

- 중앙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활용을 대비하여 점검하여야 함.
-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시범운영이 끝나고 2008년도부터 지역교육청별로 유치원 평가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이 일반지표 및 지역별 지표의 개발, 효율적 운영체계 모색 등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 제1차 시행시기(2006~2009)를 마무리 하고 제2차 시행시기(2010~2013)의 원활한 운영을 준비함.

- 제1차 시행시기의 운영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성과가 나타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평가한 후 제2차 시행시기를 준비,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제1차 시행시기(2006~2009)에서는 현재 40.6%로 나타난 보육시설들의 참여율을 80% 수준까지 높이도록 함.
  - 이를 위해 보육시설종사자들로 하여금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의 다양한 조력, 평가인증 참여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인증결과의 적극적인 홍보, 정부 예산지원과 인증결과의 연계 등을 활용함.
- 제1차 시행시기에 활용된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후 제2차 시행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를 준비함. 특히 평가인증지표 개선을 통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나)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후관리체계 구축

□ 매년 상시 8,000~10,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상시 20,000~22,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실시되어야 함.

- 사후관리는 대상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 시설관리로서 인증시설, 유보시설, 불인증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인증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이들이 인증시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

- 상근·비상근 현장관찰자, 인증심의위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특히, 현장관찰자의 경우 참여 보육시설로부터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환류하도록 함.

다) 지역사회 보육인프라와의 협력체계 강화

□ 평가인증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역내의 보육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력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지역사회 성공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함.

-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은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 참여과정 등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증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증통과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혹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라) 보육시설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함. 우선 2010년부터 기본보조금과 평가인증을 연계함. 이로써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함.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는 곧 교육·보육의 질과 연결이 됨. 따라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제 근로 여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반드시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함.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과중은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저해가 되고 있음. 특히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운영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고, 보육시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의 종일반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등 교사지원체계를 수립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기본임금은 노동 강도와 시간 및 교사의 전문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임금 현실화가 최대 과제임.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기본임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경우는 극히 일부임.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초과근무시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사는 근무 중 휴게시간을 갖기가 어렵고, 유치원 교사는 출산휴가 사용이 어려우며 보육교사는 연중 휴가 사용이 어려우므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과 연중 유급휴가 및 출산휴가 사용의 정상화가 필요함.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채용 시 임금에 대한 구두계약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교사의 권리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채용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가. 배경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 50조[2]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

2) 제50조 (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일일 8시간, 제 51조[3]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합의에 의한 최대 52시간을 연중 내내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음. 특히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8시간 이상,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교사의 추가 배치는 곧바로 인건비로 인한 교육비와 보육료 상승과 연계되므로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하여야 하는가가 관건임.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 교사의 사기와 이직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과 보육의 질과 직결됨.

-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은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육교사도 이와 비슷한 실정임.

□ 근로기준법 제54조[4]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실제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움.

---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는 점심시간도 영유아들의 식사지도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 60조[5]에 의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 중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제 73조[6]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특히 보육시설 교사는 1년에 여름 겨울 각각 2~5일 정도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실정임.

□ 근로기준법 제 73조[7]에 의거, 임산부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유치원교사는 출산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가 많음.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채용 시 근로기준법 제 17조[8]에 의거하여 근로계

---

5)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7)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 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한 달에 얼마 주겠다는 임금에 대한 구두 계약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정해진 호봉과 수당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임금에 대해서 기관장과 구두 계약만 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음.

나. 현황

1)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로 현황

가) 업무시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일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33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을 2시간 30분 정도 초과함.

- 2005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일일 평균 업무시간은 8시간 35분이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10시간 33분으로 사립유치원 교사가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2시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1〉 유치원 교사 일일 평균 업무 시간(2005년)

구분	국공립	사립	계
근무시간	8시간 35분	10시간 33분	9시간 24분

자료: 여성가족부(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

□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8)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공립유치원의 경우 122개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반 운영 학급수는 141개 학급임.
- 사립유치원의 경우 589개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반 운영 학급수는 2,432개 학급임.
- 2006년 현재 유치원 종일반 이용 영유아는 총 60,040명임.
- 따라서 유치원 종일반에 종일반 교사가 배치될 경우 총 2,573개 학급에 배치되어야 할 것임.

〈표 II-11-2〉 유치원 종일제 운영 현황(2006년)

단위 : 개원,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
기관수	122	589	711
학급수	141	2,432	2,573
원아수	2,820	57,220	60,0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유치원통계.

다) 교사 급여

□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봉은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의 50% 정도 수준임.

- 2005년 기준 5년 이하 경력 교사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2,372만원이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1,214만원으로 국공립유치원 대비 사립 유치원 교사 연봉의 비율은 51.2%임. 교사경력이 5년 이하일 때 연봉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봉차이는 경력 6~10년차에서 가장 적으며,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2,756만원이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1,553만원으로 국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의 비율은 56.3%임.

〈표 II-11-3〉 경력과 시설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연봉(2005년)

단위: 만원, %

경력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	국공립 대비 비율
5년 이하	2,372	1,214	51.2
6~10년차	2,756	1,553	56.3
11~15년차	3,090	1,608	52.0

자료: 여성가족부(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 사립유치원 교사는 매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라) 휴가

□ 사립유치원 교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휴가를 하고 있으나, 학기 중에는 휴가를 내기 어려움.

- 초등학교에 준하여 실시하였던 사립유치원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의 방학 기간 중의 휴가도 짧아지고 있음.
- 사립유치원 교사는 대부분 혼자 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로 학기 중에는 거의 휴가를 낼 수 없음.

□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대처방법은 유치원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본인 사퇴가 많음.

-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85.2%인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청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유치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4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가 23.2%이며, 유치원과 교사 본인이 분담하는 경우나 본인이 대체교사 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도 각각 13.8%, 9.4%나 됨.

〈표 II-11-4〉 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대처방법(2005년)

단위: 개원(%)

구분	교육청 지원	유치원 지원	본인 투입	유치원과 본인 공동	본인 사퇴	기타	전체
공립	380(85.2)	37(8.3)	8(1.8)	19(4.3)	0(0)	2(0.4)	446(100)
사립	2(0.8)	109(42.9)	24(9.4)	35(13.8)	59(23.2)	25(9.8)	254(100)
전체	382(54.6)	146(20.9)	32(4.6)	54(7.7)	59(8.4)	27(3.9)	700(100)

자료: 여성가족부(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2)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 현황

가) 업무시간

□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업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많이 초과하고 있음.

-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근무시간은 10.1시간이며, 법인 보육시설이 10.3시간으로 가장 많고, 가정보육시설이 9.5시간으로 가장 적음.
- 보육교사는 토요일과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평균 5.6시간, 휴일 근무시간은 평균 4.9시간임.
- 토요일 근무시간은 시설의 유형에 상관없이 유사하나 휴일 근무시간의 경우는 시설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큼. 휴일근무시간은 가정 보육시설이 11.0시간으로 가장 길고 민간개인보육시설이 평균 3.6시간으로 가장 짧음.

〈표 II-11-5〉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근무시간(1일 기준)(2007년)

단위: 시간

구분	평균근무시간	토요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전체	10.1	5.6	4.9
국공립	10.1	5.7	4.6
법인	10.3	5.6	5.4
민간개인	10.2	5.5	3.6
가정	9.5	5.6	11.0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나) 보육시설 운영시간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8~10시간미만이 3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8시간미만 30.2%, 10~12시간미만 20.3%, 5시간미만 8.8%, 12시간이상 3.8%로 나타남.
- 10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24.1%임.

〈표 II-11-6〉 보육시설 운영시간(2005년)

단위: 비율(명)

구분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
전체	8.8	30.2	36.8	20.3	3.8	100.0(632,859)
국·공립	1.4	28.1	45.9	22.5	2.1	100.0(89,825)
사회복지법인	3.2	31.6	42.0	20.2	2.9	100.0(98,082)
기타법인	4.9	30.1	41.2	20.7	3.1	100.0(39,760)
단체	7.6	32.6	39.1	16.2	4.5	100.0(10,004)
민간개인	12.6	32.9	32.8	17.9	3.9	100.0(319,825)
직장	3.0	13.6	38.6	41.0	3.9	100.0(7,769)
가정(놀이방)	12.4	20.2	33.3	26.7	7.5	100.0(66,850)
공동육아	1.2	9.7	53.2	30.5	5.4	100.0(744)

주: 복수응답임.

자료 : 여성가족부(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다) 교사 급여

□ 보육시설 교사의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육교사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1,365천원이며, 국공립·법인보육시설과 민간개인·가정보육시설 간의 급여 차이가 큼.
-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월 급여 총액이 1,525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법인 보육시설 1,460천원, 민간개인 보육시설 1,199천원임.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은 월 급여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가정 보육시설은 월 급여 총액이 979천원으로 100만원 미만임.

〈표 II-11-7〉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급여액(2007년)

단위: 천원

구분	기본급	월 급여총액	희망 월급액	급여인상분
전체	1,284.4	1,365.3	1,778.8	50.4
국공립	1,448.5	1,524.9	1,993.1	-
법인	1,417.4	1,459.9	1,891.9	20.5
민간개인	1,077.1	1,198.6	1,483.7	52.5
가정	867.9	979.4	1,298.5	49.3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보육실태분석(2004)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가 112만 6천원이며,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2005) 자료에 따르면 79만원 이하를 받는 보육교사도 25.7%나 있었음.

□ 보육시설 교사는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보육시설 인건비 지급 규정에 실제 시간 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정액 4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책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당은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매우 작은 금액임.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 방안 연구(2007) 자료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32.1%에 불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67.9%로 높게 나타남.

〈표 II-11-8〉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단위: %(명)

구분	지급함	지급하지 않음	계	X^2(df)
시설유형				
전체	32.1	67.9	100.0(1,015)	
국공립	43.3	56.7	100.0(402)	
법인	24.6	75.4	100.0(272)	38.07(3)***
민간개인	25.1	74.9	100.0(172)	
가정	24.7	75.3	100.0(162)	

주: ** $p < .01$, *** $p < .001$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2005)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비율은 14.7%이며, 국공립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20%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다) 휴가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2007)에 의하면 보육시설 교사의 실제 휴가 일수는 10일 이하가 가장 많음.

- 보육교사의 실제 휴가일수는 10일 이하가 5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1일~15일이 24.2%임.
- 시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10일 이하가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민간개인보육시설이 62.8%임.

〈표 II-11-9〉 보육교사의 실제 휴가일수(2007년)

단위: %(명)

구분	10일 이하	11~15일	16~20일	21일 이상	계
전체	56.3	24.2	9.2	10.3	100.0(574)
국공립	47.5	29.8	11.0	11.8	100.0(255)
법인	56.1	22.3	12.1	9.6	100.0(157)
민간개인	62.9	20.6	6.2	10.3	100.0(97)
가정	81.5	12.3	0.0	6.2	100.0(65)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준수하는 경우는 높게 나타남.

-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준수하는 경우는 48.7%이고, 지키지 않는 경우는 4.0%로 대부분이 출산휴가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10〉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준수 여부(2007년)

단위: %(명)

구분	지킴	규정은 있으나 지키지 않음	관련 규정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전체	48.7	4.0	2.1	45.2	100.0(902)
국공립	62.5	3.1	0.3	34.2	100.0(357)
법인	48.5	6.2	1.2	44.0	100.0(241)
민간개인	38.9	3.7	4.9	52.5	100.0(162)
가정	25.4	2.8	4.9	66.9	100.0(142)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다. 세부 과제

1) 교사 근무시간의 정상화

□ 기관의 상황에 따라 8시간 근무시간제 도입

- 오전 7시에 출근하는 교사는 오후 3시 퇴근, 정오에 출근하는 교사는 오후 8시에 퇴근하는 체제 마련.

□ 8시간 근무시간제 도입을 위한 교사 인력 배치 지원

- 유치원의 경우 711개원 2,573개 학급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급당 종일반 교사 1인 즉, 2,573명의 종일반 지원 교사가 추가 배치되어야 함.
- 보육시설은 10시간 이상 운영 시설이 24.1%로 29,233개소 대비 7,045개소임. 1개 시설에 1인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7,045명의 지원교사가 요구됨. 그러나 보육시설 1, 2, 3급 교사수는 104,320명으로 1개 시설당 보육교사가 3.6명(3.6학급)임을 감안하여 7,045개소가 모두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요구되는 종일반 지원 교사수는 25,362명임.

  ※ 종일반 교사 지원인력은 시간제 근무인력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교사 지원인력 수급 제도 마련

□ 대체교사 제도 확립

- 교사의 휴가나 연수 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대체교사 지원을 제도화하여 교사들이 필요할 때 연수를 받고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함.
- 교사 1인당 휴가일수를 감안하여 최소한 교사 10명당 1명의 대체교사 확보.

□ 지원인력 제도 확립

-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부, 영유아의 급·간식을 담당하는 취사부를 지원을 제도화해야 함.

3) 교사 임금의 현실화

□ 기본적인 교사임금의 현실화

- 사립유치원 교사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8시간 기준 일일 27,840원, 월 환산 727,320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들이 하는 일의 강도와 근로시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입금을 현실화해야 함.
- 향후 5년 간 국공립 교사 임금의 8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높은 이직률을 야기함.

□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시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교사 지원책을 마련하되, 당장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함.

4) 교사 휴가 사용의 제도화

□ 교사가 출산휴가 및 연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분위기 마련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해야 함.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연중 법정 휴가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분위기 개선.
-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책 마련.

5) 교사 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채용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사로 하여금 필요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교사 채용 시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필요하면 교사에게 교부하여 필요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임.

○ 교사의 특성 중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의 학력과 경력, 자격 종류, 나이, 결혼 유무, 건강상태와 같은 교사의 일반적 배경, 급여, 후생복리, 근무시간 등과 같은 근무조건, 교사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교사의 심리적 특성, 교사 신념, 전문성과 같은 교육관,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태도 등 다양함.

○ 보육시설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24.1% 수준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인력 지원이 요구됨.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 보육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할 인력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가. 배경

□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교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여야 함. 그러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실제로 교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추가 인력의 배치는 곧바로 인건비로 인한 교육, 보육 비용 상승과 연계되므로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하여야 하는가가 관건임.

□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서비스 제공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에서는 추가 인력없이 유치원교사, 보육교사가 기관의 청소, 영유아들의 배식준비 및 뒤처리, 여러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함.

– 이 경우 교사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질 높은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소, 영유아들의 배식준비 및 뒤처리, 여러 행정사무 등도 약식으로 수행될 여지가 있어 문제임.

나. 현황

1) 유치원교사 근무실태

□ 유치원교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 반 정도임.

- 유아 직접교육 시간이 약 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준비와 문서나 기타 잡무에 매일 약 1시간, 등하원 지도나 청소 등에 약 4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

□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설립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공립 교사들은 하루에 평균 8시간 반 정도를 근무하고, 사립 교사들은 10시간 반을 근무하고 있음.

- 유아 직접 교육시간과 기타 잡무시간은 공사립 교사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활동 준비시간을 비롯한 제반 다른 활동시간은 사립 교사들이 공립 교사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표 II-12-1〉 유치원 교사의 업무 시간 평균(2005년)

단위: 시간

구분	총근무 시간	유아직접 교육	교육활동 준비	부모 상담	등하원 지도	청소	문서	기타 잡무
평균시간	9:24	5:19	1:00	0:32	0:47	0:46	0:56	0:55
공립	8:35	5:18	1:41	0:28	0:31	0:42	1:02	0:54
사립	10:33	5:22	2:27	0:36	1:06	0:52	0:43	0:56

2) 보육교사 근무실태

□ 보육교사의 업무

- 보육교사의 85.2%가 영유아보육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나 청소(5.6%), 행정업무(5.3%), 시설운영(1.4%), 급·간식(1.2%) 등의 업무도 맡고 있음.

〈표 II-12-2〉 보육교사 담당 주업무(2007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행정업무	시설운영	급·간식	청소	3가지 이상 중복 응답	계
전체	85.2	5.3	1.4	1.2	5.6	1.3	100.0(1,150)
국공립	83.7	6.7	0.4	0.7	6.7	1.7	100.0(461)
법인	84.0	7.1	3.8	0.3	3.5	1.3	100.0(312)
민간개인	88.3	3.0	0.5	1.0	6.1	1.0	100.0(197)
가정	87.8	1.1	0.6	4.4	5.6	0.6	100.0(180)

– 보육교사들의 업무량과 관련 보육교사의 43.6%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인식함.

〈표 II-12-3〉 보육교사 업무량 인식(2007년)

단위: %(명)

구분	매우 적절	적절	과중	매우 과중	전체	X^2(df)
전체	4.7	51.6	38.3	5.3	100.0(955)	
시설유형						
국공립	2.9	46.8	44.4	5.9	100.0(376)	
법인	5.0	45.9	42.5	6.6	100.0(259)	53.59(9)***
민간개인	1.2	63.9	31.3	3.6	100.0(166)	
가정	12.3	59.7	24.0	3.9	100.0(154)	
시설규모						
20명 이하	10.5	60.2	25.1	4.1	100.0(171)	
21~39명	6.8	53.0	36.4	3.8	100.0(132)	39.71(9)***
40~79명	3.4	49.2	40.2	7.2	100.0(321)	
80명 이상	2.2	46.2	47.3	4.3	100.0(279)	

주: *** $p < .001$

□ 대체교사 운영 실태

– 2007년 조사에서 시설의 61.3%가 대체교사를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4년도 대체교사 활용률 25%에 비하여 활용이 증가함.

※ 대체교사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 근무 시 투입된 보육교사를 의미함.

– 시설유형별 대체교사 활용 정도는 국공립보육시설이 73.2%로 가장 많았고, 법

인보육시설 52.3%, 민간개인보육시설 55.1%, 가정보육시설 54.5%임.

· 대체교사 이용시 문제점은 교사 수급 부족임. 특히 대체 보육교사들은 월 단위 근무에는 부응하면서도 2~3일, 혹은 3~4일 근무하는 대체교사는 기피함.

〈표 II-12-4〉 대체교사 활용현황(전국, 2007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X^2(df)
전체	61.3	38.7	100.0(657)	
국공립	73.2	26.5	100.0(257)	
법인	52.3	47.7	100.0(172)	34.17***
민간개인	55.1	44.9	100.0(118)	
가정	54.5	45.5	100.0(110)	

– 대체교사들은 보육시설에서 주로 보육교사를 임시로 대체하는 보육업무(51.8%), 청소(22.5%), 행정업무(19.1%) 등을 수행함.

· 대체교사들이 보육경험이 없거나 혹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14.3%), 비용의 부담(13.8%) 등이 문제로 지적됨.

다. 세부 과제

1) 교사 지원인력의 배치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로는 교재교구 제작 등 교육활동 준비, 부모상담, 차량 탑승 등 등하원 지도, 시설 및 교실 청소, 급·간식 준비 및 뒤처리,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평가(인증) 준비 등 기타 업무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대상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함.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인력의 유형으로는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부 및 취사부 지원 등임.

〈표 II-12-5〉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개요

	유치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대체교사	· 8,290개원의 이용률 50% 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실태의 1/2를 적용하여 1개 원당 연인원 50명 적용	· 전 시설의 이용률 73.2% 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실태의 1/2를 적용하여 1개 시설당 연인원 50명 적용
청소부(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취사부(1인) (종일반 운영 기관에 지원)	· 국공립유치원: 122개원 · 사립유치원: 589개원	· 민간개인보육시설 14,287개소주)

주: 가정보육시설은 청소부와 취사부가 겸직임.

가) 보조교사 배치 지원[9)]

□ 교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고 있음. 상시 추가 근무시간 8시간 준수를 위해 정규직 보조교사가 지원되어야 함. 영유아 교육·보육이란 영유아들을 그날그날 돌보아야 하고, 만약 교사들이 아프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미루어 업무를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므로 상시 보조인력이 필요함.

- 보조교사는 종일반 교실 담임교사들의 추가근무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담임교사가 반을 비우게 되는 경우 반을 담당할 수도 있음. 즉, 변동근무제 시 반 운영 담당, 기관의 행·재정 업무 담당, 평가(인증) 준비 담당, 원장·시설장 업무지원, 종일반 지원, 영아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전체 기관에 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함.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농어촌 소재 기관 등으로 함.

9) 일본의 경우 보육사 운영은 기준보육사, 예비보육사, 가산보육사로 운영되고 있음. 기준보육사란 일반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사로 보육사대 영유아 비율은 0세아 1:3, 1~2세아 1:6, 3세아 1:20, 4~5세아 1:30임. 동시에 모든 시설에 시설 구분없이 예비보육사 1인을 지원하여 비담임 교사로 활용하고 있음. 가산보육사는 장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산휴지원, 간호보육 등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임.

1) 업무

– 보조교사는 기관에서 담임교사들이 8시간 근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나아가 교육·보육이외의 기관 운영 시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즉, 변동근무제 시 반 운영 담당, 기관의 재무·행정 담당, 평가(인증) 준비 담당, 시설장 업무지원, 영아반 추가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보조교사는 정규인력으로 운영하며, 경력인정 및 호봉승급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운영함.
  · 초기에는 우선순위를 두어 기관당 1인을 지원함.

2) 운영

– 보조교사 지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을 지원하도록 함. 유치원 8,290개원, 보육시설 29,233개소에 보조교사 1인을 지원함.
  · 동시에 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음.
  · 우선순위로는 평가(인증) 통과 기관, 취약영유아 교육·보육기관, 농어촌 소재 기관등을 들 수 있음. 취약 교육·보육의 예로는 야간 교육·보육, 장애아 통합교육·보육, 휴일교육·보육 등을 들 수 있음.

나) 대체교사 배치 지원

□ 대체교사 지원은 현행 보육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준에 기초하여 1일 6시간, 일주일에 30시간 근무 시 하루 35,000원, 월 800,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동일시설의 초임 인건비를 지급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 유치원 대체교사 추계
  · 유치원의 대체교사 활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략 50% 수준으로 대체교사 배치를 계획하면, 8,290개원에 연인원 145,075명이 배치되어야 함.

– 보육시설 대체교사 추계
  · 보육시설의 경우 대체교사 활용률 73.2%를 고려하면, 연인원 386,290명의 대체교사 지원이 요구됨.

다) 청소부와 취사부 배치

□ 모든 육아시설에 상시인력으로 청소부와 취사부를 지원함. 다만 현재 취사부가 지원되고 있는 국공립기관은 제외함. 소규모 시설에서는 청소부와 취사부를 겸직하도록 함.

- 유치원의 경우
  - 모든 유치원에 청소부 1인을 배치함.
  - 종일반을 운영하는 122개 국공립유치원과 589개 사립유치원 즉, 총 711개 유치원에 취사부 1인을 배치함.
- 보육시설의 경우
  - 전체 보육시설에 청소부 1인을 배치함.
  - 가정보육시설 11,828개소에서는 청소부와 취사부가 겸직하도록 함.
  - 취사부가 배치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1,643개소)·법인보육시설(1,475개소), 그리고 가정보육시설(11,828개소)을 제외한 민간개인보육시설 14,287개소에 취사부 배치가 요구됨.

2) 교사 수급관리체계 구축

□ 교사 지원인력의 원활한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보육정보센터의 교사 수급 기능을 지원인력 수급관리 기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지역사회내 현재 인력 수급관리를 하고 있는 기구를 통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지원인력 수급관리 기능을 맡게 할 수 있음.(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활용)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지원인력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가 질적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게 됨.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인력의 활용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임.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새로마지플랜 2006- 2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2006). 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

교육인적자원부(2006). 유치원통계.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근로기준법(법률 제8561호 일부개정 2007. 07. 27.)

김경희·박분희·양미경(2000).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연구. 농림부.

김순림(2006).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지원정책. 노동부.

김영옥·최숙희·전기택·이선행(2007).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설, 이정원, 지성애, 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김혜원·옥우석·정미애(2007). 제 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한국노동연구원.

나정 외(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노동부(2005). 일하는 영아 업마의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2007).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7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7). 2006년도 사업보고서.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7). 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여성가족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7). 2007년도 참여현황(내부자료).

서문희 외(2004). 농어촌 보육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육사회연구원.

서문희, 이미화, 김은설, 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이상현·임유경(2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여성가족부(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07). 보육관련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2007년도).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2007). 보육지원팀 e-통계 자료(2007년 4월 기준).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2007년 6월 기준).

유희정(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결과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포럼. 가을호. 6-19.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2.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은수미(2007). 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이은해, 유희정, 김온기(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8.

지성애 외(2003). 농어촌 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이규용·남재량·박혁·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홍승아·장혜경(2006). 한국의 부모휴가 정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Crew, B. J.(2005). *Rural Child Care needs.* a paper on the web of the Ontario Federation of Agriculture (http://www.ofa.on.ca/cutting/hl1_03.jpg).

http://www.naeyc.org 참조

부 록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

1. 부모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3. 설문지

1. 부모

가. 조사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100명: 유치원 이용 부모 50명, 보육시설 이용 부모 50명

〈부표 1-1〉 시설유형 및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시설유형		
공립유치원	25	25.0
사립유치원	25	25.0
국공립보육시설	5	5.0
법인보육시설	2	2.0
직장보육시설	2	2.0
민간개인보육시설	24	24.0
가정보육시설	5	5.0
미상(보육시설)	12	12.0
지역		
서울	28	28.0
부산	4	4.0
대전	2	2.0
대구	6	6.0
광주	2	2.0
인천	2	2.0
울산	4	4.0
경기	11	11.0
충북	2	2.0
충남	11	11.0
경북	2	2.0
경남	4	4.0
전남	4	4.0
제주	2	2.0
미상	16	16.0

나. 조사 내용 및 과정

1) 조사 내용

□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함.

-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사항
-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이유
-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과 그 이유
-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정책과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
- 자녀 출산·양육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 향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2) 조사 절차

□ 전국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지역 및 기관 유형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할 당하여 유치원 25개원, 보육시설 25개소 선정하고 50개 시설에 두 명씩의 부모 조사를 의뢰함.

□ 부모 조사는 전화로 각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의뢰하여 질문지를 우편, e-mail, FAX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배송하고 회신 받도록 함.

다. 조사 결과

1)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 부모들은 현재 자녀를 보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

려한 사항에 대해 <부표 1-2>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그중 중요하게 고려한 순서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함.

□ 부모들은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선택시, 집과의 거리, 교육·보육 프로그램, 실내외 환경, 종사자 요인 등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음.

〈부표 1-2〉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28(28.0)	8(8.0)
차량운행	1(1.0)	1(1.0)
운영시간	1(1.0)	1(1.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4(4.0)	5(5.0)
안전관리	4(4.0)	4(4.0)
위생관리	3(3.0)	3(3.0)
실내·외 환경	15(15.0)	13(13.0)
주변환경	1(1.0)	3(3.0)
교재·교구	2(2.0)	1(1.0)
급·간식	4(4.0)	5(5.0)
교육·보육 프로그램	23(23)	25(25.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13(13.0)	28(28.0)
기타	0(0.0)	2(2.0)
합계	99	99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자 간에 기관 유형별로도 이용 기관 선택시 고려사항에는 별 차이가 없음. 다만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원장 및 교사의 전문성이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1-3〉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15(30.0)**	4(8.0)	**13(26.5)**	4(8.0)
차량운행	0(0.0)	1(2..0)	1(2.0)	0(0.0)
운영시간	0(0.0)	0(0.0)	1(2.0)	1(2.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3(6.0)	3(6.0)	1(2.0)	2(4.0)
안전관리	0(0.0)	2(4.0)	4(8.2)	2(4.0)
위생관리	0(0.0)	0(0.0)	3(6.1)	3(6.0)
실내・외 환경	**7(14.0)**	**9(18.0)**	**8(16.3)**	4(8.0)
주변환경	0(0.0)	0(0.0)	1(2.0)	3(6.0)
교재・교구	1(2.0)	1(2.0)	1(2.0)	0(0.0)
급・간식	2(4.0)	2(4.0)	2(4.1)	3(6.0)
교육・보육 프로그램	**13(26.0)**	**13(26.0)**	**10(20.4)**	**12(24.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9(18.0)**	**14(28.0)**	4(8.2)	**14(28.0)**
기타	0(0.0)	1(2.0)	0(0.0)	1(2.0)
합계	50	50	49	49

2) 이용하는 유치원・보육시설의 만족사항

□ 부모들이 현재 자녀를 보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부표 1-4>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그중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순서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사항은 교육・보육 프로그램, 원장 및 교사 요인, 실내외 환경・집과의 거리 요인 등임.

– 만족사항은 대체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한 사항과 관련이 있음.

〈부표 1-4〉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12(12.0)	4(4.0)
차량운행	2(2.0)	1(1.0)
운영시간	2(2.0)	4(4.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5(5.0)	4(4.0)
안전관리	2(2.0)	6(6.0)
위생관리	3(3.0)	4(4.0)
실내・외 환경	12(12.0)	11(11.0)
주변환경	0(0.0)	3(3.0)
교재・교구	2(2.0)	3(3.0)
급・간식	9(9.0)	8(8.0)
교육・보육 프로그램	30(30.0)	22(22.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21(21.0)	30(30.0)
계	100	99

□ 유치원 이용 부모가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원장 및 교사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보육시설 이용 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부표 1-5〉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5(10.0)	1(2.0)	7(14.0)	3(6.0)
차량운행	0(0.0)	0(0.0)	2(4.0)	1(2.0)
운영시간	2(4.0)	0(0.0)	0(0.0)	4(8.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5(10.0)	4(8.0)	0(0.0)	0(0.0)
안전관리	0(0.0)	3(6.0)	2(4.0)	3(6.0)
위생관리	0(0.0)	1(2.0)	3(6.0)	3(6.0)
실내・외 환경	2(4.0)	7(14.0)	10(20.0)	4(8.0)
주변환경	0(0.0)	1(2.0)	0(0.0)	2(4.0)
교재・교구	0(0.0)	2(4.0)	2(4.0)	1(2.0)
급・간식	3(6.0)	3(6.0)	6(12.0)	5(10.0)
교육・보육프로그램	19(38.0)	10(20.0)	11(22.0)	12(24.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14(28.0)	18(36.0)	7(14.0)	12(24.0)
계	50	50	50	50

□ 부모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의 응답은 <부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음.

- 현장학습, 영어・미술・수영 등 특기수업과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음.
-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좋거나(아이가 적응을 잘하고 선생님과 관계 좋음) 교사의 전문성이 높다고 느낄 때, 급・간식 내용이 좋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부모들은 자녀들이 먹거리 등 기본적인 환경이 양호한 상태에서 기관에 무리 없이 적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대체로 그 기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특히 원장·시설장 및 교사에게는 주로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에 기대를 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용 기관 유형별로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으나,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는 특히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남.

〈부표 1-6〉 육아시설이용 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관유형별		계(비율)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아이들이 적응 잘함, 선생님과의 관계 원만	9(23.0)	6(16.2)	15(20.0)
인성교육이 잘됨	2(5.1)	4(10.8)	6(8.0)
교사의 전문성이 높음	11(28.2)	3(8.1)	14(18.0)
시설이 좋음(깨끗함,밝음)	0(0.0)	3(8.1)	3(4.0)
프로그램 구성이 좋음(현장학습, 영어·미술 등 특기수업이 좋음)	9(23.0))	7(18.9)	16(21.0)
급·간식이 좋음(좋은 재료 이용, 유기농 식단 등)	3(7.7)	6(16.2)	9(12.0)
안전한 환경	1(2.6)	2(5.4)	3(4.0)
운영시간이 좋음(종일반 운영, 연장 보육 등)	0(0.0)	1(2.7)	1(1.0)
집과 거리가 가까움	3(7.7)	5(13.5)	8(11.0)
주변환경 쾌적	1(2.6)	0(0.0)	1(1.0)
계	39	37	76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에 대해 <부표 1-7>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

한 부분은 차량운행,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실내·외 환경, 보육·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답하였으며, 실내·외 환경,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급·간식 등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 또한, 실내·외 환경은 부모들이 기관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항과도 중복되고 있음.

□ 부모들은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부표 1-7〉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5(5.0)	3(4.0)
차량운행	**19(20.0)**	4(5.0)
운영시간	9(10.0)	8(10.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11(12.0)**	**11(13.0)**
안전관리	6(6.0)	8(10.0)
위생관리	5((5.0)	4(5.0)
실내·외 환경	**10(11.0)**	**13(15.0)**
주변환경	8(9.0)	6(7.0)
교재·교구	7(7.0)	6(7.0)
급·간식	4(4.0)	**10(12.0)**
교육·보육 프로그램	9(10.0)	7(8.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1((1.0)	3(4.0)
계	94	84

〈부표 1-8〉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관 유형별		빈도(비율)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시설미비, 시설이 오래되어 낙후됨	**5(13.2)**	2(5.4)	7(9.0)
현장학습 등 미비	2(5.3)	**6(16.2)**	8(11.0)
안전시설 미비	4(10.5)	1(2.7)	5(7.0)
차량 운행이 불편함(운행코스 및 시간 조정 요망)	3(7.9)	**7(18.9)**	**10(13.0)**
운영시간이 불편함(종일반, 반일반, 토요일 운영 등 운영시간 조정 필요)	**6(15.8)**	4(10.8)	**10(13.0)**
정부의 교육비·보육료 지원 필요(무상교육, 보육료 감면)	4(10.4)	**6(16.2)**	**10(13.0)**
주변환경이 좋지 않음(유흥업소 밀집, 공자장·도로변 위치 등)	**7(18.4)**	4(10.8)	**11(15.0)**
학부모의 참여와 교류 미비(프로그램 선정 등 참여 요망)	0(0.0)	1(2.7)	1(1.0)
위생관리 미흡	3(7.9)	2(5.4)	5(7.0)
급·간식 관리 미흡	2(5.3)	1(2.7)	3(4.0)
집과의 거리가 멈	2(5.3)	3(8.1)	5(7.0)
합계	38	37	75

□ 이용기관 유형별 개선을 요하는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운영시간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요구와 안전시설 미비, 좋지 않은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남,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유치원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차량운행의 불편함과 현장학습 등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보완,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부표 1-9〉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2(4.3)	0(0.0)	3(6.4)	3(7.1)
차량운행	**13(27.7)**	1(2.4)	**6(12.8)**	3(7.1)
운영시간	3(6.4)	4(9.5)	**6(12.8)**	**4(9.5)**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6(12.8)**	3(7.1)	510.6)	**8(19.0)**
안전관리	3(6.4)	**5(11.9)**	3(6.4)	3(7.1)
위생관리	3(6.4)	4(9.5)	2(4.3)	0(0.0)
실내・외 환경	**7(14.9)**	**8(19.0)**	3(6.4)	**5(11.9)**
주변환경	4(8.5)	3(7.1)	4(8.5)	3(7.1)
교재・교구	5(10.6)	3(7.1)	2(4.3)	3(7.1)
급・간식	1(2.1)	**6(14.3)**	396.4)	**4(9.5)**
교육・보육 프로그램	0(0.0)	4(9.5)	**9(19.1)**	3(7.1)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0(0.0)	1(2.4)	1(2.1)	2(4.8)
기타	0(0.0)	0(0.0)	0(0.0)	1(2.4)
합계	47	42	47	42

4)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 부모들에게 <부표 1-10>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의 순이었음. 그 외에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유치원 종일제 확대 등도 긍정적으로 인식함.

– 부모들은 대체로 비용 지원의 혜택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외 정부 정책을 통해 질 높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평가함.

〈부표 1-10〉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54(55.0)	11(12.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3(13.0)	9(9.0)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6(6.0)	28(29.0)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4(4.0)	6((6.0)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 ・관리	0(0.0)	5(5.0)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10(10.0)	14(15.0)
유치원 종일제 확대	8(8.0)	15(16.0)
보육시설의 야간,24시간 보육 등 확대	3(3.0)	7(7.0)
계	98	95

〈부표 1-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26(52.0)	6(12.5)	28(58.3)	5(10.6)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0(20.0)	8(16.7)	3(6.3)	1(2.1)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5(10.0)	13(27.1)	1(2.1)	15(31.9)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2(4.0)	2(4.2)	2(4.2)	4(8.5)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 ・관리	0(0.0)	4(8.3)	0(0.0)	1(2.1)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2(2.0)	2(4.2)	8(16.7)	12(25.5)
유치원 종일제 확대	5(10.0)	12(25.0)	3(6.3)	3(6.4)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0(0.0)	1(2.1)	3(6.3)	6(12.8)
계	50	48	48	47

5)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

□ 부모들에게 <부표 1-12>의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강화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함.

□ 부모들은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들었음.

〈부표 1-12〉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46(46.0)	8(8.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24(24.0)	21(21.0)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9(9.0)	26(27.0)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9(9.0)	13(13.0)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 ·관리	1(1.0)	6(6.0)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2(2.0)	7(7.0)
유치원 종일제 확대	5(5.0)	9(9.0)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3(3.0)	6(6.0)
기타	1(1.0)	2(2.0)
계	100	98

□ 이용 기관 별 큰 차이는 없으나,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비용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게 나타나며, 보육시설 이용 부모는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

〈부표 1-13〉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26(52.0)	2(4.0)	20(40.0)	6(12.5)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5(30.0)	8(16.0)	9(18.0)	13(27.1)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4(8.0)	17(34.0)	5(10.0)	9(18.8)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2(4.0)	9(18.0)	7(14.0)	4(8.3)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 ·관리	0(0.0)	3(6.0)	1(2.0)	3(6.3)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0(0.0)	3(6.0)	2(4.0)	4(8.3)
유치원 종일제 확대	2(4.0)	5(10.0)	3(6.0)	4(8.3)
보육시설의 야간,24시간 보육 등 확대	1(2.0)	1(2.0)	2(4.0)	5(10.4)
기타	0(0.0)	2(4.0)	1(2.0)	0(0.0)
계	50	50	50	48

6) 자녀 출산·양육시 애로사항

□ 부모들에게 <부표 1-14>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답하도록 하였음.

□ 부모들은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양육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음, 비용 부담, 주변에 자녀를 맡길 기관 부족 등으로 응답함.

□ 유치원 이용 부모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 부모가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

〈부표 1-14〉 자녀 출산·양육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관 유형별		빈도(비율)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음	21(42.0)	18(36.7)	39(39.0)
주변에 자녀를 맡길 믿을만한 기관이 없어 힘들었음	9(18.0)	8(16.3)	17(17.0)
자녀 출산·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웠음	8(16.0)	14(28.6)	23(23.0)
직장에서 야근 등 초과근무가 잦아 힘들었음	4(8.0)	5(10.2)	9(9.0)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어려워 힘들었음	2(4.0)	3(6.1)	5(5.0)
육아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힘들었음	4(8.0)	1(2.0)	5(5.0)
기타	1(2.0)	0(0.0)	1(1.0)
계	50	49	99

7) 자녀 양육지원 관련 필요 정책

□ 부모들에게 <부표 1-15>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답하도록 함.

□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부모들은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응답함. 그 밖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부표 1-15〉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40(40.0)**	**15(15.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3(13.0)**	**15(15.0)**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8(8.0)	4(4.0)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14(14.0)**	14(14.0)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0(0.0)	3(3.0)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휴직수당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11(11.0)	**17(17.0)**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10(10.0)	**16(16.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3(3.0)	13(13.0)
기타	1(1.0)	1(1.0)
계	100	98

□ 부모들은 양육 지원 정책 요구사항 중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부표 1-16〉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20(40.0)**	**7(14.3)**	**20(40.0)**	**8(16.3)**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7(14.0)**	**9(18.4)**	**6(12.0)**	6(12.2)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3(6.0)	4(8.2)	5(10.0)	0(0.0)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7(14.0)**	6(12.2)	**7(14.0)**	**8(16.3)**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0(0.0)	0(0.0)	0(0.0)	3(6.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휴직수당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5(10.0)	**10(20.4)**	**6(12.0)**	**7(14.3)**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5(10.0)	6(12.2)	5(10.0)	**10(2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2(4.0)	**7(14.3)**	1(2.0)	6(12.2)
기타	1(2.0)	0(0.0)	0(0.0)	1(2.0)
계	50	49	50	49

라. 요약

□ 부모들은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선택 시, 집과의 거리가 가까운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실내외 환경도 중시하여 고려함.

□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 부모들은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원장 및 교사, 실내외 환경, 집과의 거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운영시간, 차량운행 방식이나 실내·외 환경, 비용 등을 지적하는 부모가 많았음. 차량운행의 불편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영유아의 교육·보육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 개선의 요구가 높음.

  – 기관 유형별로 유치원은 운영시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보육시설의 경우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차량운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은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라고 응답함.

  – 부모들은 대체로 비용지원의 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정부 정책이 질 높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함.

□ 다수의 부모들은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서,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을 들었음.

□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주변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인력이나 기관의 부족과 비용 부담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정책으로 육아시설 이용 비용 지원과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등 비용 지원 정책과 육아시설 확충 정책을 들었음.

□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관심을 크게 나타냄.

□ 부모들이 자녀가 이용할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과 만족사항, 개선요구 사항, 향후 필요로 하는 정책 등 부모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들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

- 부모들은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보호, 교육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 개선의 요구도 높음.
- 향후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등 질 높은 기관이 확충되고 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함.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가. 조사 대상

1) 조사 대상자 규모 및 선정과정

□ 조사 대상자는 전문가 51명, 공무원 62명, 유치원 원장·보육시설장 93명, 교사 113명으로 총 319명임.

〈부표 2-1〉 의견조사 대상자

단위: 명

구분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유아교육	28	27	49	63	167
보육	23	35	44	50	152
계	51	62	93	113	319

가) 전문가

□ 15개 관련 학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아 총 100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했고 이 중 51명의 응답지를 회수함.

〈부표 2-2〉 설문에 참여한 학회 회원

단위: 명

학 회 명		응답자 수
유아교육 관련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	2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4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5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5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3
	한국유아교육학회	5
	한국육아지원학회	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0
	계	28
보육 관련학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3
	한국보육정책학회	1
	한국보육지원학회	5
	한국보육학회	2
	한국아동권리학회	3
	한국아동학회	7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
	계	23
전체		51

나) 공무원

□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의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자 각각 1명씩을 지역규모나 지역안배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임의표집함.

- 유아교육이나 보육 담당부서가 독립적으로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 현재 담당부서가 유아교육이나 보육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해서 육아정책을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표시) 추가

□ 총 163명(유 81, 보 82)에게 설문지를 송부, 68명(유 27, 보 35 기타 6)이 회신함.

: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설문조사지 기타 6명은 제외하고, 총 62명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2-3〉 지역별 응답자 수

단위: 명

지역	유아교육		보육		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서울	1	7	1	7	16
부산	1	5	1	5	12
대구	1	3	1	3	8
인천	1	5	2	5	13
광주	1	2	1	2	6
대전	1	2	1	2	6
울산	1	2	1	2	6
경기	1	6	1	6	14
강원	1	6	1	6	14
충북	1	5	1	5	12
충남	1	4	1	4	10
전북	1	4	1	4	10
전남	1	4	1	4	10
경북	1	4	1	4	10
경남	1	4	1	4	10
제주	1	2	1	2	6
계					163

다) 유치원 원장·보육시설장

(1) 유치원 원장

□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 연합회에 의뢰

□ 사립유치원 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의뢰하고, 기타 임의표집으로 49명을 조사함.

⑵ 보육시설 시설장

- 국공립보육시설은 한국보육시설총연합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분과에 의뢰함.
- 법인,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은 한국보육시설총연합회에 의뢰하고 기타 임의 표집을 통해서 전체 44명의 의견을 조사함.

〈부표 2-4〉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기관유형	설립유형	응답자 수	계
유치원	국공립	31	49
	사립	16	
	미상	2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25	44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16	
	미상	3	
계			93

라) 교사

⑴ 유치원 교사

-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표집을 의뢰, 사립유치원 교사는 개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의뢰하여 총 62명의 교사 의견을 조사함.

⑵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노동조합에 표집을 의뢰
- 부족분은 시·도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시설 명단을 활용하여 표집, 총 50명의 교사 의견을 조사함.

〈부표 2-5〉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기관유형	설립유형	응답자 수	계
유치원	국공립	33	62
	사립	29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25	50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25	
계			112

나. 조사 내용

현재 시행중인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정책, 시행중인 정책 가운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이유, 개선이 필요한 정책, 그리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다. 조사 결과

1) 계속 추진되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현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중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부표 2-6>과 같이 요약됨.

〈부표 2-6〉 계속 추진이 필요한 현행 육아지원정책

단위: %

정책 내용	유아교육(n=167)	보육(n=152)
	계속 추진필요	계속 추진필요
유치원 · 보육시설 운영지원정책		
•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71.3**	11.2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국공립 · 법인 및 영아 · 장애 시설)	22.2	**59.2**
•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	**55.7**	15.1
• 사립유치원 · 민간시설 교재 · 교구비지원	28.7	26.3
• 농어촌 공립유치원차량지원/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46.7**	23.7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10.2	**43.4**
•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지원	26.3	9.2
• 기타 보육(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11.4	**34.9**
교육비 · 보육료 지원정책		
• 영아 기본보조금	14.4	**33.6**
• 차등교육비 · 보육료 지원	17.4	**31.6**
• 만5세아 무상 교육 · 보육 지원	**51.5**	**41.4**
• 장애아 무상 교육 · 보육 지원	26.3	**40.1**
• 두 자녀 이상 교육비 · 보육료 지원	28.1	**32.9**
•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8	27.0
유아교육 · 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		
•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16.8	**31.6**
• 국공립유치원 · 보육시설 확충	28.1	23.7
유치원 · 보육시설 질 제고 정책		
• 기관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등)	**36.5**	**40.1**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40.1**	**36.8**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7.8	7.2
•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6.6	6.6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정책>

가)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응답수가 많은 경우 별로 5개만 제시함)

- 맞벌이 부부의 안정된 직장생활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
- 유치원의 에듀케어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함.
- 유아교육기관의 효율적 활용
- 방과 후 사교육비 절감
- 취원율 제고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야간, 휴일, 방학 중 근무하는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사에게 특별 수당 지급
- 종일제 교사 지원 확대
-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운영 경비 지원(실질적 운영비 지원)
- 공립유치원종일제 교사를 유아교육전공자로 전담인력 배치
- 실질적인 저소득층 원아 지원

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사의 질 확보와 양질의 보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을 줄일 수 있어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여 할 수 있음.
- 교사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
-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에서 효과
- 윤택한 교육적 환경 제공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인건비 상향조정 필요.
- 지급방식의 투명성 제고.
-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의 상향조정, 초등학교 교사대비 조정필요 애로
-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수당 필요
- 직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으로 확대

다)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 교사의 책무성 제고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이로 인한 교직에 대한 안정감 부여
- 유치원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 공립유치원 교사와의 격차 해소
- 철저한 담임 학급에 대한 책임감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교통비, 급식비 등의 제수당 확대
- 지원 금액 규모면에서 확대 필요
- 대도시까지 확대 시행 필요. 교수학습개발비도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원되도록 함.
- 법인체만 지원하는 것이 좋음.
- 지속적인 지원 보장

라) 사립유치원・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종류와 수의 확보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짐.
-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운영에 큰 도움이 됨.
- 학부모의 만족
- 교재・교구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계기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교재교구비 또한 인건비 확충을 우선적으로 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지원했을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함.
- 조달품만 구입하도록 유통체계 단일화
- 교재교구 구입 및 사용내역의 합리적 방법 모색 - 관리, 감독 필요
-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 강화 선행
- 비용이 아닌 교재교구를 직접 지원

마) 차량운영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인구 희소지역의 영유아 및 가정에 좋은 기회가 됨.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벽지의 경우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기 어려움.
- 취원율의 확대로 이어져 공교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음
- 차량지원으로 집에서 방치되는 원아가 줄어듦.
-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고 유아교육기회 확대, 현장학습의 활성화

- 등원 및 귀가 안전확보로 학부모의 안심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유치원 종일제 유아를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필요
-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차량지원확대
-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여야 함
- 유가(油價)를 고려한 지원

바)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기관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구축 가능
- 행정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운영 측면에서 보육현장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정확한 시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서류 직접제출 건수가 줄고, 행정비용 감소
- 보육업무 담당자와 보육시설 간의 업무체계 간소화를 통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소, 보조금 신청, 보육교사, 아동현황 등 파악용이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보육행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즉 유아교육의 모든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일괄 행정으로 처리했으면 함.

사)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보조교사대신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 유아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 도모 및 유아개별화 교육지원

- 정교사가 온 종일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반드시 필요함.
- 체계적인 훈련이 따른다면 인적 자원의 활용도 높일 수 있음
- 위생적인 환경 유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학급보조자원봉사자에게 봉사비 지급(중고령 여성 자원 봉사자 활용 참고)
-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임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선정에 애로가 있음.
- 보육시설에도 학급보조 자원봉사자가 필요함.
-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아) 기타 보육(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사립기관의 경우, 운영을 시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필요, 특히 저소득층 자녀, 특정 지역 유아 보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실제의 운영지침과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유아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지원 효과
-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에 도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하여 아동당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수요와 공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일반보육보다 더 철저한 허가 및 관리 감독 필요
- 영유아의 안전 고려
- 꼭 필요한 가정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확인절차 필요

– 비정규인력채용 제안

<교육비 · 보육료 지원정책>

가) 영아 기본보조금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차후에 만3~4세까지 확장되어야 보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성공할 것임.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안심하고 기관에 보내는 비율이 높아짐.

– 교육기회의 확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재정을 산발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교원인건비확보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급 기준 강화

–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을 확인하기 어려움.

나) 차등교육비 · 보육료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 확대에 기여

– 저소득층 아동의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부모 부담 경감

– 소득 재분배 효과

– 5세 이하의 모든 보육 아동이 무상 보육이 될 때 까지 지원 정책 계속 되어야 함.

- 소득에 따른 지원이 바람직함.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차등보육료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무상보육 실시
- 만5세아 외에는 보육료 전액지원계층을 없애고 일부금액 동일 지원으로 조정
- 단일화된 보육료 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함.
- 지원 대상자 선정의 간소화 및 소득 조사의 객관성 확보
-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징수 확대
- 종일반 오후시간 교육비 차등 지원
-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함.

다)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공보육화 실현 노력이므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 재분배 가능성을 도모하므로 유아교육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수단임.
- 학부모에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사정에 따라 어느 곳을 입학하든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취원율 확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만5세의 경우 모든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함.
- 교육비 지원에 따른 정기적인 유치원 감사를 통하여 유치원의 책무성을 인식시키고 질적 수준을 제고함.

-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월 10만원 정도로 높여야 함.
- 학부모에게 지급되어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 홍보 필요

라) 장애아 무상교육·보육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특수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장애우의 보상정책(보상적 평등)
- 선진국 수준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음.
-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장애아 교육 기회 보장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장애아동의 발달 상태에 맞는 보육이라는 기존의 정책의도에서 벗어나, 보육시설의 수익(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
- 개인도우미 지원 확대
- 지원 확대
- 소득에 대한 차등 지원
- 일반아동과 똑같은 무상교육 지원

마)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인구 증가에 기여
- 출산 장려 효과
- 더 좋은 환경에서 유아들을 교육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한 자녀가 초·중등학생이라도 다른 한 자녀의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 주어야 함.
- 자녀수보다는 가구별 수입에 의한 차등지원방안 마련
- 수혜자의 경제적 형편과 양육여건(맞벌이여부)에 따라 지원하며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함.
- 모든 가정에 지원
-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 소득과 상관없는 지원

바)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농어촌의 출산 장려 효과
- 귀농인구 증가에 효과
- 농촌 살리기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유치원 자녀 교육비 지원등 감면 아동 보육료와 중복지원 우려가 있어 보육료 지원책은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함.

<유아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

가)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평가 인증사업 덕분으로 지방의 보육시설은 물리적 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됨.
- 영세한 시설 운영의 안정화 및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 공교(보)육을 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유아안전 및 복지여건 개선
- 안정적인 보육에 도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현재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누어서 할 수 없는 곳은 그 비용을 비축하여 새로운 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종일반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인 시설기준 상향 조정
- 물리적 환경 외에 병가나 연가시 아동관리를 위한 교육청 인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아이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개선

나)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사립 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기대하기 보다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국공립의 확충은 앞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 학부모들의 경비 절감 및 교사들의 일자리 창출

-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 및 보편화
- 공교육의 활성화, 향후 저출산 해결 과제임.
-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교육실현
- 취원율 제고 및 학부모 만족도 증가
- 공보육의 기반 구축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도 요구됨.
- 무조건 국공립 확충보다는 기존의 민간, 사립기관을 법인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 강화, 법인시설과 지원액을 차별화
- 규모에 상관없이 시설수 늘리기에 의존하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의미가 없음.

<유치원・보육시설 질적 수준 제고 정책>

가) 기관 서비스의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등)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보육현장의 기본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평가인증의 효과는 컸음.
- 많은 개선이 있다고 평가함.
-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유아교육의 발전을 도모함.
- 난립되어 있고 비교육적 수준의 교육 환경 개선
-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계기 마련
-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의 폭 강화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주기를 3년에서 4~5년으로 늘이고, 지표수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공통의 질 관리(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치원평가)가 필요
- 재정지원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성과를 이룰 수 있음.
- 문서를 간소화하여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기관의 부담을 줄여야 함.
- 인증 통과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나)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교육의 질적 제고
- 보육 교사의 자격관리가 꼭 필요하고 보수교육이나 장학이 필요함.
-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으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체계적인 관리 및 교사 자질 향상
- 교사에 대한 평이나 경력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야 경쟁력이 있음.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현재 35학점은 대폭 늘여서 관련학과의 비전문적인 교사 양성을 중지해야 할 것임. 보수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며, 보수교육기관 평가가 필요함.
- 기존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급수별 차등과 더불어 선임 및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으로 인사조직의 위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전문대 출신과 4년제 대학 출신에 따라 유치원 정교사 자격 구분이 필요함.
- 유아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연수교육 시설을 보육시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양성의 자격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통해 교사의 자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됨.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가)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저출산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영아는 가정에서의 교육·보육이 보다 바람직.
-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
- 안정된 영유아 관리
- 저소득층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 전염병 등 급박한 사정이 생길 경우 필요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확대하지 말고 소용되는 경비를 교육비·보육료 지원정책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출산 휴가를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6개월 이후 영아는 기존의 보육시설 이용으로 대체 가능
-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인지 의문스러움.

나)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농어촌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고 보육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바람직함.
- 농어촌 생활개선 도움 기대
- 젊은이들을 농어촌으로 불러들이는 제도
- 일과 양육이 잘 구분도지 않는 농촌여성 및 아동 지원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농업인으로 가정에서 받아 가계지원 정도로 쓸 수 있으며, 유아의 복지를 위하여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의문임. 직접적인 유아들의 보육에 투자를 해야 함.

– 소득수준에 따라 도시여성근로자에게도 양육비 지원 요함.

–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음.

〈부표 2-7〉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계속 추진 정책과제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51)	교육 (28)	보육 (23)	전체 (62)	교육 (27)	보육 (35)	전체 (81)	유치원 (42)	보육시설 (39)	전체 (112)	유치원 (62)	보육시설 (50)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17	13	4	31	23	8	44	43	1	43	40	3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22	10	12	20	5	15	37	7	30	40	16	24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 수당 지원	18	13	5	21	18	3	30	21	9	45	41	4
보육행정 시스템구축 사업	13	7	6	19	1	18	28	4	24	19	5	14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6	4	2	9	4	5	23	19	4	19	17	2
기타보육 (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지원	13	6	7	15	3	12	23	3	20	18	7	11
영아 기본보조금	17	9	8	11	2	9	20	5	15	17	8	9
차등교육비 보육료지원	15	7	8	15	4	11	24	11	13	17	7	10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지원	27	16	11	28	14	14	39	25	14	42	32	10
장애아 무상교육・보육지원	21	11	10	20	6	14	31	15	16	28	14	14

〈부표 2-7〉 계속

단위: 명

계속 추진 정책과제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51)	교육 (28)	보육 (23)	전체 (62)	교육 (27)	보육 (35)	전체 (81)	유치원 (42)	보육시설 (39)	전체 (112)	유치원 (62)	보육시설 (50)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지원	14	7	7	16	6	10	37	19	18	26	15	11
농어업인 자녀영유아 양육비지원	13	6	7	11	3	8	21	8	13	16	6	10
보육시설 물리적환경 개선 사업	15	8	7	6	1	5	26	4	22	14	6	8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6	10	6	24	15	9	23	16	7	28	16	12
기관 질 관리사업 (평가인증, 장학 등)	27	16	11	24	15	9	23	16	7	28	16	12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27	17	10	23	13	10	32	14	18	31	18	13
영유아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11	5	6	20	9	11	35	19	16	33	22	11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지원	7	5	3	3	0	3	3	0	3	7	6	1

2)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제안[10)]

가) 유아교육 전문가

(1) 가정 양육 지원 강화 (4)

-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 부모 대상의 교육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 전업주부의 육아지원 방안 강구

(2)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11)

- 인증제 확대와 시설 수준 높이기
- 교사 대 아동 수 줄이기
- 아동 1인당 교실 면적 확대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정책
- 유사 유아교육기관의 감독 관리 기능 강화 정책 도입
- 유아교육·보육 정보화 정책
- 유아교사 평가제
- 유아교사 계약연봉제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 가정보육시설의 정원을 하향화 관련 연구
-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와 직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9)

- 일원화에 대한 꾸준한 연구. 시범적인 모델 개발
-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또는 기능별 구분 방식의 통합 정책

---

10) ( )의 숫자는 제안자 수를 나타냄

–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함께 유아학교로의 전환
–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된 행정기관 지명 혹은 새로운 설치
–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의 일원화된 교원양성기관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방안
–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양성교육 기간 통일
– 교육과 보육의 동일한 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
– 교육과 보육의 분리가 아닌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⑷ 직장 여성의 육아지원제도 강화 (1)
– 취업모의 육아 휴직시스템 강화

⑸ 유치원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4)
– 종일제 확산
– 유치원 공교육화 및 무상교육
– 공립유치원의 단설화
– 만5세아 유치원 의무교육화

⑹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1)
– 보육행정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⑺ 지나친 교육열 자제와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추진 (2)
– 영어유치원, 학원 등 재정비, 교육과정 정상화
– 영·유아 사교육(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안 마련

(8) 농어촌 육아지원강화 (2)

- 만5세아 무상 교육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급식비·교육비를 무료지원
- 농촌지역 차량운행에 따른 지원

(9)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1)

(10)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1)

(11) 기타 (2)

- 육아비 지원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생애초기 문화적·예술적 경험 기회가 부족한 유아들의 적극적 지원

나) 보육 전문가

(1) 교사자격제도 개선 (7)

- 보육교사 자격강화
- 초등교사의 유아교사 자격인정제도 개정
- 장애아 입학에 따른 특수교사 지원을 사립기관으로 확대 시행
- 교사자격제도 강화 방안 연구
- 보수교육의 필수화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2) 교사처우개선 (10)

- 보육시설 교사 2교대 근무
- 보육시설 교사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 도입

- 교사 처우 개선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축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 교사인건비를 현실화해야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음
- 대학에서의 교육연수에 따른 차등호봉제 실시
- 연구 인센티브제 활성화
- 보육시설의 보수교육이나 유치원의 연수를 받는 교사의 공백을 메울 대체교사를 확보하여 제공

(3)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5)

- 영유아 교육·보육의 일원화 및 통합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간의 자격 일원화

(4) 보육료 자율화 (2)

- 보육료 자율화
- 보육과 교육의 통합

(5) 보육료 지원 확대 (7)

- 저소득층 보육 강화
-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확대
- 장애아 무상교육/보육지원의 확대
- 만 5세의 의무교육
- 공보육의 현실화
- 무상교육·보육 확대
- 현실적인 교육비 지원

⑹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5)

- 전업주부의 육아지원 방안 강구
-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 영아 양육지원의 구체화(시설 중심이외의 가정지원 사업)
- 문제가정의 지원사업
-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⑺ 국공립유치원 대폭증설 (2)

- 신설보다는 가급적 기존의 사립이나 민간보육시설을 전환하여 국공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⑻ 공공성 강화 (4)

- 지도감독 및 국공립시설 위탁체계의 투명성
- 평가인증 지원 강화
- 평가인증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제 실시
- 민간보육시설의 질 개선

⑼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자격 기준 개선 (4)

-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전담 장학사를 확보
- 장학지도 요원의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성강화와 사전 교육을 실시
- 보육시설의 장학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⑽ 기타 (14)

- 시간제 보육료 적용
- 표준보육료 인상

- 시간 강사 교사의 강사료 최저금액책정 및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과정과 출결을 관리
- 직장보육시설 바우처 제도
- 보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 유아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 법제화
- 교재교구지원체계: 사립시설을 회원제로 한 교재교구대여 지원시스템
- 보육정보센터 확보
- 발달진단검사서비스 실시
-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필요
- 대학의 보육관련학과 실습실로서 보육시설 의무화
-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선정제
-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우선 지원해야 함
- 지원 정책들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장기 종단연구가 필요

나) 공무원

(1)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정책 (15)

- 많은 부분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동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 교사 수당 지원액, 교사자격 인정부분.
- 행정기관의 일원화
- 보육(0~2세)과 교육(3세~5세)의 분리. 각 영역의 전문성 확보, 현재의 이원화 체제는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

(2) 유치원의 의무 취학화 또는 공교육화 정책 (4)

- 만5세아 전면 의무교육 추진
- 안정된 교육지원체제 확립

⑶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5)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학부모이 교육비부담 최소화, 교육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⑷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근무조건 개선 (14)

-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책: 국가에서 전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함.
- 유치원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 종일반에 보육전담 교사 배치
- 유치원 학급보조자봉사자 훈련지원 연수비 지원
- 법인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에서 모든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급

⑸ 유치원・보육시설 기관 질 관리 강화 (13)

-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 보육시설 환경 질제고: 인가시 실외놀이터 면적 재조성, 평가인증 의무화
-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강구방안
- 유아 및 보육 분야에 자격을 강화

⑹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3)

- 종일제 운영이 유치원마다 큰 숙제로 남아 있음. 현실성 있고 현장을 배려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함. 교사에게 집을 떠맡기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함.
-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근무시간의 다양화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이 필요하며, 이는 인력이나 운영비 등 어느 한 유치원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구청별로 종일제 중심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7)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3)

- 유치원 관련 전담 장학사 확대
-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8) 사립유치원 감사의 법적 제도화 (2)

(9) 기타 (14)

- 초등학교 신설 시 반드시 병설 유치원 함께 개원: 저렴한 수업료, 질높은 교사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농어촌 공립유치원 차량지원: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됨
- 저출산 예방 및 건강한 육아지원
- 각 시·도별 현장체험학습장 및 유아교육연구원 설립 운영: 유아교육에 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유아의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확대되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짐.
-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사업
- 민간보육시설의 기본보조금 지원
- 0~3세 부모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확립
- 농어촌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 보육서비스의 청소년까지 확대
-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근무 경력 상호 인정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확대 강화
- 보육료지원의 개선

다) 유치원 원장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26)

-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부처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 양성의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지원체제의 일원화
- 취원 대상아의 구분: 유치원을 만3~5세, 보육시설은 만0~2세
- 유아교육과 보육을 분리 운영하고, 각 부처 간의 역할 정립

(2)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33)

- 유치원에 유아교육전공자 100%배치
- 학급당 보조원 배치
- 공립유치원에는 전담 원감배치 의무화
- 종일반 교사 채용 기준 수정: 종일반 정교사 배치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리 감독 철저
- 평가: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이나 사설기관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 기관은 철저한 평가
- 학급당 인원수 감축/유아 대 교사의 비율 낮추기

(3)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16)

- 유아담당 장학관 배치/시·도교육청에 전공자 배치
- 교육청 유아교육과 승격
-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4)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15)

- 병설유치원의 2~3학급의 학급수를 6학급 이상으로 확대
- 각지역청별로 단설유치원 1개원 이상 설립
-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학급 증반 의무화
- 기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⑸ 교사처우개선 (10)

- 유치원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 기타: 유아교육, 보육에 근무하는 교사의 사기증진 등

⑹ 의무교육/무상교육 실시 (16)

- 유아교육(유치원) 의무교육실시: 만 3세 만5세 의무교육
- 만5세아 무상 교육 전면 실시

⑺ 재정 지원 확대 (17)

- 체험교육원 신설: 각시·도별 2~3개
- 학습 준비물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 차량지원: 공립유치원 차량 배치 지원/지역교육청별차량 배치

⑻ 기타 (8)

-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 천차만별인 유아교육기관을 재정립
- 서울에서 실시하는 보육과 교육을 지방에도 확산하여 실시
- 공립유치원 행정실에 기능직 배치 의무화

– 유아-중고령 협력망 구축 사업
– 유아교육의 중요성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크게 인식 필요
–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가족 수당 예산 편성

라) 보육시설 시설장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6)

– 유아교육과 보육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 일원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 제3부처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구분: 0~4세, 5세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별화된 운영 역할에 따른 분담

(2)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7)

– 보육교사 양성소폐지
– 종사자의 자격관리 강화
– 시설장 보수교육 강화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
– 보육시설 원감 근무체계 도입

(3) 유치원·보육시설 공공성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1)

– 보육법인 필요

(4)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2)

–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문가 배치: 프로그램 관리 및 장학 업무

– 보육정보센터나 장학사 등이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관리

⑸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6)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가정보육시설의 국공립화
– 민간 보육시설을 국가가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

⑹ 교사처우개선 (19)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보육시설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 준수여건 조성
– 교사 호봉제도 정비: 호봉 및 급여체계 상향 조정 및 재원 확보, 유치원과 동일한 호봉 및 급여체계, 보육시설 교사들의 기본급 인상, 보육교사 급수에 따른 차등 보수 등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등급과 경력에 따른 인건비 지원,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 등
–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시간외 수당, 안전수당 등
– 보육교사 담임수당 신설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제 도입

⑺ 재정 지원 확대 (19)

– 영아기본보조금 상향 조정
– 유아기본보조금 전면 도입
– 유아기본보조금 평가인증 시설에 우선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전면 도입,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한 단계적 무상지원 등
– 셋째아 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자녀 모두에게 보육료 지원

- 둘째아 지원 확대
- 저소득지원 및 농어촌지원 등 산발적인 정부 지원 일원화
-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취사도우미, 청소, 차량뒷좌석 탑승자 등 도우미 및 비담임지원
- 가정보육시설의 공동주택시설의 양도세 감면 또는 비과세
- 환경 개보수비 및 기자재비 확대 지원
- 특수보육시설의 시설운영비 지원
-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 국공립 시설에 아동보호차량 지원

⑻ 각종 제도, 규칙의 유연성 강화 및 업무, 서식 등 간소화 (5)

- 행정업무 간소화
-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정책을 다소 탄력적으로 조정
- 재무회계의 이원화: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재무회계를 다르게 함.

⑼ 기타 (10)

- 특수보육 중 장애아 통합보육은 그동안 양적인 증가로 팽창되었으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인적 자원이 우수한 보육시설조차 장애아동 확보의 어려움
- 유아교육과 보육이 함께 공존하고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과 교류와 인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예: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 경력 상호 인정
-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학부모가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 교육이나 보육의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주체성이 확립된 교육・보육・철학・정책이 확립되도록
- 각 지역별로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 설치
- 가정내 다양한 육아 서비스의 일원화
- 각 지역별로 무료 아동상담소 설치

- 0세아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
- 간식비, 식대는 보육료와 별도 수납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차량운행 금지 법규화

마) 유치원 교사

(1) 가정 양육 지원 강화 (1)

-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 내 파견사업

(2)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38)

- 학급당 보조교사 배치
- 병설유치원에 종일반 정교사 배치
- 유치원 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 교사 연수 기회 확대
- 학급당 인원 수 감축
- 질 높은 우수한 기관의 확보 및 확대
- 교사 자격 관리 강화
-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별도 교실 확충
- 기관의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강화)
- 중복되는 평가 및 장학 줄이기
- 과도한 평가 경쟁 피하기
-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 종일반 물리적 환경 개선
- 3학급 이상에 전공 원감 배치
- 모든 병설 유치원에 원감 배치

- 4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조원 2인 배치
- 에듀케어반 전담 보조인력 배치
- 평가를 통해 우수유치원에 인센티브 제공
-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

⑶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16)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별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관할 부처 일원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체제

⑷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18)

- 유치원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공교육화)
- 유치원을 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
- 사립유치원 법인화
-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 감사

⑸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12)

- 유아교육계를 유아교육과로 승격
- 유아교육과 내 유아교육전문가 100% 배치
- 유치원의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⑹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14)

- 공립 단설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증설 및 확대 추진
- 공립유치원 분담률 50% 확대(2010년까지)

– 모든 학교급(초등, 중등 모두)에 3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 신설
– 신설학교 개설시 유치원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을 법제화

(7) 교사 복지 정책 (10)

–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지 문제 개선 정책(처우개선비 마련, 근무 환경 개선 등)
– 종일반 담당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종일제 교사의 시간 외 수당 지원
– 방학 중에도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교사 처우개선

(8) 기타 (17)

– 공립유치원 차량 배치
– 0세부터 유치원 교육의 시작
–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 규제
– 교육과 보육의 본질을 차별화하여 정책 수립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분류
– 교사의 사기 양양
– 외국연수 프로그램에 유치원 교원 확대
– 낮은 연령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 법인 시설의 이원화된 서류 일원화
– 유치원 전원 급식비 보조 및 차량 지원
– 유치원지원금을 교재교구비 한정에서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1, 2월생 학교 입학

바) 보육교사

(1) 가정 양육 지원 강화 (3)

- 가정 내 육아 서비스 지원의 강화
- 전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2)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8)

-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관련학과의 정비
- 보육교사 자격 인정 제도
- 보육교사 및 시설장 질 관리
- 민간 보육시설 질 관리
-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리 감독
- 기자재 및 시설 지원 확충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3)

-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제 일원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육과정 통합

(4)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3)

- 만 5세아 무상 보육 지원
- 유아교육 의무화
- 보육의 공공성 실현

(5)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2)

- 유아교육 전공자 및 유경험자의 관련 공무원 특채 채용 기회 확대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6)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2)

– 국공립 시설 확충

(7)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2)

– 이주노동자, 새터민, 혼혈인 자녀 등 사회 소수계층과의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합보육

– 다문화 가정 지원

(8) 교사 복지 정책 (20)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근무자의 복리후생(월차 및 공식적 휴가기간)

– 대체교사 인력 지원

– 시간 외 수당 지급

– 종사자 근무조건과 관련된 정책 마련

– 학력 및 교육성과에 따른 호봉 책정

– 처우개선비 지급

– 교사에 대한 질적, 양적 지원

– 보육교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

– 토요일 휴무

– 3개월 출산 유급 휴가의 사회적 확산

–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비담임 교사 인건비 지원

⑼ 기타 (14)

- 기존 수행 정책의 내실화
-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위원회 구성
- 시간제 보육 제공
- 16시간 운영제와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사례 전파
- 지자체에서 정부 차원으로의 지원 체제 변경 확대
-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정책
- 사립과 민간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
-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기준 강화 및 장려
- 표준 보육 단가 현실화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과 영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운영사례 전파
- 저출산 대비 정책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고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
- 보육시설 조리사 인건비 지원

라. 요약

□ 유아교육 전문가 및 공무원, 유치원장 및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계속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정책은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비 지원 정책임.**

- 그 외 계속 추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립유치원교사 학급 담임수당 지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농어촌 공립유치원 차량지원**과 함께 **유치원 질제고 정책**(질 관리 사업, 교사자격관리 및 보수교육강화)임.
- 응답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교사 자격관리와 유치원 질 관리 사업 등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을 가장 지속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았으며, 공무원과 현장관련자들은 유치원 종일제 지원, 학급담임수당 등 유치원 운영지원 정책을 많이 지지함.

□ 보육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보육시설장, 교사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계속 추진

을 지지한 정책은 국공립・법인・장애・영아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임.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사업, 평가인증 등 보육시설 질 관리 사업, 그리고 영아 기본보조금 등 각 보육료 지원정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지됨.
-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보육시설 질제고 정책을, 공무원은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을, 보육시설장은 행정시스템과 함께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보고 있음.
- 보육 관계자들은 보육시설 질 관리 사업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차등보육료지원 등을 꼽았음. 특히 질 관리 사업은 재정지원과 연계를 하고 평가인증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함. 이 밖에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강화 및 법인화 실시, 무상보육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봄.

□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현장 관련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제고**와 **교사자격 강화, 재정지원의 확대,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교사처우개선,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공공성 강화, 가정양육 지원강화 정책** 등을 지적함.

3. 설문지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의견조사

1. 현재 귀댁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보기 1> 중에서 번호를 골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번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

①집과의 거리 ②차량운행 ③운영시간 ④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⑤안전관리 ⑥위생관리 ⑦실내・외 환경 ⑧주변환경
⑨교재・교구 ⑩급・간식 ⑪교육・보육 프로그램
⑫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⑬기타( )

1-1. 현재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위의 <보기 1>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보기 중 ⑬기타( )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2. 현재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보육시설에서 만족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위의 <보기 1>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보기 중 ⑬기타( )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3.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위의 <보기 1> 중에서 **바라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보기 중 ⑬기타(　　)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3-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 다음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보기 2> 중에서 번호를 골라 기록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⑨번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2

① 교육비·보육료 지원　②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③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④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⑤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⑥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⑦ 유치원 종일제 확대　⑧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⑨ 기타(　　)

2-1.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2>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보기중 ⑨기타(　　)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2-1.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2> 중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책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답해주십시오. 보기중 ⑨기타(　　)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 다음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주기시 바랍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1.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주변에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음
② 주변에 자녀를 맡길 믿을 만한 기관이 없어 힘들었음
③ 자녀 출산·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웠음
④ 직장에서 야근 등 초과근무가 잦아 힘들었음
⑤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어려워 힘들었음
⑥ 육아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힘들었음
⑦ 기타(　　)

3-2. 앞으로 정부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②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③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④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⑤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⑥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휴직수당의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⑦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⑧ 초등학교 저학년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⑨ 기타( )

감 사 합 니 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전문가, 공무원, 원장, 교사)

1. 현재 시행 중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의 <육아정책내용 예(例)>를 참고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1-1. 위의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다고(또는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정책별로 답해 주십시오.

2. 현재 시행 중인 유아교육 또는 보육 정책 중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다음 페이지의 <육아정책내용 예(例)>를 참고하여, 생각하시는 정책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2-1. 위의 정책들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정책별로 답해 주십시오.

3. 유아교육 또는 보육 분야에서 향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안하고 싶으신 정책 과제를 모두 써주십시오.

3-1. 위의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 과제별로 답해 주십시오.

<육아정책내용 예(例)>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정책

-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 시설)
-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
- 사립유치원・민간시설 교재・교구비지원
- 농어촌 공립유치원차량지원/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지원
- 기타 보육(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교육비・보육료 지원정책

- 영아 기본보조금
-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 장애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 지원
-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유아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

-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질 제고 정책

- 기관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등)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 대한 간략한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table>
<tr><td rowspan="2">근무 기관 유형</td><td>보육 시설</td><td colspan="3">☐ 1) 국공립보육시설 ☐ 2) 법인보육시설 ☐ 3) 법인외 보육시설
☐ 4) 민간개인보육시설 ☐ 5) 직장보육시설 ☐ 6) 가정보육시설
☐ 7) 부모협동보육시설</td></tr>
<tr><td>유치원</td><td colspan="3">☐ 1) 국공립 단설 ☐ 2) 국공립 병설
☐ 3) 사립 법인 ☐ 4) 사립 사(개)인</td></tr>
<tr><td colspan="2" rowspan="2">소재지역
(선택사항)</td><td colspan="3">_____시·도 _____구·군 _____읍·면·동 _____</td></tr>
<tr><td colspan="3">☐ 1) 대도시 ☐ 2) 중소도시 ☐ 3) 읍·면 지역</td></tr>
<tr><td colspan="2">성 별</td><td>☐ 1) 남 ☐ 2) 여</td><td>연 령</td><td>만 _____세</td></tr>
<tr><td colspan="2">최종학력</td><td colspan="3">☐ 1) 고졸(이하) ☐ 2) 전문대학 (2, 3년제) 졸 ☐ 3) 대학교 졸
☐ 4) 대학원 졸 ☐ 5) 기타( )</td></tr>
<tr><td colspan="2">전 공</td><td colspan="3">☐ 1) 유아교육학 ☐ 2) 보육학 ☐ 3) 사회복지학
☐ 4) 아동학 ☐ 5) 가정(관리)학 ☐ 6) 기타( )</td></tr>
<tr><td colspan="2">소지 자격 (복수응답)</td><td colspan="3">☐ 1) 보육시설 시설장 ☐ 2) 보육교사 1급 ☐ 3) 보육교사 2급
☐ 4) 보육교사 3급 ☐ 5) 유치원 원장 ☐ 6) 유치원 원감
☐ 7) 유치원 1급 정교사 ☐ 8) 유치원 2급 정교사 ☐ 9) 사회복지사</td></tr>
</table>

연구보고 2007-11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인 이 옥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20-2-93330